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번역본

2024년 2월







# **CONTENTS**

I . 식품첨가물	
1.1 서론	1
1.1.1 구성 및 일반조항	1
1.1.2 정의(Definitions used throughout the Code)	12
1.3.1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50
부칙 7. (원료 표시 관련) 식품첨가물 분류	55
부칙 8. (원료 표시 관련) 식품첨가물 명칭 및 코드번호	57
부칙 14 식품첨가물이 제공하는 기술적 기능	63
부칙 15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65
부칙 16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유형	94
Ⅱ. 유해물질	
1.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	99
1.4.1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	100
부칙 19.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 최대잔류허용량	103
2.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110
1.4.2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111
부칙 20. 최대잔류허용량	115
부칙 21. 외부 유래 물질의 잔류기준	241
3.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식물과 진균류	244
1.4.4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식물과 진균류	245
부칙 23. 사용금지 식물 및 균류	250
부칙 24. 사용 제한 식물 및 진균류	256
4. 식품 내 미생물 기준	258
1.6.1 식품 내 미생물 기준	259
부칙 27. 식품 내 미생물 기준	262



# 1.1 서론

# 1.1.1 구성 및 일반조항

-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1부. 서문

### 1.1.1-1 명칭

본 규정은 호주 뉴질랜드기준규정집 – 1.1.1 구성 및 일반조항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 92절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 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1.1.1-2 구성

- (1) 표준규정은 하나의 단일 법률 문서를 구성한다.
- (2) 표준규정은 아래와 같이 장(Chapters)과 부(Parts), 그리고 부칙(schedules)으로 구성한다. 참고. 각 장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a) 제1장
    - (i) 서두 규정
    - (ii) 일반조항
  - (b) 제2장 식품별 기준
  - (c) 제3장 식품안전 기준 (호주만 적용)



(d) 제4장 - 1차 생산 및 가공 기준 (호주만 적용); 표 1~29는 제4장 뒤에 수록되어 있다. - 목차 생략 -

### 2부 규정의 적용 및 해설

참고. 본 규정집에서 사용된 정의는 1.1.2에 기술되어 있다.

### 1.1.1-3 기준의 적용

- (1)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규정집은 다음과 같은 식품에 적용된다.
  - (a)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가공 또는 처리된 식품; 또는
  - (b)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 수입된 식품
    - 참고 1. 아래 조항은 뉴질랜드 식품기준법(Food Act 2014, NZ)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호주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 (i) 1.4.2 Aq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 (ii) 1.6.2 식육의 가공 요건
      - (iii) 2.1.1-5 빵 중 엽산과 치아민 요건
      - (iv) 2.2.1-12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
      - (v) 2.2.2 알류
      - (vi) 2.4.2-3 (2)조와 2.4.2-3 (4)조 (식용유지 스프레드와 식용 마가린으로 판매하는 식품 요건)
      - (vii) 제3장(식품안전 기준)과 제4장(1차 생산 및 가공 기준)
    - 참고 2. 규정 2.9.6 특수용도식품의 임시 기준(아미노산함량 조정 식품 포함)은 호주에는 적용되지 않음
- (2) (1)조는 다음에 해당되는 와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유통기한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와인; 및
  - (b) 2002년 12월 20일 이전에 병입한 와인; 및
  - (c) 병입 일자를 기준으로 이 표준규정 이전의 호주의 식품표준규정과 뉴질랜드의 식품 표준규정이 적용되는 와인; 및
  - (d) 양조년도/빈티지가 2002년이나 그 이전으로 표시된 와인

### 1.1.1-4 법률 해석

본 규정집의 법률 해석은 아래에 따른다.

- (a) 호주 법률해석에 관한 법 1901(Cth); 및
- (b) 뉴질랜드 법률해석에 관한 법 1999(NZ)

### 1.1.1-5 기타 법률문서의 언급

- (1) 본 규정집에서
  - (a) 뉴질랜드 주 또는 특별자치구의 법을 포함해 법을 언급하는 경우 그 법에 의거해서 만든 모든 법률문서를 포함한다.
  - (b)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을 언급하는 경우 2019년 미국연 방규정집 편집본을 말한다.

참고. 본 규정집에서 CFR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인용된다: [타이틀 번호] CFR § [절번호]

(2)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법 13(1)(c)호에 따라서 FASNZ가 개발한 지침서는 본 규정집의 해석을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 1.1.1-6 성분의 평균함량 계산 방법

(1) 본 규정은 판매용 식품의 표시사항 중 한 성분의 평균함량(average quantity) 표시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는 백분율, 1회 분량 또는 기타의 분량에 대한 것으로 나타 낸다.

참고. '평균함량'이라는 용어는 1.1.2-2절에 정의되어 있다.

예시: 본 규정집은 단백질, 탄수화물, 당 등, 판매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에 나열된 다양한 성분의 '평균함량'을 요구하고 있다.

- (2) 평균 함량은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가 아래 (3)조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이용하여 계산하되, 계절적 변동성을 포함, 해당성분의 실제량이 로트별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성분의 평균 함량을 가장 잘 나타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3)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식품의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가 분석한 후 1회 분량 또는 기타 특정분량을 기준으로 평균 함량을 계산한다.
  - (b) 식품을 위해 사용된 원료 속 성분의 실제 함량을 계산하거나 평균 함량을 계산한다.
  - (c) 해당 식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1.1-7 측정 단위

- (1) 본 규정집에서 사용된 단위의 기호가 가지는 의미는 부칙 2의 표를 참고한다.
- (2) 부칙 2의 표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기호는 아래 법을 참고한다:
  - (a) 호주 국가 도량법(National Measurement Act 1960) (Cth)
  - (b) 뉴질랜드 중량 및 도량법(Weights and Measures Act 1987) (NZ)
- (3) 기호가 표나 부칙 2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국제단위계(Systeme Internationale d'Unités)에 명시된 기호의 의미를 갖는다.
- (4) 본 규정집 내의 표 목차에 측정단위가 언급된 경우, 표에 명시된 양의 측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다른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표에서 제시된 단위로 측정한다.

### 1.1.1-8 의무적 문구 또는 단어 사용 요건 준수

- (1) 본 규정집의 조항에서 경고 문구 또는 특정 단어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경고 문구 또는 단어는 본 규정집에서 정한 그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2) 본 규정집의 조항이 경고 문구 외에 다른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
  - (a) 문구는 변경될 수 있으며,
  - (b) 이 경우 변경이 문구와 모순되거나 문구의 효력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 3부. 규정집 개정의 영향

### 1.1.1-9 규정집 개정의 영향

- (1) 본 규정집 또는 규정집을 개정하는 법률문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 (a) 규정이 변경되고;
  - (b) 어떤 식품이 개정 시행 직전 당시의 판매규정을 준수하였던 경우;
  - 해당 식품은 본 규정집이 개정된 일자를 포함하여 이후 12 개월 동안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본 절에서 의미하는 판매규정을 준수하는 식품이란:
  - (a) 판매요건으로 식품의 표시가 요구되는 경우, 본 규정집의 표시 요건을 준수하고;

- (b) 판매요건으로 포장이 요구되는 경우, 본 규정집의 포장 요건을 준수하며;
- (c) 해당 식품 종류의 식품 구성과 관련하여 본 규정집의 조항을 준수함을 의미한다.

### 4부. 기본 원칙

- 참고 1. 호주에서 본 규정집은 각 주 및 특별자치구의 적용법과 수입식품을 다루는 영연방법령에 따라서 강제집행된다. 개략적으로 이 시책은 아래와 같이 운영된다.
  - (1) 적용법은 영연방, 주정부, 특별자치구 사이의 협정인 식품법규협정(Food Regulation Agreement)에 부속된 모범식품조항(Model Food Provisions)을 기반으로 동일한 입법체 계를 구성한다. 이런 법에 따라서, 누구라도:
    - (a) 아래 사항과 관련해서 본 규정집의 조항에 따라 부여된 모든 요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i) 식품 사업 운영; 또는
      - (ii) 판매 목적 식품; 또는
      - (iii) 판매용 식품
    - (b) 본 규정집의 식품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 (c) 본 규정집의 조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라벨이 표시되거나 포장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 (d) 본 규정집의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광고를 해서 는 안 된다.
    - (e) 식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광고·포장·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2) 단락 (1)(e)항의 허위란,
    - (a) 어떤 식품이 특정 성질을 갖거나 또는 특정 물질로 표현되고;
    - (b) 본 규정집에서 그 식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 (c) 해당 식품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3)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다:
    - (a) 식품법 2003 (Food Act 2003) (뉴사우스웨일스)
    - (b) 식품법 1984 (Food Act 1984) (빅토리아)
    - (c) 식품법 2006 (Food Act 2006) (퀸즐랜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d) 식품법 2008 (Food Act 2008)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 (e) 식품법 2001 (Food Act 2001)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 (f) 식품법 2003 (Food Act 2003) (태즈메이니아)
- (g) 식품법 2001 (Food Act 2001)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지구)
- (h) 식품법 2004 (Food Act 2004) (북부 특별지구)
- (4) 수입식품관리법 1992 (Imported Food Control Act) 하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 (a) 포장된 식품의 표시와 관련된 기준 외에 본 규정집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 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행위
- (b) 포장된 식품의 표시와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을 거래하는 행위 참고 2.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식품기준법(Food Act 2014, NZ)에 따라서, 개인이 아래의 내용 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 (a) 호주·뉴질랜드 공통 식품 기준 및 국내 식품 기준;
  - (b) ···

### 1.1.1-10 판매용 식품과 관련된 요건

- (1) 본 절은 판매용 식품에 적용된다.
  - '구성 요건'
- (2) 본 절에 따라 판매용 식품은 어떠한 식품으로 구성되거나 성분으로 포함될 수 있다.
- (3) 판매용 식품은 그것이 속하는 종류의 식품 구성과 관련한 본 규정집의 모든 조항(동종식품 내 기타 성분의 존재와 관련한 규정도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
- (4) 구성 요건 중 '기타식품' 또는 '기타원료'를 원료로서 허용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집 상 일반 적 식품 혹은 해당 식품에 첨가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이나 물질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5) 본 규정집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판매용 식품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야 한다:
  - (a) \*사용이 금지된 식물 또는 균류, \* 사용이 제한된 식물 또는 균류, 코카 관목;
  - (b) 소매판매용 식품의 경우 \*신소재 또는 신기술 식품;
  - (c)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
  - (d) 방사선 조사 식품;
  - (e) 카바 또는 카바에서 추출한 모든 물질;

- (f) 소매판매용 식품의 경우 생살구 알맹이;
- (g) 소매판매용 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농도가 다음과 같은 식품:
  - (i) 5% 이상 식품이 고형 또는 반고형인 경우;
  - (ii) 1% 이상 식품이 액체인 경우
- (6) 본 규정집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판매용 식품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을 원료 또는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
  - (a) \*식품첨가물로 사용된 물질;
  - (b) \*영양물질로 사용된 물질;
  - (C) \*가공보조제로 사용된 물질;
  - (d) 호주의 경우 검출 가능한 양의
    - (i)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이거나;
    - (ii)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의 대사 또는 분해 산물
  - (e) \*사용이 금지된 식물 또는 균류, \*사용이 제한된 식물 또는 균류, 코카 관목
  - (f) 소매판매용 식품의 경우 \*신소재 또는 신기술 식품:
  - (a)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
  - (h) 방사선 조사 식품
  - (i) 카바 또는 카바에서 추출한 모든 물질
  - (i) 생살구 알맹이

참고 1. (3)조와 (4)조에 대한 관련 조항은 다양한 기준에 포함된다. 특히 아래 기준을 참조:

- 식품첨가물 1.3.1
- 영양물질 1.3.2, 2.6.2, 2.9.1, 2.9.2, 2.9.3, 2.9.4, 2.9.5
- 가공보조제 1.3.3
- Aq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물 1.4.2
- 사용이 금지된 식물과 균류 1.4.4
- 신소재 식품 1.5.1
-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 1.5.2
- 방사선 조사 식품 1.5.3
- 카바 2.6.3

- 참고 2. 몇몇 카테고리는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떠한 물질이 식품첨가물로 쓰이나 영양성분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물질은 사용 목적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한다.
- 참고 3. 일부의 경우, 어떤 조항에서 식품에 첨가된 물질의 총량을 나타낼 때가 있으므로 이 경우 총량은 물질이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또는 영양물질로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참고 4. 생살구 알맹이에 대한 적절한 허가 조항은 표준규정 1.4.4.에 제시되어 있다.

(7) (6)조는 판매용 식품 혹은 판매용 식품의 원료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Labelling requirements : '표시 요건'

(8) 본 규정집의 표시 요건이 식품의 판매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표시 사항은 동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Information requirements : '정보 요건'

(9) 본 규정집의 정보 요건이 식품의 판매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제공은 동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Packaging requirements : '포장 요건'

- (10) 본 규정집의 포장 요건이 식품의 판매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포장은 동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11) 포장과 더불어 포장 내에 또는 식품과 직접 닿는 물건 또는 물질은 입에 들어간 경우
  - (a) 삼킬 수 있거나, 기도를 막거나 소화 흡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b) 아울러,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고통 또는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예시. 흡습제, 곰팡이억제제, 산소흡수제, 홍보물, 글 또는 기타 그래픽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포함하는 물품 또는 물질

### 1.1.1-11 식품의 로트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식품의 \*로트에는 표준규정 1.6.1에 따라 측정한 미생물이 불허용 수준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참고. '로트'의 의미는 1.1.2-2절 참조

### 1.1.1-12 식품의 수입에 대한 적용 기준

(1) 표시와 관련된 본 규정집의 조항들은 판매 목적의 라벨을 부착한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

### 1.1.1-13 고유의 이름 또는 표현을 사용하여 판매되는 제품

- (1) 본 절은 고유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인용부호(작은따옴표(''), 이하 인용부호로 표기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본 규정집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본 규정집의 식품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 예시. '~로서 판매되는 식품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제2장에 제시된 조항
    - 2.1.1-3 빵으로서 판매되는 식품 요건: 빵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반드시 빵이어야 한다. 위 예시의 빵은 식품이며, 인용부호 안에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 (2) 해당 조항에서 식품의 명칭이 인용부호로 제시된 경우에는 그 명칭이 판매와 연관된 경우에만 관련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참고 1. 식품의 명칭이 사용된 경우에만 요건 충족이 요구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버터, 초콜릿, 사과주스, 코코아, 커피, 크림, 디카페인 커피, 디카페인 인스턴트 커피, 디카페인 인스턴트 차, 디카페인 가용성 차, 젤라틴, 아이스크림, 모조 식초, 인스턴트 차, 요오드 저염 식염 혼합물, 요오드 첨가 식염, 마가린, 미드(mead, 벌꿀주), 우유, 땅콩버터, 페리, 가공치즈, 식염, 탈지유, 가용성 커피, 가용성 차, 식용 마가린, 차, 식초, 백설탕, 전밀, 통밀과 요구르트. 이상의 식품들이 상기 (1)조가 적용되는 조항 내에서 인용부호로 구별되어있는 식품이다.
  - 예시. 초콜릿류로 판매되지 않는 코코아 원료를 사용한 당과류류, 과일을 포함하고 있는 음료이지만 과일주스로 판매되지 않는 음료는 초콜릿 또는 과일 주스에 대한 요건 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 (3) 해당 조항에서 인용부호 없이 식품의 명칭을 명시한 경우, 충족을 요하는 요건은 구매자의 입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해당식품'이라고 여길 만한 모든 판매에 적용된다.
  - 참고.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구매자가 생각하기에 판매되는 식품이 해당 식품이라고 여길 만한 판매 식품 모두에 적용된다:
    - 에일, 맥주, 브랜디, 빵, 치즈, 탈지연유(condensed skim milk), 농축연유 (condensed whole milk), 탈지분유(dried skim milk), 전지분유(dried whole milk), 식용유지 스프레드, 전해질음료 및 전해질 음료베이스, 탈지농축우유(evaporated skim milk), 농축우유(evaporated whole milk), 발효유, 과즙음료, 과일주스, 과일주, 과일주 가공품, 잼, 라거, 리큐르, 식육파이, 필스너(pilsener), 포터(porter), 소시지, 증류주, 흑맥주,

식용유지 스프레드, 채소주스, 채소주, 채소주 가공품, 와인과 와인 가공품. 위 식품은 상기 (1)조가 적용되는 조항 내에서 인용부호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다. 해당 명칭 사용은 식품의 구별과 관련한 표시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예시 1. 사우어도우로 판매되는 빵, 체다 또는 가공 체다로 판매되는 치즈 또는 가공치 즈, 브라트부르스트(Bratwurst)로 판매되는 소시지. 잼은 과일설탕절임(conserve)으로 판매될 수 있다.

예시 2. 쇠고기 파이 또는 양고기 파이는 살코기를 250 g/kg 이상 포함해야 한다.

- (4) 식품의 명칭이 식품의 판매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예를 들어 라벨에서) 문맥상 의도 적이 아님이 분명하지 않은 한, 해당 식품은 이름 붙여진 식품으로서 판매되는 것으로 간 주한다.
  - 예시. 맥주와 관련한 규정 2.7.2-3절은 청량음료와 관련된 '진저비어'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은 본 규정집에서 정의하는 맥주가 아니다. '빵'과 관련한 규정 2.1.1-3절은 빵에 해당하는 '쇼트브레드' 또는 '크리스피브레드' 그리고 '빵'으로 판매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효모를 넣지 않고 만든 식품임을 나타내는 '무효모빵 (unleavened bread)'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은 본 규정집에서 정의하는 빵이 아니다. 두유(soy milk)나 콩 아이스크림(soy ice cream)이 판매되는 경우와 같이 콩(soy)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암시되는 맥락인 경우, 동제품은 유제품 기준이 적용되는 유제품이 아님을 나타낸다.

### 1.1.1-14 식품과 관련된 기타 요건

'식품의 취급과 관련된 요건'

(1) 본 규정집에서 식품 취급에 대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식품은 반드시 그 요건에 부합해서 처리해야 한다.

참고. 동 세부조항은 제3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호주에서만 적용된다.

'기록 보존과 관련된 요건'

(2) 본 규정집에서 식품과 관련해서 기록 보존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

### 1.1.1-15 특성 및 순도

- (1) 본 절은 본 규정집에 따라 아래의 물질이 식품에 첨가되는 경우 또는 식품 내에 사용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a)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
  - (b)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 물질;

- (c) \*영양물질로 사용되는 물질;
- (d) \*신소재 또는 신기술 식품
- (2) 해당 물질은 부칙 3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1.1.1-16 1.1.2-2(3)조에 정의된 용어를 구별하기 위한 별표(\*) 사용

- (1) 본 규정집에 사용되는 용어 중 다수는 1.1.2-2(3)조에 정의되어 있다.
- (2) 1.1.2-2(3) 세부조항에 정의된 용어의 대다수는 '\*탄수화물'의 경우처럼 용어를 시작할 때 별표를 사용하여 구별한다.
- (3) 별표(\*)는 통상 조항(세부조항이 없는 경우), 세부조항 또는 정의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를 표기할 때 사용된다. 동일한 조항에서 그 용어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표를 붙이지 않는다.
- (4) 제목, 참고, 예, 설명 표, 지침, 개괄 조항, 도표에서는 용어에 별표를 붙이지 않는다.
- (5) 용어가 별표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어에 정의 또는 해석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실을 무시해도 된다.
- (6) 본 규정집에서 별표로 표기하지 않는 기본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1.2-2(3)조에 정의된 용어 중 별표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용어

항목	용어		
1	강조표시(claim)		
2	규정집(Code)		
3	지방(fat)		
4	식품(food)		
5	식품첨가물(food additive)		
6	과일(fruit)		
7	영아(infant)		
8	라벨(label)		
9	라벨 표시(labelling)		
10	영양함량 강조표시(nutrition content claim)		
11	포장(package)		
12	제공량(serving)		
13	원료 문구(statement of ingredients)		
14	당류(sugars)		



## 1.1.2 정의(Definitions used throughout the Code)

-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에 따른 기준이다. 동시에 호주·뉴질랜드식 품 기준규정집(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된 것들이다. (1.1.1-3절 참조)

### 1.1.2-1 명칭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1.2-정의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 92절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절 참조)

### 1.1.2-2 정의 - 일반

참고. 식품에 대한 정의는 1.1.2-3절에 명시되어 있다.

- (1) 제(2)조에 따라, 본 규정집과 \*FSANZ법에서 동시에 사용된 용어의 경우 상반되는 의도 가 보이지 않는 한 동 용어는 FSANZ법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2) 적용법에 의거해 본 규정집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규정집과 적용법에서 동시에 사용된 용어의 경우 상반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동 용어는 적용법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예시. 상반된 의도는 1.1.2-2(3) 세부조항의 '라벨'의 정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3) 상반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본 규정집에서는 아래의 정의를 적용한다:

GMP 승인 첨가물(additive permitted at GMP) - 1.1.2-11절 참조

- Agvet 화학물질(Agvet chemicals)은 농수의화학규정(Agvet Code) 내의 농약 또는 동물용의 약품을 의미한다.
  - 참고. Agvet 규정은 1994년 농수의화학규정법(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Code Act 1994)(Cth)의 부칙으로 설정된 농수의화학규정(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Code)이다. (FSANZ법 4(1)세부조항 참조)

아미노산함량 조정 식품(amino acid modified food) - 2.9.6-2절 참조

AS/NZS는 호주표준협회(Standards Australia)에서 공표한 '호주·뉴질랜드 공동기준'을 의미

하다.

- 적용 법(application Act)은 \*관할구역 내의 법 또는 명령으로, 이에 의거해 본 규정집에서 정의하는 요건들이 해당 관할구역에서 적용된다.
- AS는 호주표준협회에서 공표한 호주 기준을 의미한다.
- **진열 케이스(assisted service display cabinet)**는 구매자의 요청 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담당자가 필요한 밀폐 또는 반 밀폐형의 진열 케이스를 의미한다.
- 책임자(authorised officer)는 관할구역과 관련한 개념으로, 각 관할구역 내 적용법 조항의 시행 또는 이를 포함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관할구역의 적용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거나 임명된 자를 의미한다.
- 유효탄수화물(available carbohydrate)은 부칙 11-3에 부합하여 계산한 이용 가능한 탄수화물을 의미한다.
- 유효차감탄수화물(available carbohydrate by difference)은 부칙 11-3에 부합하여 공제 법에 의해 계산한 유효차감탄수화물을 의미한다.
- 평균 열량(average energy content)은 부칙 11-2에 부합하여 계산한 평균 열량을 의미한다.
- 평균 함량(average quantity)은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로부터의 식품 내 물질의 평균함량으로, 다음의 평균을 의미한다.
  - (a) 1회 분량 또는 기준 양이 명시된 경우에 그러한 1회 분량 또는 기준 양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의 양
  - (b) 그 외의 경우 식품 내의 물질의 비율로서 백분율로 나타낸 양 참고. 1.1.1-6절 참조
- 제빵 판매목표일(baked-for date)는 빵과 관련된 용어로
  - (a) 제빵시간이 정오 이전이면 구워진 일자(baked-on date)가 판매목표일이 되며,
  - (b) 제빵시간이 정오 또는 정오 이후인 경우 구워진 일자(baked-on date) 다음 날을 판매목표일로 한다.
- 제빵 일자(baked-on date)는 빵과 관련된 용어로 빵은 구운 당일을 의미한다.
- 라벨 부착(bear a label): 판매용 식품은 규정된 종류 또는 규정된 함량과 함께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아래 중 하나로 나타내거나 해당 식품의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 (a) 종류 또는 함량이 적혀 있는 라벨
  - (b) 종류 또는 함량이 함께 적혀 있는 라벨
- 품질유지기한(best-before date)은 판매용 식품에 관한 것으로, 하기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우 식품의 온전한 판매 가능성 및 명시적, 묵시적으로 강조된 품질이 유지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 (a) 보관 기간 동안 포장은 손상이 없을 것과
- (b) 기준 1.2.6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보관 조건에 맞춰 보관될 것.
- 생물학적 활성 물질(biologically active substance)은 영양소 이외의 물질로 건강 효과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 생물학적 마커(biomarker)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파라미터로, 인체에 비정상적인 수치로 존재하는 경우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 대량 화물 컨테이너(bulk cargo container)

- (a) 리프트 밴, 이동식 탱크, 선적용 컨테이너, 항공 화물 컨테이너나 기타 유사한 구조의 운반장비를 의미한다.
  - (i) 영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복적인 사용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음;
  - (ii) 즉각적인 재포장 없이도 하나 이상의 운송 방법으로 상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 (iii) 한 운송 수단에서 다른 운송 수단으로의 신속한 취급 및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함;
  - (iv) 쉽게 채우고 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함;
  - (v) 내부 용량이 1<sup>3</sup>미터 이상이어야 함

### 그리고,

- (b) 컨테이너와 함께 수입되고 해당 컨테이너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일반 적인 부착물 및 장비를 포함하고 있음;
- (c) 차량, 일반적인 포장용 상자, 운송용 나무상자, 상자나 포장에 사용되는 유사한 품목은 포함하지 않음
- 업체 주소(business address)란 해당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도로 주소 또는 위치에 관한 설명이다.
- **탄수화물(carbohydrate)**은 맥주(1.1.2-3절 참조)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유효 탄수화물 또는 \* 차감계산유효탄수화물(available carbohydrate by difference)을 의미한다.
- 출장 요리업체(caterer)는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처리하거나 제공하는 개인, 시설 또는 기관(예: 출장 요리 시설, 식당, 매점, 학교, 병원)을 의미한다.
- 특징적 성분(characterising component) 1.1.2-4절 참조

**강조표시(claim)**은 식품이나 식품의 성질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강조, 표시, 디자인 또는 정보로서 본 규정집 상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 영양 정보를 요하는 강조표시(claim requiring nutrition information):

- (a) 의미:
  - (i) 영양 함량 강조표시; 또는
  - (ii) 건강 강조표시
- (b) 불포함 내용:
  - (i) 적용법에서 요구하는 표시(declaration);
  - (ii) 보증광고
  - (iii) \*지정음료의 무글루텐(글루텐프리) 강조표시

규정집(code) 또는 본 규정집(this code)은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 규정을 의미한다.

- **코드번호(code number)**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코드 다음의 중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
  - (a) 해당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부칙 8의 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련의 번호
  - (b) 숫자 앞에 알파벳 'E'가 붙음

GMP 승인 색소(coloring permitted at GMP) - 1.1.2-11절 참조

색소의 최대 허용 기준(coloring permitted to a maximum level) - 1.1.2-11절 참조

분쇄(comminuted)는 토막 썰거나 잘게 깍둑 썰거나 갈았다는 의미이다.

- 성분(component)이란 식품의 원료와는 별개로 식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 예시. 탄산수소나트륨이 식품을 생산하는 데 원료로 사용된 경우 요리를 하면 이산화탄소와 소금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금은 식품의 성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 복합원재료(compound ingredient)는 식품의 원료로서 그 자체가 2 개 이상의 원료로 만들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식이 섬유(dietary fiber)는 식물의 식용 가능한 부분 또는 그것의 추출물로부터 얻은 것 또는 합성 유사체로서,
  - (a) 일반적으로 대장에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발효되고,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 (b)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유익한 생리학적 효과를 촉진함:
  - (i) 배변활동
  - (ii)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 (iii) 혈당 조절
- (c) 2보다 큰 중합도를 갖는 다당류 또는 올리고당류; 및
- (d) 리그닌(lignins) 포함
- 보증광고(endorsement)는 보증인/보증기관의 허가로 만들어진 영양 함량 강조표시 또는 건 강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 보증인/보증기관(endorsing body)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 (a) 영양 또는 건강 관련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고
  - (b) \*공급 업체에 보증광고를 하도록 허가하는 역할을 한다.
- 안전추정 적정일일섭취량(ESADDIs, Estimated Safe and Adequate Daily Dietary Intake)는 안전하다고 추정되는 적정일일섭취량을 의미한다. 1.1.2-10 참조
- 이물질 잔류물질한도(extraneous residue limit) 또는 ERL은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해당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에 대한 부칙 21에 명시된 양을 의미한다.
- 지방(fat)은 1.2.7과 1.2.8, 부칙 4와 부칙 11의 총지방량을 의미한다.
- **착향료(flavouring substance)**는 본 규정집에 따라 향미를 더해주는 기술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 식품(food) (2)조 참조 (관련 적용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참고. 다양한 적용법에서 각각 식품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모든 정의 규정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광범위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바, 인간이 섭취하도록 의도된 것 또는 이에 제공된 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효과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식품법(Food Act)은 식품법 2014(NZ)을 의미한다.
- 식품첨가물(food additive)은 1.1.2-11절 참조
- 식품군(food group)은 다음의 그룹 중 하나를 의미한다.
  - (a) 빵(발효시킨 빵이나 발효시키지 않은 빵), 곡식, 밥, 파스타, 국수
  - (b) 과일, 채소, 허브, 향신료 및 진균류
  - (c) 우유, 탈지유, 크림, 발효유, 요구르트, 치즈, 가공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분유, 농축

- (d) 식육류, 어류, 알류, 견과류, 종실류 및 말린 콩류
- (e) 버터, 식용유지, 식용유지 스프레드를 포함하는 지방
-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food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은 유전자 기술에 의해 변형된 유기체로부터 얻었거나 개발한 식품을 의미한다.
  - 참고. 본 정의에는 동물이나 유기체 자체가 유전자 기술의 산물이 아닌 한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사료를 먹인 동물 혹은 기타 유기체에서 얻은 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을 의미한다.
- **FSANZ법(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의미한다.
- 기금 모집 행사(fund rasing event)는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자선 목적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를 의미한다.
- **갈락토올리고당(galacto-oligosaccharides)**은 효소 작용에 의해 젖당에서 생산되는 물질들의 혼합물로 2-8개 사이의 단위당으로 구성되며, 최종말단 단위당은 포도당이고 나머지 당류는 갈락토오스인 것과 갈락토오스 2개가 결합한 이당류를 말한다.
- 유전자 기술(gene technology)은 살아 있는 세포나 유기체의 유전성 유전물질을 변경시키는 재조합 DNA 기법을 의미한다.
- 일반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general level health claim)는 높은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가 아 닌 건강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 **일반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 표(general level health claim table)**는 부칙 4-5절의 표를 의미한다.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2.7.5-4절 참조
- **글루텐(gluten)**은 밀, 호밀, 귀리, 보리, 라이밀, 스펠트밀에 들어있는 주요 단백질로 만성 소화 장애와 포진성 피부염과 관련이 있다.
- **혈당지수(GI, glycaemic index)**는 주어진 식품 내에 존재하는 소화 가능한 탄수화물의 혈당 상승 능력을 공인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측정한 것이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또는 우수제조관리기준은 식품첨가물과 식품의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 물질의 첨가와 관련하여
  - (a) 식품에 첨가된 물질의 양은 기대 효과를 내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
  - (b)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물질과 그 파생물질의 양을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는 것;

- (i) 제조, 가공, 포장의 과정에서 사용한 결과로 인하여 식품의 \*성분으로 남는 경우
- (ii) 식품 자체의 물리적 효과 또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닌 경우
- (c) 물질의 준비와 취급은 식품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할 것
- 식품 포장용 바구니(Hamper)는 장식이 된 바구니나 상자, 또는 용기를 의미하며
  - (a) 구별할 수 있는 식품을 별도로 1가지 이상 담고 있으며,
  - (b) 장식 천, 유리, 접시와 같은 기타 물품을 포함할 수 있다.
-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는 식품이나 식품의 특성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술, 강조 또는 암시하는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참고. 2.10.2-8(3)조 참조

- 건강 효과(health effect)는 아래의 효과 중 1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체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 (a) 생화학적 과정이나 결과
  - (b) 생리적 과정이나 결과
  - (c) 기능적 과정이나 결과
  - (d) 성장 및 발달
  - (e) 신체적 효능
  - (f) 정신적 효능
  - (q) 질병, 질환 또는 상태
- 높은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high level health claim)는 \*심각한 질환이나 심각한 질환의 \*바이오 마커와 관련된 \*건강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 높은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 표(high level health claim table)는 부칙 4-4절 참조

### 수입(import):

- (a) 호주의 경우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
- (b) 뉴질랜드의 경우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됨
- 개별 분량 포장(individual portion pack) 1.2.1-6(3)조 참조

개별 단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용기를 의미한다:

a) 최종내부 포장으로;

- b) 알코올의 부피 비율이 1.15% 이상인 음료를 담고 있음.
- 영아(infant)는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의미한다.
- **내부 포장(inner package)**은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아래에 명시된 식품의 개별 포장을 의미한다.
  - (a) 2.9.5-9절에 따라 라벨이 표시된 다른 포장 내에 담겨 판매되는 식품이면서,
  - (b) 환자나 \*담당기관의 거주자에 대해 담당 기관이 판매하는 경우 외의 일반 개별 판매용도로는 제작되지 않은 것,
    - 예시. 내부 포장의 예로는 완전하게 라벨 표시가 되어있는 소매 판매용 상자 내에 담겨 있는 분말 식품의 개별 분량 포장으로, 상자는 소매 판매가 가능하다.
- 회사 내 이동(intra-company transfer) 1.2.1-18절 참조
- 이눌린형프룩탄(inulin-type fructans)은 최종  $\alpha$ -D-(1 $\rightarrow$ 2) 글루코실프룩토스에 연결된 포도당 단위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beta$ -D-(2 $\rightarrow$ 1) 프룩토실프록토스를 가진 당류의 혼합을 의미한다.
- **방사선 조사(irradiation)**는 식품에 이온화 방사선 작용을 가하는 것으로 측정 또는 검사 도구를 사용해 이온화 방사선 작용을 가하는 것을 제외하며, '방사능으로 처리하다'와 '방사능으로 처리된'은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 관할구역(jurisdiction)은 호주의 주 또는 특별자치구,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연방을 의미한다.
- 라벨(label)은 판매용 식품과 관련하여 서면 형식의 꼬리표, 브랜드, 상표, 문구 또는 그것을 설명하는 표시나 디자인, 또는 설명의 형태로서:
  - (a) 해당 식품 또는 식품 포장에 부착되거나
  - (b) 식품과 함께 구매자에게 제공되거나
  - (c) 식품 판매 시, 식품과 연계되어 진열되는 것을 의미한다.

### 라벨 표시(labelling)

- (a) 판매용 식품과 관련해서 식품과 함께 표시되는 모든 라벨을 의미한다.
- (b) 식품의 표시에 구체적 함량을 표시하라는 요건은 적어도 하나의 라벨이 그러한 함량을 표시하라는 요건이다.
- **리스테리아 살균 공정(listericidal process)**은 식품 내 리스테리아균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공정을 의미한다.
- **로트(lot)**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확인한 식품의 준비량 또는 판매를 위해 포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분리한 양을 의미한다. 그예로서,

- (a) 특정 준비 단위 또는 포장 단위를 기점으로
- (b) 일반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시간 동안 유지된다.
- 로트 ID(lot identification)는 제품과 관련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는 숫자 또는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 (a) 식품이 포장 또는 준비되는 시설
  - (b) 식품 일부를 이루는 부분
- 최대잔류허용량(maximum residue limit) 또는 MRL은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에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을 나타내는 부칙 20에 명시된 양을 의미한다.
- 의료 기관(medical institution) 1.1.2-7절 참조
- 중쇄포화지방(medium chain triglyceride)은 주로 8:0과 10:0인 포화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중성지방을 의미한다.
- NPSC 충족(meet the nutrient profiling scoring criterion)은 부칙 4-6에 나타난 표의 1열에 기술한 식품의 \*영양 프로파일링 점수가 그 표의 2열에 있는 식품의 점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단일 불포화 지방산(monounsaturated fatty acids)**은 시스형(cis-) 불포화 지방산의 총합을 의미한다.
- 비전통 식품(non-traditional food) 1.1.2-8절 참조
- **신소재 식품(novel food)** 1.1.2-8절 참조
- NPSC(nutrient profiling scoring criterion)는 영양 프로파일링 점수 기준(부칙 4-6 참조)을 의미한다.
- 영양 함량 강조표시 (nutrient content claim) 1.1.2-9절 참조

참고. 2.10.2-8(3)조 참조

- 영양정보표(nutrition information panel)은 기준 1.2.8에 따라 식품의 포장에 붙은 라벨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영양정보표를 의미한다.
- 영양 프로파일링 점수(nutrient profiling score)는 1.2.7-25절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최종 점수를 의미한다.
- 영양물질(nutritive substance) 1.1.2-12절 참조
- NZS(New Zealand Standard)는 뉴질랜드 기준청(Standards New Zealand)에서 출간한 뉴질 랜드 기준을 의미한다.
- 일일섭취량(one-day quantity)은 운동선수를 위한 조제 건강보조 스포츠 식품과 관련된 것

으로 라벨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서 1일 동안 섭취하는 식품의 양을 의미한다.

참고. 카페인 조제음료와 관련한 일일섭취량의 의미는 2.6.4-5(5)조를 참조한다.

### 포장(package)

- (a) 판매용 식품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거나 덮거나 밀폐하거나 담거나 포장하는 용기나 포장지를 의미하고,
- (b) 1 개 이상의 포장에 담겨 이동 또는 판매 또는 이동 및 판매의 의도가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각각의 포장을 포함하며,
- (c)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제외된다.
  - (i) \*벌크 화물 컨테이너;
  - (ii) 화물 운반대의 오버랩(overwrap);
  - (iii) 식품의 라벨을 가리지 않는 운송용 상자 또는 포장;
  - (iv) 운반 차량;
  - (v) 자동판매기;
  - (vi) 식품 포장용 바구니(hamper);
  - (vii) 교도소, 병원, \*의료 기관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덮개가 있는 접시, 컵, 쟁반, 기타 식품 용기 포함);
  - (viii) 기준 2.9.5 \*담당 기관이 환자 또는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덮개가 있는 접시, 컵, 쟁반 또는 기타 식품 용기

### 허용된 착향료(permitted flavouring substance)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다음의 출판물 중에서 최소한 한 곳에 제시된 물질
  - (i) 미국 향료 및 추출물 제조업체 협회에서 1960년-2019년 (29판) 사이에 발행한 착향료 물질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목록
  - (ii) 화학적으로 정의된 착향료 물질, 유럽 위원회, 2000년 11월호
  - (iii) 착향료 물질 리스트를 채택하고 있는 2012년 10월 1일자 위원회 규정(EU) No 872/2012의 부속서 1[2012] OJ L267/1
  - (iv) 21 CFR § 172.515
- (b) 채소 또는 동물에서 비롯된 물질, 또는 이를 건조, 굽기, 발효 등의 전통적인 조리방 식에 의한 가공을 거친 후의 물질에 물리적, 미생물학적, 효소, 또는 화학적 가공을 거쳐 얻는 향료물질
- (c) 인공적인 합성에 의해 얻은 향료 물질로 (b)항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한 향료 물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식물성스테롤, 식물성스타놀 및 그 에스테르(phytosterols, phytostanols and their esters): 식물성스테롤, 식물성스타놀 및 그 에스테르에 관한 언급은 부칙 3-24의 식물성스테롤, 식물성스타놀 및 그 에스테르에 관한 규격을 충족하는 물질에 관한 부분이다.
- **다가 불포화 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s)**은 시스(cis)-시스(cis)-메틸렌 형태의 이중결합이 있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총합을 의미한다.
- 임산부 경고 라벨(pregnacy warming label)은 임신부 경고 픽토그램, 또는 임신부 경고 마크를 의미한다.

임신부 경고 라벨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구성된다:

- (a) 임신부 경고 픽토그램;
- (b) "임신부 경고"라는 경고문구;
- (c) "음주는 당신 아이에게 평생에 걸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하나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야 함



임신부 경고 픽토그램은 아래와 같이 임신부가 와인을 들고 있는 실루엣이 취소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 지정 알코올음료(prescribed alcoholic beverage)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음료를 의미한다.
  - (a) 알코올의 부피가 1.15% 이상이고
  - (b) 다음의 하나에 해당한다:
    - (i) 소매 판매용; 또는
    - (ii) 추가적인 처리, 포장 또는 라벨링없이 소매에 적합한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 (c) 다음의 음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 (i) 소매 판매용; 또는
    - (ii) 구매자가 있는 자리에서 포장된 경우
- 지정 음료(prescribed beverage)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표준화된 알코올음료

- (b) 0.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 지정음료 글루텐프리(무글루텐) 강조 표시(prescribed beverage gluten free claim)는 글루텐 '프리'라는 구절 또는 유사한 동의어를 사용한 \*지정된 음료의 글루텐 함량과 관련된 영양 함량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 지정 명칭(prescribed name)은 특정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본 규정집의 조항에서 해당 식품의 명칭으로 명시한 이름을 의미한다.

참고. 기준 1.2.1과 1.2.2-2의 표시 조항에 따라 식품에 지정된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식품의 라벨 표시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가공보조제(processing aid) - 1.1.2-13절 가공보조제로서 사용 참조

식품의 특성(property of food)은 \*성분, 원료, 식품의 구성 및 기타 특징을 의미한다.

단백질 대체재(protein substitute)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L-아미노산
- (b) 영아용 조제식 제품의 기본 원료인 단백질 하나 이상의 가수 분해물
- (c) L-아미노산과 영아용 조제식 제품의 기본 원료인 단백질 하나 이상의 가수분해물의 혼합물

RDI(recommended dietary intake)는 권장식이섭취량을 의미하며, 1.1.2-10절을 참조한다.

즉석섭취식품(ready-to-eat food)은 다음과 같은 식품을 의미한다.

- (a) 판매되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비되는 식품이면서;
- (b) 소비 전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 (c) 다음과 같은 상태가 아닌 식품을 의미한다.
  - (i) 상온에서 쉽게 상하지 않는 식품
  - (ii) 생과일
  - (iii) 생채소
  - (iv) 껍질이 있는 견과류
  - (v) 살아있는 이매패류
- 기준 식품(reference food)은 강조표시(claim)와 관련되며 다음을 의미한다.
  - (a) 강조표시를 하는 식품과 동일한 종류로서, 추가로 가공, 조제, 재조제, 또는 변경하여 에너지 수치를 증감시키거나 강조표시 대상인 영양분의 양을 증감시키지 않은 식품 또는



(b) 강조표시를 하는 식품과 동일 \*식품군에 있는 식이 대체식품

### 기준 수량(reference quantity)

- (a) 부칙 17-4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 (i) 표에 명시된 해당 식품의 양
  - (ii) 사용방법에 따라 희석 또는 환원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희석 또는 환원되었을 때 (i)호에 언급한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품의 양
- (b) 기타 식품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 (i) 정상적인 1회 분량
  - (ii) 사용방법에 따라 희석, 환원, 건조, 준비가 필요한 식품의 경우, 희석, 환원, 건조, 준비되었을 때 정상적인 1회 분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품의 양
- 방출성 칼슘(releasable calcium, Ca<sub>R</sub>)은 20 분 동안 추잉껌을 씹었을 때 입 속으로 분비된 칼슘을 mg/g으로 측정한 양을 의미하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Ca_{R} = \frac{\left( \mathit{Ca}_{0} \times \mathit{W}_{0} \right) - \left( \mathit{Ca}_{c} \times \mathit{W}_{c} \right)}{\mathit{W}_{0}}$$

여기에서

Ca<sub>0</sub> : 추잉껌의 원래 칼슘 농도(mg/g)

W<sub>0</sub> : 추잉껌의 원래 중량(q)

Cac: 20분 동안 씹은 추잉껌의 잔류 칼슘(mg/g)

W<sub>C</sub> : 씹은 추잉껌의 중량(q)

관련 당국(relevant authority)은 해당 적용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의미한다.

- 필수 명칭(required name)은 특정 식품의 명칭은 Standard 1.2.3의 3부 목적에 따른 해당 식품의 필수 명칭으로 섹션 1.2.3-5에 따라 부여된 명칭을 의미한다.
- 담당 기관(responsible institution)은 환자 또는 거주자의 복지를 책임지고 그들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병원, 호스피스,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 교도소, 기숙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의미한다.
- 포화 지방산(saturated fatty acid)은 이중 결합을 포함하지 않는 지방산의 총량을 의미한다.

판매(sell) - (2)조 참조 (관련 적용법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님)

참고. 다양한 적용법에서 각각 판매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모든 정의 규정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바, 판매용 제공 또는 전시를 포

함해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기타 맥락을 포함한다.

- 심각한 질병(serious disease)은 의료 전문가와 협의 하에 이루어지거나 의료 전문가의 감독에 따라 일반적으로 진단, 치료, 관리되는 질병, 질환, 상태를 의미한다.
- 1회 분량(serving)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준비했을 때 또는 섭취 전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때, 정상적인 1회 분량을 의미한다. 식사대용 조제식의 경우 한 끼의 식사와 동일한 분량을 의미한다.
- 글자 크기(size of type)는 글자 또는 숫자의 위부터 아래까지 측정한 크기를 의미한다.
- 소포장(small package)은 표면적이 100 cm<sup>2</sup> 미만인 포장을 의미한다.
- SPC는 온도 30°C에서 72 시간 배양 후의 표준플레이트계수(standard plate count)를 의미한다.
- 표준 음료(standard drink)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음료와 관련, 20℃에서 측정했을 때 10 g의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의 양을 의미한다.
- 표준 알코올음료(standardised alcoholic beverage)는 맥주, 브랜디, 사과주, 과일주, 과일주가 공품, 리큐르, 미드(mead, 벌꿀주), 페리(perry), 증류주(spirit), 채소주 및 채소주가공품, 와인 또는 와인 가공품을 의미한다.
- 원료 표시(statement of ingredients) 1.2.4-2절 참조

### 당류(sugars):

- (a) 기준 1.2.7, 기준 1.2.8, 부칙 4('당류'과 같이 부칙으로 표현한 부분 제외)에서 단당류 와 이당류를 의미한다.
- (b) 그 외의 경우, 어떤 원료로부터 파생된 아래의 제품 중 하나를 의미한다:
  - (i) 포도당, 과당, 설탕, 젖당을 포함하는 육탄당 단당류 및 이당류
  - (ii) 전분 가수 분해물
  - (iii) 글루코스 시럽, 말토덱스트린, 기타 유사 제품
  - (iv) 설탕 정제 과정에서 파생된 제품으로 황설탕이나 당밀 등도 포함된다.
  - (v) 아이싱설탕
  - (vi) 전화당
  - (vii) 과당 시럽
- 그러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 (i) 맥아 또는 맥아추출물
  - (ii) 소비톨, 만니톨, 글리세롤, 자일리톨, 폴리덱스트로스, 아이소말트, 말티톨,

말티톨시럽, 에리쓰리톨 또는 락티톨

참고. 설탕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1.1.2-3절 참조

- **공급업자(supplier)**는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을 포장,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총 식물성스테롤 함량(total plant sterol equivalents content)은 다음의 합을 의미한다.
  - (a) 식물성스테롤(phytosterols)
  - (b) 식물성스타놀(phytostanols)
  - (c) 식물성스테롤 에스테르 및 식물성스타놀 에스테르의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 성스테롤 및 식물성스타놀
- **트랜스 지방산(trans fatty acids)**은 하나 이상의 트랜스 배열의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총량을 의미한다.
- 운반용 외부포장(transportation outer)은 컨테이너 또는 싸개(wrapper)를 의미하며
  - (a) 운송과 유통을 목적으로 포장 또는 포장하지 않은 식품을 싸는 역할을 하고
  - (b) 섭취 전 또는 소매판매를 위해 제거되거나 식품 구입시 구매자가 갖고 가지 않는다.
- 단위 수량(unit quantity)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고체, 혹은 반고체 식품의 경우 100 g
  - (b) 음료 또는 액체 식품의 경우 100 ml
- 소비기한(use-by date)은 판매용 식품의 경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될 때 건강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명시된 날짜 이후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 (a) 해당 식품은 보관 기간 동안 포장 상태를 원래대로 유지해야 하며,
  - (b) 기준 1.2.6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보관 조건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
- 식품첨가물로 사용(used as a food additive) 1.1.2-11절 참조
- 영양물질로 사용(used as a nutritive substance) 1.1.2-12절 참조
- 가공보조제로 사용(used as a processing acid) 1.1.2-13절 참조
- 경고 문구(warning statement)는 판매용 식품의 경우, 식품의 특정 측면에 대해 아래에 명시된 조항의 표현을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 문구이다.
  - (a) 1.2.3-3절 (로얄젤리에 관한 경고 문구)
  - (b) 2.6.3-4절 (카바에 관한 경고 문구)
  - (c) 2.9.1-19(1)조 또는 2.9.1-13절 (영아용조제식에 관한 경고 문구)

- (d) 2.9.2-7(3)(c)호 또는 2.9.2-8(1)(b)호 (영아용 식품에 관한 경고 문구)
- (e) 2.9.4-4(1)(a)(iii)목 또는 2.9.4-4(1)(a)(iv)목 (식이보충용 조제 스포츠식품)

### 1.1.2-3 정의 - 특정 식품

참고. 비식품 용어에 대한 정의는 1.1.2-2절에 제공되어 있다.

- (1) 본 규정집이 본 절에서 정의된 특정 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물질로서 의 물질(비타민 또는 무기질 포함)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정의는 그러한 물질이 사용된 식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2) 본 규정집에서 상반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아래의 정의가 적용된다.
  - 조제 우유(adjusted milk)는 연유, 분유, 농축(증발)우유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우유를 의미한다.
    - (a) 연유, 분유, 농축(증발)우유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유로서,
    - (b) 기준 2.5.7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우유 성분이 첨가되거나 제거된 것으로
    - (c) 유청 단백질 대 카세인 비율이 원래의 우유와 동일한 우유

### 맥주(beer)는

- (a) 흡열매 또는 흡열매 가공물질을 이용하여 맥아 또는 발아하지 않은 곡물 또는 둘 다의 물추출액을 효모로 발효시켜 조제한 제품, 또는
- (b) 이에 생산 과정 중 다음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 (i) 곡물 제품 또는 다른 탄수화물 원료
  - (ii) 설탕
  - (iii) 소금
  - (iv) 허브와 향신료

### 브랜디(brandy)

- (a) 와인, 포도 또는 포도가공품을 발효해서 얻은 물질을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또는
- (b) 생산 과정 중 다음의 물질을 가한 증류주를 의미한다.
  - (i) 물
  - (ii) 당류
  - (iii) 꿀
  - (iv) 향신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v) 포도주스
- (vi) 포도주스 농축액
- (vii) 와인
- (viii) 자두주스

참고. 용어 브랜디는 기준 4.5.1에서는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 빵(bread)

- (a) 하나 이상의 곡물의 가루 또는 굵게 빻은 것을 물로 반죽하고 효모발효하여 구운 식품: 또는
- (b) 여기에 기타 식품이 첨가된 음식을 의미한다.

발효청량음료(brewed soft drink)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이다.

- (a) 물, 설탕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섞어 발효 과정을 거쳐 조제된 제품
  - (i) 과일즙 또는 추출액 또는
  - (ii) 채소즙 또는 추출액
- (b) 부피기준 알코올 함량이 1.15% 이하인 식품

### 버터(butter)

- (a) 전적으로 우유와 우유로부터 얻은 제품으로부터 파생된 식품으로, 주로 W/O의 에 밀션 형태의 제품 또는
- (b) 이에 아래 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의미한다.
  - (i) 물
  - (ii) 소금
  - (iii) 젖산 생성 미생물
  - (iv) 향미 생성 미생물

곡류 기반 음료(cereal-based beverage)는 곡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음료를 의미한다.

영아용 곡류 기반 식품(cereal-based food for infant)은 곡물을 원료로 하지만 음료를 포함 하지 않는 영아용 식품을 의미한다.

### 치즈(cheese)

(a) 아래의 과정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이용하여 얻은 고체 또는 반고체 유제품으로서 숙성 여부, 코팅 여부를 불문한다.

- (i) 렌넷(rennet) 또는 기타 적합한 응고제 작용에 의해 우유 또는 우유로부터 얻은 물질 또는 이들 두 물질 모두를 전부 또는 일부 응고하고 응고 시 분리된 유청을 일부 걸러내는 과정
- (ii) (a)(i)에 설명된 제품과 유사한 물리적, 화학적, 관능적 특성을 갖는 완제품을 제공하는 우유 또는 우유에서 얻은 물질 또는 이들 두 물질의 농축 또는 응고를 포함하는 가공 기술; 또는
- (b) 이에 다음 원료가 생산 과정에 첨가되는 제품:
  - (i) 물
  - (ii) 젖산 생성 미생물
  - (iii) 향미 생성 미생물
  - (iv) 젤라틴
  - (v) 전분
  - (vi) 식초
  - (vii) 소금
  - (viii) 기준 2.5.4에 따라 첨가되는 톨유 식물성스테롤에스테르(tall oil phytosterol esters)
- 초콜릿(chocolate)은 다음을 특징으로 하는 당과류를 의미한다:
  - (a) 아래 항목을 포함한다:
    - (i) 코코아콩 파생물
    - (ii) 코코아 버터나 유지방 외에 50g/kg 이하의 식용유지
  - (b) 최소 200g/kg의 코코아콩 파생물의 조제물
- **사과주(Cider)**는 사과 또는 사과와 배 주스 또는 발효액으로 만든 과일주로 배 주스 또는 발 효액 함량이 25%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 코카(coca bush)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코카 관목(Eurythroxylum coca) 또는
  - (b) 코카 관목에서 추출한 물질
- **코코아(cocoa)**는 소금이나 향신료 첨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의 일부를 제거한 코코아콩으로부터 조제된 분말 제품을 의미한다.
- 커피(coffee)는 커피콩을 볶거나 갈거나 혹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통해 조제된 제품을 의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한다.

연유(condensed milk)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우유 또는 조제 우유에서 물을 일부 제거하고 당류를 추가해 얻은 식품으로 소금 또는 물을 첨가할 수 있는 식품, 또는
- (b) 기타 공정에서 얻은 동일한 성분의 식품을 의미한다.
- 크림(cream)은 탈지우유에 지방이 유화된 형태로써 상대적으로 지방이 풍부한 유제품으로
  - (a) 우유에서 분리하여 얻거나; 또는
  - (b) 우유에서 분리하여 우유 또는 우유에서 얻은 제품을 첨가해서 얻을 수 있다.
- 전체 또는 조각별로 염지 그리고/또는 건조시킨 살코기(cured and/or dried meat flesh in whole cuts or pieces)는 붙어있는 뼈를 포함한다.
- 디카페인 커피(decaffeinated coffee)는 대부분의 카페인을 제거하여 만든 커피를 의미한다.
- 디카페인 차(decaffeinated tea)는 대부분의 카페인을 제거하여 만든 차를 의미한다.
- 건조육(dried meat)은 건조시킨 고기를 의미하며, 천천히 절인 건조육은 포함하지 않는다.
- 분유(dried milk)는 우유 또는 조제우유에서 물을 일부 제거해 얻은 분말 식품을 의미한다.
- 식용유지(edible oil)는 수생 식물과 수생 동물을 포함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지방산의 트리글리세라이드, 다이글리세라이드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 식용 유지에는 유리 지방산, 비비누화 성분 및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지, 왁스, 글리세로인지질을 포함한 기타지질이 미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식용유지 스프레드(edible oil spread)

- (a) 식용유지와 물로 구성되고, W/O 에멀션 형태로 존재하는 식품 또는
- (b) 이에 아래의 첨가물이 가해지는 식품을 의미한다:
  - (i) 물
  - (ii) 식용 단백질
  - (iii) 소금
  - (vi) 젖산 생성 미생물
  - (v) 향미 생성 미생물
  - (vi) 유제품
  - (vii) 82 g/kg 이하의 총 식물성스테롤에 해당하는 내용물

- **난제품(egg product)**은 알류 내용물, 건조란, 액상 난백와 액상 난황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알류 내용물을 의미한다.
- 전해질 음료(electrolyte drink)는 60분 이상의 지속적이고 고강도의 신체활동 중, 또는 이후에 체액, 탄수화물, 전해질 및 무기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도록 조제된 음료를 의미한다.
- 전해질 음료베이스(electrolyte drink base)는 전해질 음료를 만드는 고체 또는 액체를 의미한다.
- 농축(증발)우유(evaporated milk)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열을 이용해 물을 일부 제거해서 얻은 제품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첨가할 수 있다.
    - (i) 소금
    - (ii) 물
  - (b) 또는 기타 공정에서 얻은 동일한 성분의 식품을 의미한다.
- **발효유(fermented milk)**는 우유나 우유에서 얻은 제품을 발효시켜 얻은 유제품을 의미하며 발효는 미생물의 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그 결과 응고 및 pH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 **어류(fish)**는 냉혈성 해양 척추동물과 해양 무척추동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패류는 포함되지만 양서류와 파충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 분말 제품(flour product)은 하나 이상의 가루나 굵게 빻은 가루 또는 곡류를 조리하거나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제품으로 빵을 제외한다.
- 가루(flours) 또는 빻은 가루(meals)는 곡류, 콩류, 기타 씨앗을 갈거나 빻은 제품을 의미한다.
- 성장기용 조제식(follow-on formula)은 영아용 조제식을 의미하며
  - (a) 모유 대체물 또는 영아용 조제식 대체품으로 표방되는 식품이며,
  - (b) 생후 6개월부터의 영아를 위해 단계별로 다양화되는 식단에서 영양분의 주요 액상 공급원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 영아용 식품(food for infants):

- (a) 영아를 위한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거나 표방하는 식품을 의미 한다.
- (b) 다음과 같은 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i) 영아용조제식
  - (ii) 식사대용조제식
  - (iii) 보충용조제식

(iv) 가공하지 않은 과일 및 채소

### 특수의료용도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 1.1.2-5절 참조

- 조제음료(formulated beverage)는 무탄산음료로 즉시 마실 수 있는 향료 첨가 음료를 의미한다.
  - (a) 물을 원료로 하고,
  - (b) 비타민 또는 무기질이 첨가되거나 둘 다 첨가되어 있으며
  - (c) 아래 원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과일 함량은 240mL/L 이하여야 함
    - (i) 과일주스
    - (ii) 과일 퓨레
    - (iii) 농축 과일주스
    - (iv) 농축 과일 퓨레
    - (v) \*분쇄 과일
    - (vi) 오렌지 껍질 추출물
  - (d) 또한 당류 함량은 75 q/L 이하이며
  - (e) 다음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 (i) 이산화탄소 또는
    - (ii) 카페인
    - (f) 그리고 다른 음료와 일절 혼합하지 않는다.

### 카페인 조제 음료(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 - 1.1.2-6절 참조

- **식사대용 조제식(formulated meal replacement)**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일 식품 또는 식품을 선택해서 사전 포장한 식품을 의미한다.
  - (a)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대체하도록 특수 조제된 식품으로 전체 식단 대체식을 의미 하지는 않으며,
  - (b) 식사용 조제식으로 표방된다.
- 식이보충용 조제식품(formulated supplementary food)은 에너지와 영양분 섭취가 개인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식단을 보조하도록 특수하게 조제되고 이를 기반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의미한다.
- 유아용 식이보충용 조제식품(formulated supplementary food for young children)은 1~3세의 유아를 위한 식이보충용 조제식품을 의미한다.

- **식이보충용 조제 스포츠 식품(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은 운동선수들이 특정 영양 목표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수 조제된 식품을 의미한다.
- **과일 및 채소류(fruit and vegetables)**는 과일, 채소, 견과류, 향신료, 허브, 진균류, 콩류, 종실 류 등을 의미한다.
  - 참고. 기준 1.2.7과 1.2.8에서는 과일과 채소라는 용어는 별개로 정의되어 있으며 견과 류, 향신료, 허브, 진균류, 콩류, 종실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과일 기반 식품(fruit-based food)은 과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의미한다.
- 과일 음료(fruit drink)는 다음으로부터 조제된 제품을 의미한다.
  - (a) 아래 중 하나 이상
    - (i) 과일주스
    - (ii) 과일 퓨레
    - (iii) 농축 과일주스
    - (iv) 농축 과일 퓨레
    - (v) \*분쇄 과일
    - (vi) 오렌지 껍질 추출물
  - (b) 또한 아래 중 하나 이상
    - (i) 물
    - (ii) 광천수
    - (iii) 당류
- **과일주스(fruit juice)**는 과일로 만든 주스를 의미한다.

#### 과실주(fruit wine) 또는 채소주(vegetable wine)

- (a) 다음과 같은 식품을 의미한다.
  - (i) 과일, 채소, 곡물, 또는 이들 식품을 조합한 후 완전 발효 또는 부분 발효시켜 만든 제품을 지칭한다.
  - (ii) 와인 및 와인 가공품을 의미하지 않는다.
- (b) 생산 중 다음과 같은 식품이 첨가될 수 있다.
  - (i) 과일즙 및 과일즙 제품
  - (ii) 채소즙 및 채소즙 제품

- (iv) 꿀
- (v) 향신료
- (vi) 알코올
- (vii) 물
- 과실주 제품(fruit wine product) 또는 채소주 제품(vegetable wine product)은 과실주나 채소주, 또는 과실주와 채소주 두 가지 모두의 함량이 700mL/L 이상인 식품으로서, 다른 식품과 함께 조제, 가공, 변형 또는 혼합하여 과실주나 채소주가 아닌 제품으로 만든 것을 지칭한다.
- **젤라틴(gelatine)**은 동물의 피부, 뼈 및 기타 콜라겐 함유 성분이나 이들을 결합해서 조제한 단백질 제품을 의미한다.
- **꿀(꿀)**은 꽃의 꿀,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의 분비물,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에서 식물의 즙액을 빠는 곤충이 배출한 분비물에서 꿀벌이 수집하여 자신의 특정 물질을 사용해 변형, 결합한 후 벌집에 저장하여 숙성시키는 천연 당 물질을 의미한다.
- **아이스크림(ice cream)**은 크림이나 유제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해서 기타의 식품과 함께 만든 단맛의 냉동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기포가 들어가 있다.
- 아이싱(icing)은 코팅 용도로 설탕과 다른 식품을 혼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설탕 입히기, 가소성 당의(糖衣), 당의(糖衣) 젤이 포함된다.
- 모조식초(imitation vinegar)는 물과 아세트산을 혼합해 조제한 제품을 의미한다.
- 영아용 조제식(infant formula)은 영아용 조제 식품으로
  - (a) 영아를 위한 모유 대체식으로 표방되며,
  - (b) 4개월-6개월 미만의 영아의 영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 유아용 조제식 제품(infant formula product)은 우유 또는 기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식용 식품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으로, 영아의 연령에 따라 영아의 유일한 또는 주된 액상 영양 공급원으로 기능하기에 영양학적으로 적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 인스턴트 커피(instant coffee)는 커피 수분 추출물로 만든 건조 가용성 고형분을 의미한다.
- **인스턴트 차(instant tea)**는 차의 수분 추출을 통해 얻은 건조 가용성 고형분을 의미한다.
- 요오드 첨가 식염(iodised 소금) 또는 요오드 저염 식염 혼합물(iodised reduced sodium salt mixture)은 식염 또는 저염 식염 혼합물로 경우에 따라 다음이 첨가될 수 있다.
  - (a) 요오드화칼륨

- (b) 요오드산칼륨
- (c) 요오드화나트륨
- (d) 요오드산나트륨
- 첨가 시 함량은 다음과 같다:
  - (e) 요오드 함량 25mg/kg 이상이며
  - (f) 요오드 65mg/kg 이하

## 잼(jam)

- (a) 의미
  - (i) 아래 중 하나 이상을 가공하여 조제한 식품을 의미한다.
    - (A) 과일
    - (B) 농축 과일 주스
    - (C) 과일 주스
    - (D) 과일의 수분 추출물
  - (ii) 이에 당류 또는 꿀을 함께 가공하여 만든 식품이며
- (b) 과일 설탕 조림을 포함하지만
- (c) 마멀레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스(juice)

- (a) 과육 유무와 관계없이 다음에서 얻은 액체 부분을 의미한다.
  - (i) 과일 또는 채소 또는
  - (ii) 라임을 제외한 감귤류 과일의 경우 과일의 내과피만 해당, 그리고
- (b) 주스를 농축하고 나중에 물로 환원한 제품도 포함된다.
- **혼합주스(juice blend)**는 두 가지 이상의 주스를 혼합해서 만든 주스를 의미한다. (하나 이상의 과일 주스와 하나 이상의 채소 주스를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 카바(kava)는 Piper methysticum 종의 식물을 의미한다.
- 카바 뿌리(kava root)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규격위원회의 43번째 회기에서 채택한 물혼합음료를 위한 카바제품의 지역규격(CXS 336R-2020)의 3.1절에서 명명한 고급 카바 품종의 껍질을 벗긴 뿌리 또는 뿌리줄기(근경)를 의미한다.
- 리큐르(liqueur)는 다른 식품으로 향미를 내거나 이를 혼합한 증류주로서, 20°C에서 측정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을 때 체적기준 15%를 초과하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

제조육(manufactured meat)은 육류가 660g/kg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공육을 의미한다.

**마가린(margarine)**은 식용 유지가 800g/kg 이상 포함되어 있는 식용유지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 미드(벌꿀주)(Mead)는

- (a) 꿀을 완전히 또는 부분 발효해서 만든 식품 또는
- (b) 그러한 제품에 생산 중 다음과 같은 첨가물이 가해진 식품을 의미한다.
  - (i) 과일주스 및 과일주스 제품
  - (ii) 채소주스 및 채소주스 제품
  - (iii) 당류
  - (iv) 꿀
  - (v) 향신료
  - (vi) 알코올
  - (vii) 물

#### 고기(meat):

- (a) 야생 상태 이외의 환경에서 도축된 경우 아래 동물의 도체 전체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 (i) 버팔로, 낙타, 소, 사슴, 염소, 멧토끼, 돼지, 가금류, 토끼 또는 양
  - (ii) 호주의 주, 특별자치구 또는 뉴질랜드의 법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기타 동물
- (b)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 (i) 어류
  - (ii) 조류 알
  - (iii) 태아기 동물 또는 그 일부
- **살코기(meat flesh)**는 동물의 골격 근육과 이에 붙어있는 다음의 부위로 구성된 육류를 의미한다.
  - (a) 동물의 피부
  - (b) 지방
  - (c) 연결 조직

- (d) 신경
- (e) <u>□</u>
- (f) 혈관
- (g) 가금류의 경우 피부 가죽
- 고기파이(meat pie)는 250g/kg 이상의 살코기를 함유한 파이를 의미한다.
- **우유(milk)**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우유를 생산하는 동물의 유선에서 분비된 것으로 액체 그대로 음용 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용도로 1회 이상의 착유를 통해 얻는다. 단, 초유는 제외한다.
  - (b) 또는 여기에 식물성스테롤, 식물성스타놀 및 이들의 에스테르가 첨가된 제품
- 광천수(mineral water) 또는 샘물(spring water)은 지하수 층에서 얻은 지하수로 만든 물로서 자연 상태일 때 가용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 비알코올음료(non-alcoholic beverage)

- (a) 의미
  - (i) 생수 또는
  - (ii) 물을 원료로 한 음료, 또는 알코올음료 이외의 다른 식품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 또는
  - (iii) 전해질 음료
- (b) 발효청량음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식용 부속고기(offal)

- (a) 혈액, 뇌, 심장, 신장, 간, 췌장, 비장, 흉선, 혀, 양(tripe)을 포함한다.
- (b) 생 살코기, 뼈와 골수는 제외한다.
- 땅콩버터(peanut butter)는 땅콩으로 만든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 배즙주(perry)는 배 또는 배와 사과의 주스 또는 과즙액으로 조제한 과일주로 사과주스 또는 사과 과즙액의 함량이 25% 이하인 과일주이다.
- 조산아용 조제식(pre-term formula)은 조산으로 태어났거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영아의 특정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수 제조된 영아용 조제식 제품을 의미한다.
- 가공 치즈(processed cheese)는 치즈와 우유에서 얻은 제품으로부터 제조한 제품으로, 유화 염류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열하여 녹인 후 균일하게 만든 것이다.
- 가공육(processed meat)은 단독으로 또는 기타 식품과 함께 뼈 분리, 얇게 썰기, 조각내기,

분쇄 또는 냉동 이외의 가공 방법을 거친 식품을 의미한다.

#### 사용이 금지된 식물(prohibited plant) 또는 진균(fungus):

- (a) 부칙 23에 나열된 식물 또는 진균 또는
- (b) 그런 식물 또는 진균의 일부 또는 파생물 또는
- (c) (a)항 또는 (b)항에 언급한 식물, 진균, 그 일부 또는 파생물에서 얻은 물질
- 생살구열매는 Prunus armeniaca의 외각 또는 씨 안에 존재하는 견과를 의미하며, 껍질에 쌓인 상태, 탈각상태, 데친 상태, 조쇄, 분쇄, 파쇄, 다진 상태 또는 열매 전체를 아우른다.

#### 저염 식염 혼합물(reduced sodium salt mixture)

- (a)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의 혼합물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 (b) 나트륨 함유량 200g/kg 이하
- (c) 칼륨 함유량 400g/kg 이하

#### 사용이 제한된 식물(restricted plant) 또는 진균(fungus):

- (a) 부칙 24에 나열된 식물 또는 진균 또는
- (b) 그런 식물 또는 진균의 일부 또는 파생물 또는
- (c) (a)항 또는 (b)항에 언급한 식물, 균류 및 그 일부 또는 파생물에서 얻은 물질
- 식염(salt)은 주로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된 결정질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다, 지하 암염 퇴적물 또는 천연염수에서 얻는다.

### 식염 대체재(salt substitute)

- (a) 식염을 대체하는 물질로 제조된 식품을 의미하며,
- (b) 부칙 15에 있는 표의 항목 12에 따라 식염 대체재와 관련된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 (c) 나트륨 함량은 1.2g/kg 이하여야 한다.

#### 소시지(sausage)

- (a) 갈거나 다진 식육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개별 적으로 충전하거나 성형한 육제품을 의미하되,
- (b) 식육 조각과 유사하게 성형하거나 형태를 잡은 식육은 제외된다.
- **탈지유(skim milk)**는 지방을 제거한 우유를 의미한다.
- **콩단백 영아용 조제식(soy-based formula)** 콩 단백질이 유일한 단백질원인 영아용 조제식 제품을 의미한다.

# 특수용도식품(special purpose food):

- (a) 기준 2.9.6에서 2.9.6-2절 참조
- (b)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식품을 의미한다.
  - (i) 영유아용 조제식
  - (ii) 영아용 식품
  - (iii) 식사대용 조제식
  - (iv) 식이보충용 조제식품
  - (v) 운동선수를 위한 조제 건강 보조 스포츠 식품
  - (vi) 특수의료용도식품

증류주(spirit)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 알코올음료를 의미한다.

- (a) 위스키, 브랜디, 럼, 진, 보드카 및 데킬라를 포함하는 음용 가능한 증류 알코올로서 식품 원료에서 얻은 발효액을 증류시켜 생산하는 것으로 해당 증류주만의 맛, 향, 기 타 특징을 갖도록 만든 것
- (b) 또는 이의 생산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물질이 가해진 증류물
  - (i) 물
  - (ii) 당류
  - (iii) 꿀
  - (iv) 향신료

샘물(spring water) - '광천수' 정의 참조

설탕(sugar)이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의미한다.

- (a) 백설탕
- (b) 정제당
- (c) 아이싱 설탕(분말 설탕)
- (d) 각설탕
- (e) 커피 설탕
- (f) 원당
- **카사바(sweet cassava)**는 *Euphoribiacae* 과의 *Manihot esculenta Crantz* 에 속하는 카사바 품종들의 뿌리로, 사이안화수소의 함량이 50mg/kg 미만(총중량 기준)인 것을 의미한다.

- 참조. 카사바는 마니옥(manioc), 만디오카(mandioca), 타피오카(tapioca), 아이핌(aipim) 또는 유카(yucca) 등과 같은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 **차(tea)**는 하나 이상의 *Camelia sinensis* (L.) O. Kuntz 품종과 재배품종의 잎이나 새싹으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 채소주스(vegetable juice)는 채소로 만든 주스를 의미한다.
- 채소주(vegetable wine) 과일주의 정의 참조
- 채소주 제품(vegetable wine product) 과일주 제품의 정의 참조
- 식초(vinegar)는 알코올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적합한 식품의 초산 발효로부터 얻어진 신맛의 액체를 의미하며, 그러한 액체의 불균질 또는 균질 혼합물을 포함한다.
- 국저에너지식이(very low energy diet)는 과체중과 비만의 식이관리를 위해 특수 조제된 식품으로 라벨에 적혀있는 사용지침대로 소비할 경우 모든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제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범주를 의미한다.
- **극저에너지식품(very low energy food)**는 \*극저에너지식이의 일부분으로 소비하기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말한다.
- 밀가루(wheat flour)는 통밀가루도 포함한다.
- 통곡(wholegrain)은 완전한 곡물 또는 이로부터 껍질을 제거하거나, 갈거나, 제분하거나, 분 쇄하거나 조각낸 곡물 속에 배젖, 싹, 겨가 전곡(whole cereal)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비율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밀을 포함한다.
- **통밀(wholemeal)**은 전곡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비율로 곡물의 모든 성분을 제분된 형태로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 와인(wine)은

- (a) 생 포도를 완전 발효하거나 부분 발효한 제품, 또는 이러한 제품과 포도로부터만 추출한 제품들을 혼합한 것 또는
- (b) 이에 생산과정에서 아래의 첨가물이 더해진 식품을 의미한다.
  - (i) 포도주스 및 포도주스 가공품
  - (ii) 당류
  - (iii) 브랜디 또는 기타 증류주
  - (iv) 허용된 식품첨가물이나 가공보조제를 첨가하는데 필요한 물
- 와인 가공품(wine product)은 700mL/L 이상의 와인을 함유한 식품으로 조제, 가공, 변형 또는 기타 식품과의 혼합 과정을 거쳐 더 이상 와인이 아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백설탕(white sugar)은 정제된 결정화 자당을 의미한다.

요구르트(yoghurt)는 발효 우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발효는 젖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 1.1.2-4 식품의 특징적 성분 및 원료의 정의

- (1) 본 규정집에서 판매용 식품과 관련하여:
- 특징화된 성분(characterising component)는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의 \*성분을 의미한다.
  - (a) 해당 식품 명칭에서 언급된 성분 또는,
  - (b) 보통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명칭과 관련된 성분 또는,
  - (c) 해당 식품의 라벨에서 단어, 사진 또는 그림으로 강조된 성분.
- 특징화된 원료(characterising ingredient)는 다음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원료의 범주를 의미한다.
  - (a) 해당 식품 명칭에서 언급된 원료 또는,
  - (b) 보통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명칭과 관련된 원료 또는,
  - (c) 해당 식품의 라벨에서 단어, 사진 또는 그림으로 강조된 원료.
- (2) 단, (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원료 특징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a) 해당 식품의 향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원료나 원료 범주,
  - (b) 해당 식품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료나 원료 범주,
  - (c) 해당 식품 명칭에 언급은 되었지만, 함량 변화로 인하여 해당 식품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거나 해당 식품과 기타 유사한 식품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과 고객 선택을 좌우하지 않은 원료나 원료 범주
- (3) 본 규정집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라벨 표기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 절의 취지에 부합하는 강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1.1.2-5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

- (1) 본 규정집에서
  - **특수의료용도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은 아래에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식품을 의미한다.
    - (a)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의 식이 관리를 위해 특별하게 제조된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i) 완전 또는 부분 제한 급식을 요하는 사람으로 의학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영양 요건이 필요하거나, 일반적인 식품이나 일반적인 식품의 특정 영양소를 섭취, 소화, 흡수, 대 사 또는 배설하는 능력이 제한 또는 손상된 사람, 그리고
- (ii) 해당 식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식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 (b)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사용되도록 만든 식품
- (C) 다음과 같이 표방되는 식품
  - (i) 특수한 의학적 용도를 위한 식품 또는
  - (ii) 질병,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를 위한 식이 관리용 식품
- (2) 단, 다음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영아용 조제식 제품
  - (b) 과체중이나 비만의 식이 관리를 위해 특별히 제조한 식품이지만 \*극저에너지식품에 는 해당하지 않는 식품

#### 1.1.2-6 카페인 조제 음료의 정의

- (1) 본 규정집에서
  - 카페인 조제음료(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는 향미가 있는 무알코올음료, 또는 여기에 기타 물질(예: 탄수화물, 아미노산, 비타민)이 첨가된 음료로서,
    - (a)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 (b) 정신적 기능 향상의 목적이 있다.
  - (2)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카페인 조제음료는 물을 원료로 한 향미 음료로서 부칙 15-5의 14.1.3과 18-10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 1.1.2-7 의료 기관의 정의

- (1) 본 규정집에서
  - **의료기관(medical institution)**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급성환자 전문병원
    - (b) 호스피스
    - (C) 저보호 노인요양시설
    - (d) 노인요양원
    - (e) 정신병원

- (f) 노인 임시 위탁시설
- (g) 노인 주간 병동
- (h) 화학치료와 신장 투석 서비스를 위한 주간 병동
- (2) 본 절에서

#### 급성환자 전문병원(acute care hospital)은

- (a) 아래에 명시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환자의 대부분이 급성질환(condition) 또는 일시적인 경증질환(ailment)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평균 입원 기간이 짧다.
  - (i) 입원 치료나 관리를 위해 적어도 내과, 외과, 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 (ii) 종합적인 자격을 갖춘 간호 서비스의 24시간 제공과 기타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 (b) 하기의 시설을 포함한다.
  - (i) 치과, 안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과 기타 전문 내과 및 외과 진료 시설
  - (ii) 공공 급성환자 전문병원
  - (iii) 민간 급성환자 전문병원
- 호스피스(hospice)는 말기 환자에게 일시적인 완화 치료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시설(공 공 또는 민간)을 의미한다.
- 저보호 노인요양시설(low-care aged care establishment)은 노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지만 필요한 경우 비상 호출 시 식사 제공을 포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 노인요양원(nursing home for the aged)은 노인에게 정기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을 위한 시설로 사설 자선단체, 민간 영리기관,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정신병원(psychiatric hospital)은 일차적으로 정신과 장애, 정신질환 또는 행동 장애를 가진 입원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전용 시설(공공 또는 민간)을 의미한다.
- 노인 임시 위탁시설(respite care establishment for the aged)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 관리와 정기적인 기본 간호 서비스를 포함한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노인 주간 병동(same-day aged care establishment)은 노인이 주간 또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의 재활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 화학치료와 신장 투석 서비스를 위한 주간 병동(same-day establishment for chemotheraphy and renal dialysis services)은 다음을 의미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a) 의료 센터 또는 병원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간격으로 비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 또는 하루 중 일부시간 동안 화학치료나 신장 투석 서비스의 형태로 급성질환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공공 또는 민간) 또는
- (b) 독립된 주간 수술센터로서 화학치료 또는 신장 투석 서비스의 형태로 급성질환 치료와 검사를 제공하는 병원 시설(공공 또는 민간)

#### 1.1.2-8 신소재 식품의 정의

- (1) 본 규정집에서
  - 신소재 식품(novel food)은 공중 보건 및 안전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비전통 식품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
    - (a) 인간에게 미치는 부작용의 가능성 또는
    - (b) 식품의 구성 또는 구조 또는
    - (c) 식품이 준비되는 과정 또는
    - (d) 식품의 원료 또는
    - (e) 식품 섭취 패턴 및 수준 또는
    - (f) 기타 관련 사항

#### 비전통 식품(non-traditional food)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식용으로 섭취했던 이력이 없는 식품 또는
- (b) 식품에서 얻은 물질로서, 해당 물질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식품 \*성분 외에는 식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물질 또는
- (c) 그 외의 물질 또는 그 물질이 얻어진 식품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식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물질
- (2) 아래에 명시된 경우는 본 절의 취지상 호주 또는 뉴질랜드 내의 해당 식품 섭취 이력으로 보지 않는다.
  - (a)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존재하는 식품
  - (b)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서 사용되는 식품

#### 1.1.2-9 영양 함량 강조표시의 정의

(1) 본 규정집에서

영양 함량 강조표시(nutrition content claim)는

- (i) 다음 성분의 존재 여부
  - (A) \*생물학적 활성물질
  - (B) \*식이섬유
  - (C) 에너지
  - (D) 무기질
  - (E) 칼륨
  - (F) 단백질
  - (G) \*탄수화물
  - (H) \*지방
  - (I) 단백질, \*탄수화물 또는 지방의 구성성분
  - (J) \*소금
  - (K) 나트륨
  - (L) 비타민
- (ii) 또는 \*혈당지수 또는 혈당부하지수
- (b) 알코올 함유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
- (c) 영양 함량 강조표시는 건강 강조표시가 아니다.

참고. 2.6.2-5(4)조와 2.10.2-8(3)조 참조

영양정보표에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영양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부언하자면, 본 규정집에서 영양정보표에 포함될 특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영양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양정보표에 자발적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영양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 (3) 의무는 아니지만 본 규정집에서 허용하는 경우 영양정보표에 포함될 특정 정보는 아래 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양함량 강조표시(nutrition content claim)에 해당된다.
  - (a) 본 규정집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 또는
  - (b) 그 정보가 다음 내용을 표시(declaration)하는 경우
    - (i) 해당 식품의 1회 분량 당 2g 미만의 \*식이섬유 함유 또는
    - (ii) 트랜스지방산 함량 또는
    - (iii) 젖당 함량
- (4)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는 식품의 경우 1.2.8-6(1)(a),(b),(c)항과



1.2.8-6(1)(d)(i),(ii),(iii)호에 언급한 정보를 영양정보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영양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1.1.2-10 권장식이섭취량(RDIs)과 안전추정 적정일일섭취량(ESADDIs)

참고. 'RDI'는 권장식이섭취량의 축약형이다. 'ESADDIs'는 안전추정 적정일일섭취량의 축약형이다.

- (1) 영유아를 위한 식품과 관련해서 부칙 1-2절 또는 부칙 1-3절 표 1열에 나열된 비타민 또는 무기질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s) 또는 \*안전추정 적정일일섭취량(ESADDIs)은 5 열에 열거되어 있다.
- (2) 1-3세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의도된 또는 표방되는 식품(유아용 식이보충용 조제식품포함)과 관련 부칙 1-2절 또는 부칙 1-3절의 표 1열에 나열된 비타민 또는 무기질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s) 또는 \*안전추정 적정일일섭취량(ESADDIs)은는 3열에 열거되어 있다.
- (3) 기타 식품과 관련해서 부칙 1-2절 또는 부칙1-3절의 표 1열에 나열된 비타민 또는 무기질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s) 또는 \*안전추정 적정일일섭취량(ESADDIs)은 3열에 열거되어 있다.

#### 1.1.2-11 식품첨가물의 정의

- (1) 본 규정집에서 물질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used as a food additive) 경우라 함은;
  - (a) 부칙 14에 제시된 기술적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질을 첨가한 경우이며,
  - (b) 해당 물질은 (2)조에 명시되어 있다.
- (2) (1)조에 언급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 (i) 부칙 15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서 명시되어 있는 물질
    - (ii) GMP 허용 \*첨가물
    - (iii) GMP 허용 \*착향료
    - (iv) 최대 기준으로 허용된 \*착향료
    - 참고. 부칙 15에는 GMP식품으로 허용된 첨가물, GMP에서 허용한 착향료, 최대 기준으로 허용된 착향료로서 부칙 16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 열거되어 있다.
  - (b) 다음과 같은 물질
    - (i) \*비전통 식품이면서

(ii) 부칙 14에 나열된 기술적 기능을 한 가지 이상 수행하기 위해서 농축, 정제, 합성된 물질

기타 정의

(3) 본 규정집에서

GMP 승인 첨가물(additive permitted at GMP)은 부칙 16-2에 나열된 물질을 의미한다. GMP 승인 색소(colouring permitted at GMP)는 부칙 16-3에 나열된 물질을 의미한다.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colouring permitted to a maximum level)는 부칙16-4에 나열된 물질을 의미한다.

색소와 색소의 알루미늄 및 칼슘 레이크

(4) 부칙 15 \*GMP 승인 첨가물 또는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에서 나열된 색소에 대한 언급에는 그 색소로 만든 알루미늄 및 칼슘 레이크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 1.1.2-12 영양물질의 정의

- (1) 본 규정집에서 물질이 영양물질로 사용되는(used as a nutritive substance) 경우라 함은;
  - (a) 영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질이 첨가된 경우이며,
  - (b) 해당 물질은 (2)조에 명시되어 있다.
- (2) (1)조에 언급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a) \*영양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서 본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
  - (b) 비타민 또는 무기질
  - (c) 식품에 첨가되는 경우 영양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축, 정제, 합성된 물질 (이눌린 형프룩탄, 갈락토올리고당 또는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되는 물질을 제외한다)
  - 참고. 영양물질로 사용되는 물질의 사용을 조절하는 조항은 기준 1.3.2(비타민과 무기질), 기준 2.9.1(영아용 조제식), 기준 2.9.2(영아용 식품), 기준 2.9.3(식사대용 조제식), 기준 2.9.4(식이보충용 조제식품), 기준 2.9.5(특수의료용도식품)이다. (2)(a)항에 언급한 물질의 경우 예를 들자면 부칙 17-2과 부칙 17-3(비타민과 무기질)의 표, 부칙 28-2, 0, 부칙 29-18, 부칙 29-19(기타 물질)의 표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 1.1.2-13 가공보조제의 정의

(1) 본 규정집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가공보조제로서 사용하는(used as a processing aid) 물질에 대한 언급은 가공 과정 중에 사용되는 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 (a) 가공 과정 중에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 (b) 판매용 식품의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 (c) 해당물질은 (3)조에 명시되어 있다.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used as a processing aid) 식품의 참고사항

- (2) 본 규정집에서, 다른 식품과 관련하여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항은
  - (a)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한 언급으로
    - (i) (3)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며,
    - (ii) 가공 과정에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공 과정 중 다른 식품을 사용하거나 첨가하는 경우이고,
    - (iii) 판매용 식품의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 (b) 또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양에 대한 사항이다.
    - 참고 1. 본 규정은 식품을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3)조에 언급된 물질은 제외). 가공보조제로서 사용되는 식품 및 물질에 적용되는 특수표시 요건은 1.2.4-3(2)(d)항, 1.2.4-3(2)(e)항, 1.2.8-5(a)(vii)항을 참조한다.
    - 참고 2. 식품이 다른 식품과 관련하여 가공보조제로 사용되고 그 양이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경우, 해당 초과분은 다른 식품의 가공보조제로서 취급되지 않으며, 원료 표시 요건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1.2.4-3(2)(e)항 참조)
- (3) (1)조와 (2)조에 언급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a) 부칙 18에 나열된 물질
  - (b) GMP 허용 \*첨가물

참고. 'GMP 허용첨가물'은 정의된 용어이다. 1.1.2-11절 참조

#### 1.1.2-14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양 계산 및 표시

- (1) 비타민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s)과 안전추정 적정일일섭취량(ESADDIs)은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타민 형태의 총량과 허용된 형태의 비타민으로서, 부칙 1-2절의 표 3.4.5열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나타낸 비타민을 의미한다.
- (2) 무기질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s)과 안전추정적정일일섭취량(ESADDIs)는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기질 형태의 총량과 허용된 형태의 무기질로서, 부칙 1-3의 표 1 열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나타낸 무기질을 의미한다.
- (3) 양의 계산

- (a) 비타민A의 경우
  - (i) 레티놀당량으로 환산하여 양을 계산한다.
  - (ii) 비타민A의 프로비타민A에 대해서는 부칙 1-4의 전환계수를 이용하여 레티놀당량을 계산한다.
- (b) 나이아신의 경우, 아미노산 트립토판의 전환으로부터 얻은 나이아신은 제외한다.
- (c) 비타민E의 경우, 부칙1-5의 전환계수를 이용하여 알파-토코페롤당량으로 환산하여 양을 계산한다.

#### 1.1.2—15 허용된 건강 별등급 기호의 정의

- (1) 본 규정집에서 허용된 건강 별등급 기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 (a) 1641445, 1641446 또는 1641447가 부여된 호주 상표;
  - (b) 뉴질랜드 상표는 1018807, 1018808 또는 1018809로 번호가 부여된 뉴질랜드 상표.
- (2)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아래에 명시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경우 (1)조에서 언급된 이미지는 건강 별등급 기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100g당, 100ml 또는 팩 당 에너지 또는 영양소 함량; 또는
  - (b) 1회 섭취량 또는 기준 양에 따른 에너지 또는 영양소 함량; 또는
  - (c) 0 또는 0보다 큰 양의 에너지 또는 영양소 함량; 또는
  - (d) 킬로줄(kilojules)로 표현된 양에 더하여 일일섭취량 기준 백분율로 나타낸 에너지 함량



# 1.3.1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참고 3. 1.1.1-10(4)(a)에서는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판매용 식품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을 원료 또는 성분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본 규격에는 관련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 1.3.1-1 명칭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 1.3.1 식품첨가물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의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서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2 참조)

#### 1.3.1-2 정의

- 참고. 1.1.2-11 (식품첨가물로 사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1) 본 규정집에서, 물질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used as a food additive) 경우라 함은,
    - (a) 부칙 14에 제시된 기술적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질을 첨가한 경우이며,
    - (b) 해당 물질은 1.1.2-11 (2)에 명시되어 있다.
  - (2) 1.1.2-11(1)에 해당되는 물질은
    -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i) 부칙 15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 명시되어 있는 물질
      - (ii) GMP 승인 \*첨가물
      - (iii) GMP 승인 \*색소
      - (iv)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 참고. 부칙 15에는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 기준으로 허용된

착색료로서 부칙 16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 열거되어 있다.

- (b) 다음과 같은 물질을 의미한다.
  - (i) \*비전통 식품이면서,
  - (ii) 부칙 14에 나열된 기술적 기능을 한 가지 이상 수행하기 위해서 농축, 정제, 합성된 물질.

#### 기타 정의

(3) 본 규정집에서

GMP 승인 첨가물(additive permitted at GMP)은 부칙 16-2에 나열된 물질을 의미한다. GMP 승인 착색료(colouring permitted at GMP)는 부칙 16-3에 나열된 물질을 의미한다.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colouring permitted to a maximum level)는 부칙 16-4에 나열된 물질을 의미한다.

#### 색소와 색소의 알루미늄 및 칼슘 레이크

(4) 부칙 15 \*GMP 승인 첨가물 또는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에서 나열된 색소에 대한 언급에는 그 색소로 만든 알루미늄 및 칼슘 레이크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 1.3.1-3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다음 나열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1) 해당 물질은 다음의 경우 식품과 관련해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다.
  - (a) 부칙 15에 의거해서 해당 식품의 식품첨가물로 사용된다고 허용된 물질일 것 그리고
  - (b) 본 기준 또는 부칙 15에서 식품첨가물로 명시된 물질의 사용에 대한 금지사항을 준수할 것 그리고
  - (c) 부칙 15-5의 표에서 최대허용량을 'GMP'라고 나타낸 경우, 해당 물질의 비율은 GMP의 요구사항 이하일 것

#### 식품첨가물의 캐리오버(carry-over)

(2)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가된 물질의 경우, 식품 내 해당 물질의 수준이 적절한 기술적 요건 및 GMP 하에서의 원재료 사용으로 도입될 양 이하이면 캐리오버의 결과로 동 물 질은 어느 식품에서나 발견될 수 있다.

#### 1.3.1-4 식품 내 식품첨가물의 최대 허용 수준

(1) 부칙 15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된 \*GMP 승인 첨가물 또는\*GMP 승인 색소는

GMP에 부합하여 사용한 결과로 판매용 식품에 존재할 수 있다.

- (2)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된 경우, 해당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된 물질의 수준은 그러한 종류의 식품에 대한 부칙 15의 사용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
- (3) 부칙 15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허용한 것 중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의 경우, 판매용 식품에 함께 들어가는 모든 착색료의 사용 기준은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a) 음료 70mg/L
  - (b) 그 외 290mg/kg
- (4) 상반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라벨 상의 지침에 따라 조제된 후에 섭취될 목적인 판매용 제품이 아닌 경우에, 식품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의 수준에 대한 부칙 15의 제약사항은 해당 지침에 따라 섭취용으로 조제할 때 해당 식품의 해당 물질 수준에 적용된다.
- (5) 식품의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도록 허용된 물질은, 제품 내 물질 수준이 (3)조 또는 부칙 15의 최대 허용 수준을 준수하는 한, 해당 원료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판매용 식품의 조제과정에서 원료에 첨가될 수 있다.
- (6) 본 기준에서
  - (a) 안나토와 안나토 추출물은 빅신으로 계산된 노르비신과 빅신을 포함한다.
  - (b) 벤조산과 그 염은 벤조산으로 계산한다.
  - (c) 사이클람산과 그 염은 사이클로헥실-설파믹산(cyclohexyl-sulphamic acid)으로 계산한다.
  - (d)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는 에틸-N $^{\alpha}$ -라우로일L-알지네이트-HCI (ethyl-N $^{\alpha}$  -lauroyl-L-arginate HCI)로 계산한다.
  - (e) 상반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은 아질산나트륨으로 계산 된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의 총량을 나타낸다.
    - 참고. 아질산염은 코드번호가 249와 250이다. 질산염의 코드번호는 251과 252임
    - 예시. (e)항에 대한 상반된 의도는 치즈와 치즈 제품에 대한 부칙 15-5 표의 항목 1.6에 제시되어 있다.
  - (f) 프로피온산과 그 염은 프로피온산으로 계산한다.
  - (g) 사카린과 그 칼슘 및 나트륨염은 사카린으로 계산한다.
  - (h) 소브산과 그 염은 소브산으로 계산한다.
  - (i) 스테비올글리코사이드는 (7)조에 따라 스테비올 등가물(steviol equivalents)로 계산한다.
  - (j) 이산화황 그리고 하이드로아황산염, 중아황산염 및 메타중아황산염을 포함하는 아황산염은 이산화황으로 계산한다.

(7)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steviol glycoside)의 스테비올 등가물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공식을 사용한다.

$$[SE] = \Sigma [SG] \times CF$$

위 식에서,

[SE]는 스테비올 등가물(steviol equivalents)의 농도이다.

[SG]는 개별 스테비올배당체(steviol glycoside)의 농도이다.

CF는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로 다음과 같다:

- (a) 둘코사이드(dulcoside) A 0.40
- (b) 리바우디오사이드(rebaudioside) A 0.33
- (c) 리바우디오사이드(rebaudioside) B 0.40
- (d) 리바우디오사이드(rebaudioside) C 0.33
- (e) 리바우디오사이드(rebaudioside) D 0.28
- (f) 리바우디오사이드(rebaudioside) F 0.34
- (g) 루부소사이드(rubusoside) 0.50
- (h) 스테비올(steviol) 1.00
- (i) 스테비올비오사이드(steviolbioside) 0.50
- (j)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 0.40
- (k) 그 외에 스테비올배당체(steviol glycoside) 0.33

#### 1.3.1-5 고강도 감미료 사용 제한

- 부칙 15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고강도 감미료의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첨가는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 (a) 착향료로서 또는
  - (b) 일반적으로 당류에 의해 얻어지는 감미 정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필 요한 양만큼

#### 1.3.1-6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식품첨가물

(1) 식품이 동일한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의 혼합물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식품 내 이런 물질의 비율의 합(sum of proportions)은 1 이하여야 한다.

(2) 본 절에서,

비율의 합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sum of the proportions = \sum_{i=1}^{N} \frac{Conc_i}{MPL_i}$$

이 공식에서,

N은 동일한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는 식품 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의 가지수이다.

Conci은 식품 내 ith 식품첨가물의 농도이다.

MPL;는 식품 내 ith 식품첨가물의 최대허용량이다.

(3) 비율의 합을 계산하는 경우, GMP에 부합하여 식품 내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은 제외한다.

# 부칙 7. (원료 표시 관련) 식품첨가물 분류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식품 기준규정집(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기준 1.2.4는 원료의 서술과 관련된 정보 요건에 관한 기준으로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과 관련된다. 본 절은 1.2.4-7(1)(a)항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부칙 7-1. 명칭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규정 부칙7. (원료 표시 관련) 식품첨가물 분류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부칙 7-2. 식품첨가물 분류

1.2.4-7(1)(a)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식품첨가물 분류

지정된 분류명		선택적 분류명		
영문명	한글명	영문명	한글명	
Acid	산	Antifoaming Agents	기포방지제	
Acidity Regulator	산도조절제	Emulsifying salt	유화제 염류	
Alkali	알칼리화제	Enzyme	立모	
Anticaking Agent	고결방지제	Mineral salt	무기질염	
Antioxidant	산화방지제	Modified Starch	변성 전분	
Bulking Agent	증량제	Vegetable Gum	식물성 고무수지	
Colour	색소			
Emulsifier	유화제			
Firming Agent	고화제			
Flavour Enhancer	향미증진제			
Foaming Agent	기포제			
Gelling Agent	겔형성제			
Glazing Agent	피막제			



지정된 분류명		선택적 분류명	
Humectant	습윤제		
Preservative	보존제		
Raising Agent	발효팽창제		
Stabilizer	안정제		
Sweetener	감미료		
Thickener	증점제		

# 부칙 8 (원료 표시 관련) 식품첨가물 명칭 및 코드번호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법 1991(Cth)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식 품 기준규정집(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기준 1.2.4는 원료의 서술과 관련된 정보 요건에 관한 기준으로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식품첨가물로서 사용되는 물질과 관련된다. 본 기준은 1.1.2-2절의 용어 코드 번호 의 정의에 대한 식품첨가물 번호와 명칭, 1.2.4-7(1)조에 대한 코드 번호를 열거하고 있다.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부칙 8-1 명칭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규정 부칙8. (원료 표시 관련) 식품첨가물 명칭과 코드번호 에 관해서이다.

####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부칙 8-2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코드 번호

1.1.2-2절과 1.2.4-7(1)조의 코드 번호 정의와 관련 식품첨가물명칭과 \*INS 번호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 식품첨가물명-알파벳 순

식품첨가물명	INS	식품첨가물명	INS
아라비아검	414	탄산암모늄	503
아세설팜칼륨	950	염화암모늄	510
빙초산	260	구연산암모늄	380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472a	푸마르산 암모늄	368
아세틸아디프산이전분	1422	탄산수소암모늄	503
아세틸인산이전분	1414	암모늄락테이트	328
아세틸산화전분	1451	말산암모늄	349
산처리전분	1401	제이인산암모늄	342
아디프산	355	일인산암모늄	342
어드벤탐	969	암모늄포스파타이드	442
한천	406	알파-아밀라아제	1100
알긴산	400	안나토색소	160b



식품첨가물명	INS	식품첨가물명	INS
프로피온산나트륨	28	효모만노프로테인	455
제이인산류	450		
소브산나트륨	201		
올레일락틸산나트륨	481		

# ※ 참고 ※

표 "Food additive names—numerical listing"은 위 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제시하지 않음

# 부칙 14 식품첨가물이 제공하는 기술적 기능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과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 물질은 기준 1.1.1과 기준 1.3.1, 기준 1.3.3의 규제를 받는다. 본 기준은 1.1.2—11(1)(b)항 (식품첨가물로 사용의 정의)과 1.1.2—13(1)(c)항, 1.1.2—13(2)(a)(iii)호 (가공보조제로 사용의 정의)에 대한 기술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부칙 14-1 명칭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 부칙14. 식품첨가물이 제공하는 기술적 기능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부칙 14-2 기술적 기능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이 제공하는 기술적 기능은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다.

#### 기술적 기능

기능적 그룹	하위분류	정의		
산도조절제	산, 알칼리, 염기, 완충액, 완충제, pH 조절제	식품의 산도나 알칼리 변경 또는 조절		
고결방지제	고결방지제, 점착방지제, 건조제, 살포제	개별 식품 입자가 달라붙는 경향을 줄이거나 흐름 특성을 개선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 항산화 촉진제	식품의 산화를 지연시키거나 방지		
증량제	증량제, 충전제	가용 에너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 .	않으면서 식품의 부피를 증강		
착색료		식품에 색소를 첨가하거나 복원		
색소유지제 색소유지제, 색소안정제		식품의 기존 색상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것		
유화제	유화제, 유화염, 가소제, 분산제,	2개 이상의 혼합되지 않는 상태 사이의 유화		
ㅠᅬ게 	계면활성제, 습윤제	형성이나 유지를 촉진		
응고제		2개 이상의 혼합되지 않는 상태 사이의 유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기능적 그룹	하위분류	정의	
		형성이나 향상를 촉진	
향미증진제	향미증진제, 향미 개량제, 유연제	식품 기존의 맛이나 향 강화	
착향료		맛이나 냄새를 첨가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허브와 향신료		강렬한 제제로서, 소량으로 사용되며,	
및 강한		단독으로는 섭취하지 않고 허브, 향신료, 매우	
감미료 제외)		달거나 시거나 짠맛을 지닌 물질 등은 제외	
기 교 제	취피제 기교제	액체나 고체 식품의 가스상이 균질하게	
기포제	휘핑제, 기포제	확산되는 것을 촉진	
겔형성제		겔 생성을 통한 식품 표면 변형	
피막제	코팅, 밀폐제, 광택제	식품 외부 표면에 코팅	
 습윤제	~1.~HOTH ~0TH	식품에서 습기 손실을 지연시키거나 고체가	
급판제	습기/수분유지제, 습윤제	액체에 녹는 것을 촉진	
		가용 에너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고강도 감미료		않으면서 식품에서 설탕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단맛을 대체	
	항균제, 항곰팡이제,		
보존료	박테리오파지제어제, 화학살균제,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형 지연	
	소독제		
분사제		공기 이외의 기체로 식품을 용기로부터 분리	
팽창제		가스를 방출해 식품의 부피를 키우는 것	
분리제		금속 이온과 함께 화학적 집합체를 생성	
 안정제	결합제, 고화제, 수분결합제, 기포	서로 섞이지 않는 2 개 이상의 물질의 균일한	
ଅଟନା	안정제	분산을 유지	
 증점제	증점제, 텍스처화제, 바디물질	식품의 점도를 높임	

# 부칙 15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은 기준 1.1.1과 기준 1.3.1의 규제를 받는다. 본 기준은,

- 1.1.2—11(2)(a)(i)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밝힌다.
- 1.3.1—3(1)(a)항에서 식품첨가물로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포함하고 있다.
- 1.3.1—3(1)(b)항과 관련된 금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1.3.1—4에서 최대 허용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부칙 15-1 명칭

본 규정은 호주 뉴질랜드식품기준법 - 부칙 15.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부칙 15-2 식품첨가물 사용의 승인

- 부칙 15-5의 표가 다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부칙 15-5 표의 숫자로 매겨진 제목으로 확인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내\*식품첨가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아래와 같다.
  - (a) 제목 바로 뒤에 열거된 물질
  - (b) 상위 레벨의 제목 바로 뒤에 열거된 물질

예시. 4.3.4로 번호가 매겨진 제목에서, 상위 레벨은 4.3과 4이다. 하지만 4.3.4.1, 4.3.3과 같은 제목에서 4.2와 3은 상위 레벨이 아니다.

참고. 대부분의 경우에 제목 바로 뒤에 열거된 물질은 하나 이상이다.

## 부칙 15-3 식품첨가물의 조제

부칙 15-5 표에 따라 물질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경우에

- (a) 해당 물질은 물질의 조제 형태로 첨가될 수 있다.
- (b) 기타 물질은 표의 범주 0 (식품첨가물의 조제) 하의 승인에 따라 조제하는 동안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다.

## 부칙 15-4 정의

- (1) 부칙 15-5 표에서
  - (a) MPL은 최대허용량을 의미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mg/kg으로 측정한다.
  - (b) 'GMP'에 대한 언급은 GMP의 요건 하에서 1가지 이상의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대 수치에 대한 것이다.
- (2) 고명이 없는 식품이 부칙 15-5 표의 항목 1에서 14 사이에 포함될 경우, 고명이 첨가되더라도 동 표에 포함될 수 있다.

## 부칙 15-5 식품첨가물의 허용에 관한 표

본 절의 표는 다음과 같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0	0 식품첨가물		
	GMP 허용 식품첨가물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륨	1,000	
210 211 212 213	벤조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안식향산칼슘	1,000	
216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2,500	
218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2,500	
220 221 222 223	이사하하기소 미니트로 미 이하사카로	250	
224 225 228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350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200	
304	아스코빌팔미테이트	GMP	
307	농축시킨 토코페롤, d-알파-	GMP	
307b	d-토코페롤(혼합형)	GMP	
308	합성 감마토코페놀	GMP	
309	합성 델타토코페놀	GMP	
310	갈산프로필	100	
311	몰식자산옥틸	100	
312	몰식자산도데실	100	
319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200	
320	부틸히드록시아니솔	200	
385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500	
0.1	베이킹 화합물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541	나트륨 알루미늄 인산염	GMP	
0.2	색소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	
	에탄올	GMP	
0.3	향료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	
	벤질 알코올	500	완제품에
	에탄올	GMP	
	아세트산에틸	GMP	
	글리세롤 디아세테이트 (다이아세틴)	GMP	
	글리세릴 모노아세트테이트	GMP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1,000	완제품에
320	부틸히드록시아니솔	1,000	
1505	구연산트리에틸	GMP	
0.4	응고 효소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9,000	
210 211 212 213	벤조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안식향산칼슘	9,000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1	유제품류(버터와	지방 제외)	
1.1	우유 및 우유 기	반 음료	
1.1.1	우유(버터유	포함)	
	GMP 승인 첨가물		유일한 UHT 염소 우유
1.1.1.1	식물성스테롤, 식물성스타놀 또는	에스테르가	첨가된 액상유
401	알긴산나트륨	2,000	
407	카라기난	2,000	
412	구아검	2,000	
471	지방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	2,000	
460	셀룰로오스	5,000	
1.1.2	우유가공품 및 형	향첨가우유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	소	
160b	안나토색소	10	
950	아세설팜칼륨	500	
956	알리탐	40	
960	스테비올배당체	115	
962	아스파탐-아세설팜염	1,100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560	포타슘실리케이트	10,000			
1.6.1	연질치즈, 크림치즈	연질치즈, 크림치즈 및 가공치즈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400			
1.6.1.1	모차렐라치즈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200			
1.6.2	경질치즈, 반경	<b>령질치</b> 즈			
			식품 표면에 적용;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1mg/cm <sup>2</sup>	최대치는 3mm에서		
245			5mm 사이에서 추출한		
			표면 샘플에 의해 결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2	식용유지류 및 오일 에멀션(oil emulsions)			
160b	안나토색소	20		
304	아스코빌팔미테이트	GMP		
307a	d-α-토코페롤	GMP		
307b	d-토코페롤(혼합형)	GMP		
308	합성 감마토코페놀	GMP		
309	합성 델타토코페놀	GMP		
310	갈산프로필	100		
311	옥틸 몰식자산염	100		
312	도데실 갈레이트	100		
319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200		
320	부틸히드록시아니솔	200		
321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100		
2.1	무수 식용위	우지류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올리브유에는	
	GMP 등인 역소		허용되지 않음	
	치데하으라이크 취용취 새 ^		올리브유에는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허용되지 않음	
392	로즈메리추출물	50	어유와 해조오일에만	
475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20,000	쇼트닝만	
476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20,000	쇼트닝만	
900a	폴리디메틸실록산	10	튀김용 기름만	
2.2	오일 에멀젼(oil em	ulsions)(함수	)	
2.2.1	오일 에멀션(oil emulsion	ns)(오일 80%	초과)	
2.2.1.1	버터			
	아래에 열거된 물질만 버터용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음			
160a	카로틴	GMP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160b	안나토색소	20	
160e	β-아포-8′-카로티날	GMP	
160f	β-아포-8'-카로틴산 에틸에스테르	GMP	
508	염화칼륨	GMP	
2.2.1.2	버터가공	품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식	<b>박소</b>	
2.2.1.3	마가린 및 유	-사제품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	소	
392	로즈메리추출물	75	
475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5,000	
476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5,000	
2.2.2	유유제(oil emulsions)(	(오일 80% 미	만)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식	<b>백소</b>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2,000	
	소르브산칼슘	2,000	
210 211 212 213	벤조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안식향산칼슘	1,000	
234	니신	GMP	
281	프로피온산나트륨	GMP	
282	프로피온산칼슘	GMP	
475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5,000	
476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5,000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3	아이스크림 및 식	용얼음류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	소	
123	식용색소적색제2호	290	
160b	안나토색소	25	
950	아세설팜칼륨	1,000	
956	알리탐	100	
960	스테비올배당체	200	
962	아스파탐-아세설팜염	2,200	
3.1	액상 얼음 과자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400	
210 211 212 213	벤조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안식향산칼슘	400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25	
224 225 228	이인화성기를 못 나는밤 못 이성신설밤	25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4	과일류 및 채소류 (버섯, 견과류,		
4.1	비가공 과일 등		<b>-</b> ,
4.1.1	비처리 과일 등	및 채소	
4.1.2	표면 처리된 과일	및 채소	
342	인산암모늄	GMP	
471	지방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	GMP	
473	자당지방산에스테르	100	
901	밀랍	GMP	
903	카르나우바왁스	GMP	
904	쉘락   표백	GMP	
4.1.2.1	표면 처리된	감귤류	
914	산화폴리에틸렌왁스	250	
1520	프로필렌글리콜	30,000	
4.1.2.2	호두 및 피칸 알맹	이(kernels)	
304	아스코빌팔미테이트	GMP	
320	부틸히드록시아니솔	70	
321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70	
4.1.3	전처리 과일 당	및 채소	
	GMP 승인 첨가물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375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200	
4.1.3.1	전처리 제조용 과	일 및 채소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200	   사과와 감자만
224 225 228	90467- X 1-8 X 96028	200	<u> </u>
4.1.3.2	전처리 채소 뿌리	및 덩이줄기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50	
224 225 228		30	
920	L-시스테인 염산염	GMP	
4.1.3.3	전처리 아보카도	및 바나나	
920	L-시스테인 염산염	GMP	
4.2	비가공 냉동 과일	및 채소	
220 221 222 223 224 225 228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300	얼린 아보카도만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4.3.8.3	수화(水化) 콩과식물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200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5	당과류				
	몽크프룻(Monk fruit) 추출물(나한과 추출물)	GMP			
123	식용색소적색제2호	300			
160b	안나토색소	25			
173	알루미늄	GMP			
174	인	GMP			
175	급	GMP			
950	아세설팜칼륨	2,000	버블껌과 껌에는 허용되지 않음		
951	아스파탐	10,000	아래 '참고' 확인		
955	수크랄로스	2,500	아래 '참고' 확인		
956	알리탐	300	아래 '참고' 확인		
961	네오탐	300	아래 '참고' 확인		
962	아스파탐-아세설팜염	4,500	아래 '참고' 확인		
참고. 식품첨가물 적용되지 않음	참고. 식품첨가물 951, 955, 956, 961, 962, 1.3.1-5의 최대허용량은 껌과 버블껌에 허용된 감미료에				
5.0.1	과일이 200g/kg 이상 함유된	l 제과용 과	의 핔링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500			
5.1	초콜릿 및 코코이	· 가공품			
	GMP 승인 첨가물				
-	GMP 승인 색소		초 <del>콜</del> 릿 표면에만 허용		
	가공식품에서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초콜릿 표면에만 허용		
476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5,000			
477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4,000			
960	스테비올배당체	550			
5.2	설탕과자	1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1,000			
960	스테비올배당체	1,100			
5.2.1	풍선껌 및 츄	잉껌			
304	아스코빌팔미테이트	GMP			
310	갈산프로필	200			
320	부틸히드록시아니솔	200			
321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200			

MPL

5.000

조건

아래 '참고' 확인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품목

아세설팎칼륨

INS (if any)

950

참고. 1.3.1-5에는 허용되지 않음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조리된 밀가루
			제품에만 (예: 크럼펫,
			피클렛, 플랩잭)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200	파스타와 국수요리만
280 281 282	프로피온산 및 나트륨 및 칼륨 및	2,000	
283	프로피온산칼슘	2,000	
			밀가루 간식만 포함
202		10	(예: 프레첼, 프리터와
392	로즈마리 추출물		크래커) 면과 파스타는
			포함하지 않음
950	아세설팜칼륨	200	
956	알리탐	200	
962	아스파탐-아세설팜염	450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7	빵류 및 베이커리	<b>의제품류</b>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1,200	
200 201 202 202	프로피온산 및 나트륨 및 칼륨 및	4.000	
280 281 282 283	프로피온산칼슘	4,000	
7.1	빵류 및 관련	제품	
7.1.1	데코레이션	빵	
960	스테비올배당체	160	
7.2	비스킷,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160b	안나토색소	25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300	
224 225 228	이산화성기도 꽃 나트늄 꽃 이성선달늄 	300	
392	로즈마리 추출물	40	
475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5,000	케이크만
950	아세설팜칼륨	200	
956	알리탐	200	
960	스테비올배당체	160	
962	아스파탐-아세설팜염	450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8 식육 및 식육가공품(가금류와 수렵육 포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315		
249 250	아질산염류 (칼륨 및 나트륨)	125		
280 281 282	프로피온산 및 나트륨 및 칼륨 및	GMP		
283	프로피온산칼슘	GIVIP		
432	폴리소르베이트20	500		
8.3.1	발효, 비가열조리 -	분쇄가공육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1,500		
235	피마리신 (나타마이신)	1.2 mg/dm²	케이싱을 포함하여 3mm 이상 5mm 이하 의 깊이로 채취한 표 면 시료로 측정한 경 우, 식품 표면에 적용	
251 252	질산염 (칼륨 및 소디움염)	500		
8.3.2	소시지 및 생, 비가공	소시지용 고	7	
	GMP 승인 첨가물			
220 221 222 223 224 225 228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500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315		
392	로즈마리 추출물	100	건조소시지만	
8.4	식용 케이	싱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	 소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100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500		
224 225 228	어딘되장기도 못 나드늄 못 어청산일늄 	500		
8.5	동물성 단백질	가공품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9	어류 및 어류가공품류		
9.1	가공되지 않은 어류 및 어류필렛(냉동 및 해동 포함)		
9.1.1	냉동 어류		
300 301 302	아스코브산 및 나트륨, 칼슘 및	400	
303	아스코브산칼륨	400	
315 316	에리토르브산 및 나트륨 에리소브산	400	
339 340 341	나트륨, 칼륨 및 인산칼슘	GMP	
450	피로인산류	GMP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황산수소나트륨	1,000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1,000	
224 225 228	이인되용기도 못 나르븀 못 이용인들븀 	1,000	
9.4.2	어란(생선통조림을 포함한 완전보존처리한 어류가공품)		
123	식용색소적색제2호	300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10	알류 및 알제품류			
10.1	알류			
	첨가물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10.2	액란제품			
	GMP 승인 첨가물			
234	니신	GMP		
1505	구연산트리에틸	1,250	액체 난백만	
10.3	냉동란제품	<u> </u>		
	GMP 승인 첨가물			
10.4	건조 또는 열응고 알제품			
	GMP 승인 첨가물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11	설탕, 꿀 및 관련	년제품류		
11.1	설탕			
460	결정셀룰로스, 분말셀룰로스	GMP		
11.1.1	레인보우 설탕(스프	링클스 설탕)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11.2	설탕 및 설팅	시럽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450		
224 225 228	이산되장기도 못 나트늄 못 이용산들늄	430		
11.3	꿀 및 관련 <i>기</i>	<b>├</b> 공품		
	첨가물 사용을 허용하지 않	음		
11.3.1	건조 꿀			
	GMP 승인 첨가물			
11.4	식탁용 감미	료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636	말톨	GMP	
637	에틸말톨	GMP	
640	글리신	GMP	
641	L-류신	GMP	
950	아세설팜칼륨	GMP	
952	사이클람산류	GMP	
956	알리탐	GMP	
962	아스파탐-아세설팜염	GMP	
960	스테비올배당체	GMP	
1201	폴리비닐피롤리돈	GMP	
11.4.1	식탁용 감미료	(액상)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GMP	
210 211 212 213	벤조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안식향산칼슘	GMP	
954	사카린	GMP	
11.4.2	식탁용 감미료(개별포장 정제,	파우더 또는	과립형태)
954	사카린	GMP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12	식염류 및 양	념류		
392	로즈마리 추출물	40	조미료에 허용되지 않음 (예: 케첩, 마요네즈, 머스타드, 릴리쉬)	
12.1	식염 및 식염 [	<b>대체재</b>		
12.1.1	식염			
341	인산칼슘	GMP		
381	구연산철암모늄	GMP		
504	탄산마그네슘	GMP		
535	페로시안화나트륨	50	나트륨 전체	
536	페로시안화칼륨	50	페로시안화칼륨	
551	이산화규소 (비결정의)	GMP		
552	규산칼슘	GMP		
554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GMP		
556	칼슘알루미늄실리케이트	GMP		
12.1.2	저염도 식염 흰	한물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12.1.3	식염 대체	데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359	암모늄아디페이트	GMP		
363	호박산	GMP		
1001	콜린염 및 에스테르 (탄산, 염화수소, 구연산, 주석산 및 젖산)	GMP		
12.2	비분류 카테.	고리		
12.3	식초 및 관련기	가공품		
	GMP 승인 색소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100		
224 225 228	이인외성기 <u> </u>	100		
300 301 302	아스코브산 및 나트륨, 칼슘 및	100		
303	아스코브산칼륨	100		
315 316	에스토르브산 및 나트륨 에리소브산	100		
	*퀴닌과 카페인을 제외하고 허용된 항료			
12.4	비분류 카테.	고리		
12.5	누룩 및 누룩?	가공품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12.5.1	건조 누룩			
12.6	12.6 채소단백질제품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13	특수용도	식품	
13.1	영아용 조	제분유	
270	젖산	GMP	
304	아스코빌팔미테이트	10 mg/L	
307b	d-토코페롤(혼합형)	10 mg/L	
322	레시틴	5,000 mg/L	
330	구연산	GMP	
331	구연산나트륨	GMP	
332	구연산칼륨	GMP	
410	로커스트콩검	1,000 mg/L	
412	구아검	1,000 mg/L	
471	지방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	4,000 mg/L	
526	수산화칼슘	GMP	
13.1.1	콩기반 영아용 조제분유		
1412	인산이전분	5,000 mg/L	
1413	인산화인산이전분	5,000 mg/L	참고. 1.3.1-6절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1414	아세틸인산이전분	5,000 mg/L	참고. 1.3.1-6절	
1440	히드록시프로필전분	25,000 mg/L	참고. 1.3.1-6절	
13.1.2	액상 영아용	조제분유		
407	카라지난	300		
13.1.3	단백질대체제 기반 특수식이섭	취를 위한 영아	용 조제분유	
407	카라지난	1,000 mg/L		
471	지방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	5,000 mg/L		
472c	글리세린구연산지방산에스테르	9,000 mg/L		
472e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400 mg/L		
1412	인산이전분	25,000 mg/L		
1413	인산화인산이전분	25,000 mg/L	참고. 1.3.1-6절	
1414	아세틸인산이전분	25,000 mg/L	참고. 1.3.1-6절	
1440	히드록시프로필전분	25,000 mg/L	참고. 1.3.1-6절	
13.2	영아용	식품		
-	*퀴닌과 카페인을 제외하고 허용된 항료	GMP		
170i	탄산칼슘	GMP		
260 261 262	아세트산 및 칼륨, 나트륨, 칼슘 및	5.000		
263 264	암모늄염	5,000		
270 325 326		2.000		
327 328	젖산 및 나트륨, 칼륨, 칼슘 및 암모늄염	2,000		
300 301 302 303	아스코브산 및 나트륨, 칼슘 및 칼륨염	500		
304	아스코빌팔미테이트	100		
307b	d-토코페롤(혼합형)	300	지방에만	
322	레시틴	15,000		
330 331 332	구연산 및 나트륨, 칼륨, 칼슘 및	G1.45		
333 380	시트르산암모늄	GMP		
407	카라지난	10,000		
410	로커스트콩검	10,000		
412	구아검	10,000		
414	아라비아검	10		
415	잔탄검	10,000		
440	펙틴	10,000		
471	지방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	5,000		
500	탄산나트륨	GMP		
501	탄산칼륨	GMP		
503	탄산암모늄	GMP		
509	염화칼슘	750		
1412	인산이전분	50,000	총합	
1413	인산화인산이전분	50,000	총합	
1414	아세틸인산이전분	50,000	총합	
1422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	50,000	총합	
	· · · · · · · · · · · · · · · · · · ·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213	안식향산칼슘		
338	인산	GMP	아래 '참고' 확인
524	수산화나트륨	GMP	아래 '참고' 확인
525	수산화칼륨	GMP	아래 '참고' 확인
참고. 산도조절제로서 사용이 허용됨			
950	아세설팜칼륨	450	
954	사카린	200	
962	아스파탐-아세설팜염	450	
13.5.1	액상 특수의	료용도식품	
123	식용색소적색제2호	30	
160b	안나토색소	10	
13.5.2	특수의료용도식품(액상식품을 제외한)		
123	식용색소적색제2호	300	
160b	안나토색소	25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14	무알코올음료 및 알코올음료		
14.1	무알코올음료 및 발	효청량음료	
14.1.1	물		
14.1.1.1	광천수		
290	이산화탄소	GMP	
14.1.1.2	탄산수, 미네랄워터	및 소다수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999(i) 999(ii)	퀼라야추출물(타입 I, 타입 II)	40	
14.1.2	과·채주스 및 과·차	주스제품	
	주황혀버섯(sweet osmanthus ear) 당지질	100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400	아래 '참고' 확인
210 211 212 213	벤조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안식향산칼슘	400	아래 '참고' 확인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115	아래 '참고' 확인
224 225 228	아황산칼륨	115	어네 삼고 확인
243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50	아래 '참고' 확인
281	프로피온산나트륨	GMP	아래 '참고' 확인
282	프로피온산칼슘	GMP	아래 '참고' 확인
참고. 14.1.2의 각	항목에 대해 *GMP 원칙은 화학적 또는 열처	리에 의해 보	존되지 않은 주스에 보
존료 사용을 허용	당하지 않음		
14.1.2.1	과·채주스		
			기계적 수단 이외의 방법
OMP 등인 심기물 으로 분리된 주스의 경우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u>-</u>	
	퀴닌	300	
	주황혀버섯(sweet osmanthus ear) 당지질	50	
160b	안나토색소	10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400	
210 211 212 213	벤조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안식향산칼슘	400	
220 221 222 223	이산화황가스 및 나트륨 및 아황산칼륨	250	
224 225 228	- 이번최성기교 못 되도늄 곳 이성인설늄 	250	
342	인산암모늄	GMP	
999(i) 999(ii)	퀼라야추출물(타입 I, 타입 II)	40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가						
INS (if any)	품목	MPL	조건			
20	유형 0-14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				
	GMP 승인 첨가물					
	GMP 승인 색소					
	최대허용량으로 허용한 색소					
20.1	음료류					
160b	안나토색소	10				
20.2	음료 이외의 식품					
160b	안나토색소	25				
392	로즈마리 추출물	50	가공된 견과류만			
20.2.0.1	커스터드 믹스, 커스터드 파우더 및 블라망주(blancmange) 파우더					
950	아세설팜칼륨	500				
956	알리탐	100				
960	스테비올배당체	80				
962	아스파탐-아세설팜염	1,100				
20.2.0.2	젤리					
123	식용색소적색제2호	300				
950	아세설팜칼륨	500				
956	알리탐	100				
952	사이클람산류	1,600				
954	사카린	160				
960	스테비올배당체	260				
962	아스파탐-아세설팜염	1,100				
20.2.0.3	유제품 및 지방 기반 디저트, 딥 및 스낵					
200 201 202 203	소르브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소르브산칼슘	500				
210 211 212 213	벤조산 및 나트륨, 칼륨 및 안식향산칼슘	700				
234	니신	GMP				

# 부칙 16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유형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기준 1.1.1과 기준 1.3.1로 규제된다. 본 기준은 1.1.2-11(3) 조, GMP 허용 첨가물, GMP 허용 착향료, 최대 수준으로 허용된 착향료의 정의에 따른 물질을 열거한다.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부칙 16-1 명칭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 부칙 16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정의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 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부칙 16-2 GMP 허용 첨가물

1.1.2-11(3)조에 따른 GMP 허용 첨가물은 아래의 표에 열거되어 있다 (처음에는 알파벳 순서로 나중에는 번호 순서로).

# GMP 허용 첨가물-알파벳 순

식품첨가물명	INS	식품첨가물명	INS	
OF III 는 YF	260	아스파탐	951	
아세트산		(1.3.1-5 절과 일치하는 기술적 사용)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472a	밀납(백색 및 황색)	901	
아세틸아디프산이전분	1422	벤토나이트	558	
아세틸인산이전분	1414	표백전분	1403	
아세틸산화전분	1451	부탄 (가압 식품 용기 전용)	943a	
산처리전분	1401	초산칼슘	263	
아디프산	355	알기산칼슘	404	
어드밴탐	969	칼슘알루미늄실리케이트	556	
한천	406	아스코브산칼슘	302	
알긴산	400	탄산칼슘	170	
알칼리처리전분	1402	염화칼슘	509	
알루미늄실리케이트	559	구연산칼슘	333	
암모늄아세테이트	264	푸마르산칼슘	367	

# ※ 참고 ※

표 "Additives permitted at GMP—numerical listing"은 위 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제시하지 않음

# 부칙 16-3 GMP 허용 착향료

(1) 1.1.2-11(3)조에 따른 \*GMP 허용 착향료는 아래의 표에 열거되어 있다. (처음에는 알파 벳 순서로 나중에는 번호 순서로)

# ※ 참고 ※

표 "Colouring permitted at GMP—numerical listing"은 위 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제시하지 않음

# 부칙 16-4 최대 수준으로 허용된 착향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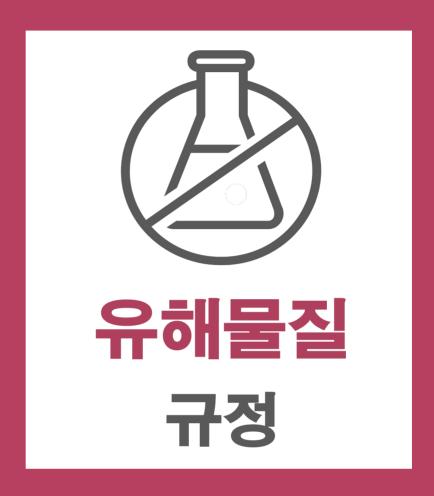
1.1.2-11(3)조에 따른 최대 수준으로 허용된 착향료는 아래의 표에 열거되어있다 (처음에는 알파벳 순서로 나중에는 번호 순서로)

참고. 식품 내 모든 착향료의 최대 수준을 설정하는 1.3.1-4(3)조 참조

최대 수준으로 허용된 착향료 – 알파벳 순서	1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129
아조루빈	122
브릴리언트블랙	151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133
브라운 HT	155
식용색소 녹색 제3호	143
그린 S	142
식용색소 청색 제2호	132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124
퀴놀린옐로우	104
식용색소 황색 제6호	110
식용색소 황색 제5호	102

# ※ 참고 ※

표 "Colourings permitted to maximum level—numerical listing"은 위 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제시하지 않음



# 01

#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



# 1.4.1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

-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참고 3. 1.1.1-10(6)에서 판매용 식품은 식품의 구성과 식품의 특정 물질의 존재와 관련된 본 규정집의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식품에 존재하는 기타 물질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 참고 4.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 규정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며, 이는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식품이 인간이 섭취하기에 안전하고 적합해야 한다는 적용법에 부과된 요구사항의 맥락에 맞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과 천연 독성물질의 농도는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1.4.1-1 명칭

- 본 규정은 호주 뉴질랜드식품기준법 1.4.1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이다.
  -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1.4.1-2 해설

- (1) 본 규정에서 규정한 제한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식품 일부에 적용된다.
- (2) 본 기준과 부칙 19에서 특정 식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칙 22에 기술된 식품이다.
  - (a) 채소의 경우:
    - (i) 채소는 부칙 22에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 (ii) 옥수수는 부칙 22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 (b) 다른 특정 식품은 부칙 22에 기술되어 있다.

# 1.4.1-3 식품 내 오염물질과 천연 독성물질 수준

(1) 오염물질 또는 천연 독성물질과 관련해서 열거된 식품에서 부칙 19-4, 부칙 19-5, 부칙 19-6 에 열거된 오염물질 또는 천연 독성물질의 수준은 동 부칙에 열거된 해당 양을 초과해서는

아 된다.

참고, 부칙 19는 다음 경우에 대한 최대 허용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금속 오염물질
- 비금속 오염물질
- 처연 독성물질
- 어류 내 수은의 평균 및 최대 허용 기준
- (2) 어류 및 어류가공품 내 수은의 수치는 부칙 19-7에 따라 계산하며 부칙 19-7(1) 또는 부칙 19-7(2) 중 적절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3) 두 가지 이상의 원료가 들어간 제품 중 부칙 19에 열거된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이 들어간 판매용 식품의 경우 부칙 19에 열거된 식품 내 오염물질 또는 독소의 수치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주어진 최대 허용 기준, ML을 넘어서면 안 된다.

$$ML = [\sum_{j=1}^{N} (ML_{j} \times T_{j}) + CF \times (T - \sum_{j=1}^{N} T_{j})] / T$$

위 공식에서,

N은 부칙 19에서 오염물질 또는 천연 독성물질의 최대 허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판매용 식품 속 원료의 수를 나타낸다.

MLi는

제품의 특정 원료(jth 원료)에서

- (a) 수은의 경우 부칙 19-7에 따라 허용된 수은의 평균 수치
- (b) 기타 (1)에 따라 허용된 독성물질 또는 독소의 최대 허용 기준

제품의 특정 원료(j<sup>th</sup> 원료)에서 T<sub>i</sub>(=Total<sub>i</sub>)는 판매용 식품의 j<sup>th</sup> 원료의 총중량

CF는

- (a) 납의 경우 0.01 mg/kg
- (b) 카드뮴의 경우 0.005 mg/kg
- (c) 기타 물질- 0 mg/kg

참고. CF는 배경산출계수로, 부칙 19에 명시되지 않은 최대 허용 기준에 대한 식품의 대표적인 오염 기준을 참작하고 있다. 오염물질은 그런 식품에서 미량으로 발생한다.

T는 Total로서 제품의 총중량이다. (g 기준)

# 1.4.1-4 꿀과 소밀(comb 꿀) 관련 예외조항

- (1) 1.1.1-9절은 1.4.1-3절의 목적을 위해 꿀과 소밀(comb 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1.4.1-3절에도 불구하고 식품기준법(Proposal p.1029- 꿀에서 투틴(Tutin)의 최대허용량) 변경 이전에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된 꿀과 소밀은 변경 전 규정을 준수했다면 부칙 19-6의 표에 나열된 투틴 최대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 부칙 19.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 최대잔류허용량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의 최대 허용 기준은 1.1.1-10(6)조와 기준 1.4.1에 따라 규제된다. 본 기준은 1.4.1-3(1)조의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을 열거하고 있으며, 1.4.1-3(2)조에 대한 어류 내수은의 수치 계산 방법과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부칙 19-1 명칭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 부칙 19.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의 최대허용량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부칙 19-2 정의

### 본 부칙에서

비소(arsenic)는 금속으로 간주한다.

**맥각(ergot)**은 클라비셉스 퍼루레아(*Claviceps purpuria*) 진균의 균핵 또는 휴면 형태를 의미 한다.

꿀(꿀)에는 소밀(comb 꿀)을 포함한다.

- 전체 사이안수소산(hydrocyanic acid, total)은 모든 종류의 사이안수소산으로서, 여기에는 효소가수분해 또는 산가수분해과정 중 또는 그 후에 사이안화글리코사이드(cyanogenic glycosides)와 사이아노하이드린(cyanohydrin)에서 발생하는 시안화수소산을 포함한다.
- MU는 미국 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Inc), 바닷물과 조개류의 검사를 위한 권장 절차(Recommended procedures for examination of seawater and shellfish, Irwin N.(ed.)) 4판에서 기술한 신경독성패류에 대한 측정 단위를 의미한다.
- 즉석 섭취 카사바 칩(ready-to-eat cassava chips)은 크리스피, 크래커, '베지' 크래커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즉석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스위트 카사바로 제조한 제품을 의미한다. 참고. 본 규정에서 (1.1.2-3 참고):
  - **꿀(꿀)**은 꽃의 꿀,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의 분비물,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에서 식물의 즙액을 빠는 곤충이 배출한 분비물에서 꿀벌이 수집하여 자신의 특정 물질을 사용해 변형, 결합



한 후 벌집에 저장하여 숙성시키는 천연 당 물질을 의미한다.

# 부칙 19-3 오염물질 및 천연 독성물질의 수치 계산

- (1) 본 부칙에서
  - (a) 금속에 대한 자료는 해당 금속의 각 화학종(化學種)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b) 식품 일부만이 일상적으로 섭취되는 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언급은 그 부분만을 의미한다.
  - (c) 해초의 경우 85% 수화된 해초를 기반으로 계산한다.
  - (d) 19-7(3)조에 따라, 해초를 제외한 기타의 식품을 건조, 탈수 또는 농축한 경우 건조, 탈수, 농축 전의 식품 또는 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다.
- (2) (1)(d)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
  - (a) 제조업체의 식품 분석
  - (b) 원료로 사용한 물의 실제량이나 평균량을 사용해 계산
  - (c)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데이터

# 부칙 19-4 금속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참고. 어류, 갑각류, 연체류 내 수은의 수치는 부칙 19-7 참조

아래 열거된 금속 오염물질에 대하여 해당 식품과 관련하여 명시된 특정 식품에 대한 최대허용 량(mg/kg)은 다음과 같다:

### 금속 오염물질의 최대 기준

오염물질	식 품	최대허용량 (mg/kg)
비소(총량)	곡류 및 곡류가공제품 (부칙 22에 명시- 스위트콘 제외)	1
	소금	0.5
비소(무기질)	갑각류	2
	어류	2
	연체류	1
	해초	1
카드뮴	아란스, 곡물	0.1
	배추 (페차이)	0.1
	초콜렛 및 코코아 제품	0.5
	소, 양, 돼지의 신장	2.5
	엽채류 (부칙 22에 명시)	0.1
	소, 양, 돼지의 간	1.25

# 부칙 19-5 비금속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아래 열거된 비금속 오염물질에 대하여 해당 식품과 관련하여 명시된 특정 식품에 대한 최대허용량(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mg/kg로 나타냄)은 다음과 같다:

### 비금속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오염물질	식 품	최대허용량
아크릴로니트릴	모든 식품	0.02
(Acylonitrile)	그는 기업	0.02
아프리토시(Afletovia)	땅콩	0.015
아플라톡신(Aflatoxin)	견과류(부칙 22에 명시)	0.015
마비성 패독		
(도모이산 당량,	이매패류	20
Domoic acid equivalent)		
- 3-클로로-1,2-프로판디올	간장 및 굴소스	40%의 건중량으로 계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오염물질	식 품	최대허용량
(3-chloro-1,2-propanediol)		0.2
비마비성 패독		
(오카다익산 당량, Okadaic	이매패류	0.2
acid equivalent)		
 1,3-디클로로-2-프로판올	71.71. [7]	40%의 건중량으로 계산한
(1,3-dichloro-2-propanol)	간장 및 굴소스	0.005
맥각(Ergot)	곡물류	500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및 강화와인	에탄올 1리터 당 메탄올 3 g
메타오(Mathanal)	위스키, 럼, 진 및 보드카	에탄올 1리터 당 메탄올 0.4 g
메탄올(Methanol)	기타 증류주, 과일주, 채소주 및	에타오 1미디 다 메타오 o ~
	미드(mead, 벌꿀주)	에탄올 1리터 당 메탄올 8 g
신경독성 패독	이매패류	200 MU/kg
마비성 패독		
(삭시톡신 당량,	이매패류	0.8
Saxitoxin equivalent)		
	루핀 가루, 루핀콩가루,	
포몹신(Phomopsins)	탈지루핀박(lupin kernel meal) 및	0.005
	루핀 겉껍질	
	포유류 지방	0.2
포기여시하비펜니/Dalvishlawin	가금류 지방	0.2
폴리염소화비페닐(Polychlorin	우유 및 우유제품	0.2
ated biphenyls), 총량	알류	0.2
	어류	0.5
염화비닐(Vinyl chloride)	생수를 제외한 모든 식품	0.01

# 부칙 19-6 천연 독성물질의 최대허용량

(1) 아래 명시된 천연 독성물질에 대하여, 해당 식품과 관련하여 명시된 특정 식품에 대한 최대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 천연 독성물질의 최대허용량

천연 독성물질	식 품	최대허용량
	버섯 함유 식품	100
아가리신산(Agaric acid)	알코올음료	100
알로인(Aloin)	알코올음료	50
베르베린(Berberine)	알코올음료	10
쿠마린(Coumarin)	알코올음료	10
하이페리신(Hypericine)	알코올음료	2
루핀 알칼로이드	루핀 가루, 루핀콩가루, 탈지루핀박(lupin	200
(Lupin alkaloids)	kernel meal) 및 루핀 겉껍질	200

(2) 아래 명시된 천연 독성물질에 대하여, 해당 식품과 관련하여 명시된 특정 식품에 대한 최대 허용량(mg/kg)은 다음과 같다:

### 천연 독성물질의 최대허용량

천연 독성물질	식 품	최대허용량
에루스산	식용유지	20000
히스타민	어류 및 어류가공품	200
	과자류	25
	핵과류 과일주스	5
시안화수소산, 총	마지팬(Marzipan)	50
	즉석섭취 카사바칩	10
	알코올음료	알코올 함량 1%당 1mg
투틴 (Tutin)	꿀	0.7

참고. 뉴질랜드 식품규정 2010 (Tutin in 꿀)은 양봉업자, 꿀의 포장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4.1-3절에서 제시된 투틴(tutin)의 최대치 준수를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 부칙 19-7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수은 최대 수치 및 평균

(1) 1.4.1-3(2)조에 따라 아래의 표가 적용된다:

대 상	조 건	단위시료의 수은 평균 수치는 다음을 넘지 않아야 함	단위시료의 수은 최대 수치는 다음을 넘지 않아야 함
잼피쉬, 새치(청새치 포함), 남쪽 참다랑어, 참치, 바라문디(barramundi), 링(몸통이 길쭉한 물고기	<ul><li>(a)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li><li>(i) 10개 이상의 단위 시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li><li>(ii) 단위 시료의 수은 농도가</li><li>1.0mg/kg이상인 경우</li></ul>	1.0 mg/kg	1.5 mg/kg
류), 오렌지 라피(orange roughy), 가오리류 및 기	(b) 단위 시료 5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1.0 mg/kg	(정해진 수치 없음)
타 모든 상어종	(c) 19-7(2)조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단위 시료가 불충분한 경우	0.5 mg/kg	1.0 mg/kg
기타 어류, 어류 제품, 갑각류, 연체류	<ul><li>(a)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li><li>(i) 10개 이상의 단위 시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li><li>(ii) 단위 시료의 수은 농도가</li><li>1.0mg/kg이상인 경우</li></ul>	0.5 mg/kg	
	(b) 단위 시료 5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0.5 mg/kg	(정해진 수치 없음)
	(c) 19-7(2)조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단위 시료가 불충분한 경우		1.0 mg/kg

- (2) (1)조의 표에 대해서, 계산은 다음의 단위 시료 숫자를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a) 갑각류 또는 연체류 외에 어류
    - (i) 5톤 이하의 로트의 경우 10
    - (ii) 5톤 초과 10톤 이하의 로트 15
    - (iii) 10톤 초과 30톤 이하의 로트 20
    - (iv) 30톤 초과 100톤 이하의 로트 25
    - (v) 100톤 초과 200톤 이하의 로트 30
    - (vi) 200톤 초과의 로트 40
  - (b) 갑각류와 연체류의 경우
    - (i) 1톤 이하의 로트 10
    - (ii) 1톤 초과 5톤 이하의 로트 15

- (iii) 5톤 초과 30톤 이하의 로트 20
- (iv) 30톤 초과 100톤 이하의 로트 25
- (v) 100톤 초과의 로트 30
- (c) (a)항 또는 (b)항에서 명시한 단위 시료의 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 (3) 본 절에서, 건조되거나 부분적으로 건조된 어류의 수은 함량은 80%의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단위 시료의 정의

(4) 본 절에서,

단위 시료(Sample unit)는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시료를 의미한다.

- (a) 분석되는 \*로트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것
- (b) 포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간주 되는 것
- (c) 분석의 목적에 충분한 것
- (5) 각각의 단위 시료는 개별적인 어류, 갑각류, 연체류 또는 어류 제품의 포장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한다.

**CHAPTER** 

02

# Agvet 화학물질

(농약, 동물용의약품)

# 1.4.2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 참고 2. 본 기준은 FSANZ법이 다루고 있는 사안 중 최대잔류허용량에 관한 것이다.
- 참고 3. 본 기준은 호주에만 적용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농업용 화합물에 대한 최대잔류허용량은 식품법 2014에 따라 발행된 최대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Standard)에 명시되어있다.
- 참고 4. 적용법은 식품의 속성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이질적인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 시를 기준으로 본 규정집을 위반하는 양의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이라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1.1-10(4)(d)항은 본 규정집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또는 대사물질 또는 Agvet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4.2-4절과 1.4.2-5절 및 관련 부칙은 관련된 허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허용된 잔류물질은 부칙 20-3에 명시되어 있다.

### 1.4.2-1 명칭

-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4.2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이다.
-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1.4.2-2 기준의 목적

- 본 기준과 부칙 20, 부칙 21, 부칙 22의 목적은 판매용 식품에 허용된 농업용 또는 가축용 화학물질의 잔류물질 최대허용량과 이물질 잔류물질허용량을 설정하는 것이다.
- 참고. 최대잔류물질허용량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 (a) 최소 유효 수준으로 사용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적용할 때, 식품 내 존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잔류량; 및
  - (b) 위와 같은 수준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 평가를 거친 후 결정

# 1.4.2-3 정의와 해설

참고. 본 규정집에서 (1.1.2-2 참조)

- **Agvet 화학물질**은 Agvet 규정집의 의미 내에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agricultural chemical product or a veterinary chemical product)을 의미한다.
  - 참고. Agvet 규정집은 1994년 농수의화학법(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Code Act 1994)(Cth)의 부칙으로 설정된 농수의화학규정(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Code)이다. FSANZ법의 4(1)조 참조.
- 이물질 최대잔류허용량 또는 ERL은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해당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칙 21에 명시된 양을 의미한다.
- **최대잔류허용량** 또는 **MRL**은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을 나타내는 부칙 20에 명시된 양을 의미한다.
- (1) 본 기준에서
  -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된 잔류물질은 Agvet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허용된 잔류물질로서 부칙 20 또는 부칙 21에서 확인된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 (2) 식품 내 허용된 잔류물질의 양을 계산할 때
  - (a) 부칙 22에 명시된 상품의 비중에 들어있는 양만 계산한다.
  - (b) 허용된 잔류물질이 2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경우, 식품 내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양을 계산한다.
- (3)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된 잔류물질의 최대량이 가공된 식품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최대량이 가공된 식품과 가공되지 않은 식품 모두에 적용된다.
- (4) 본 기준의 부칙 20과 부칙 21에서 특정 식품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이는 부칙 22에 서술된 식품을 가리킨다.

# 1.4.2-4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량

- (1) 판매용 식품은 다음의 경우에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된 잔류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 (a) Agvet 화학물질이 부칙 20에 나열되어 있고,
  - (b) 해당 식품이 부칙 20에 있는 Agvet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열거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 거나 원료를 함유하고 있으며,
  - (c)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의 양이 적용되는 경우(2) 또는 (3)을 준수하는 경우
- (2) 부칙 20의 \*Agvet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열거된 식품으로 구성된 판매용 식품의 경우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의 양이 부칙 20의 해당 식품 Agvet 화학물질의 양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 동 조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2가지 이상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 중 부칙 20의 \*Agvet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열거된 식품을 1가지 이상 함유한 판매용 식품의 경우,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 의 양이 아래의 등식에 따라 계산된 MRL보다 크지 않다면 본 조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MRL = \sum_{j=1}^{N} \frac{Weight(j)}{Weight} \times MRL(j)$$

위 공식에서,

N은 Aqvet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부칙 20에 열거된 식품의 원료 수

Weight(j)는 j<sup>th</sup> 원료의 중량

Weight는 해당 식품의 총중량

**MRL(j)**는 부칙 20에 제시된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에 대한  $j^{th}$  원료와 관련되어 명시된 양

# 1.4.2-5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의 이물질 잔류물질 한도

- (1) 판매용 식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 (a) Agvet 화학물질이 부칙 21에 명시되어 있고,
  - (b) 식품이 부칙 21에 있는 Agvet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열거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원료로 함유하고 있으며,
  - (c)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의 양이 조건에 따라 1.4.2-4(2)조 또는 1.4.2-4(3)조를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 (d)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은 환경적 원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Agvet 화학물질의 식품에의 직접 또는 간접적 사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것
- (2) 부칙 21의 \*Agvet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열거된 식품으로 구성된 판매용 식품의 경우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의 양이 부칙 21의 해당식품 Agvet 화학물질의 양보다 크 지 않을 경우에 본 조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 (3) 2가지 이상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 중 부칙 21의 \*Agvet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열거된 식품을 1가지 이상 함유한 판매용 식품의 경우,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의 양이 아래의 등식에 따라 계산된 MRL보다 크지 않다면 본 조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MRL = \sum_{i=1}^{N} \frac{Weight(j)}{Weight} \times MRL(j)$$

위 공식에서,

N은 Agvet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부칙 21에 열거된 식품의 원료 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eight(j)**는 j<sup>th</sup> 원료의 중량

Weight는 해당 식품의 총중량

**MRL(j)**는 부칙 21에 제시된 Agvet 화학물질의 허용된 잔류물질에 대한  $j^{th}$  원료와 관련되어 명시된 양

# 부칙 20 최대잔류허용량

참고.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잔류물질 최대허용량은 1.1.1-10(6)조와 기준 1.4.2로 규제된다. 본 기준은 1.4.2-4의 목적에 따라,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과 허용 잔류물질을 설명하고 있다.

# 부칙 20-1 명칭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 부칙 20. 최대잔류허용량이다.

참고 1.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93 참조)

참고 2. 본 기준은 호주에서만 적용된다. 뉴질랜드에서는 농업용 혼합물에 대한 잔류물질 최대 대허용량을 최대 잔류물질 한도 기준(Maximum Residue Limits Standard)에서 설명하고 있다.

## 부칙 20-2 해석

### 본 부칙에서

- (a) 잔류물질 최대허용량을 나타내는 부칙(\*)는 측정 한도에서 설정된다.
- (b) 잔류물질 최대허용량을 나타내는 기호 'T'는 잠정적인 잔류물질 최대허용량을 의미한다.
- (c) **동물성 식품**은 부칙에 열거된 동물 기원의 2차 가공식품을 포함하며, 부칙 22에 열거된 동물성 식품을 의미한다.

# 부칙 20-3 잔류물질 최대허용량

1.4.2-4에 따라, \*농축산물적용(Aqvet) 화학물질, 허용된 잔류물질과 양은 kg당 mg으로 표현한다.

### ※ 참고 ※

부칙 20-3에서 제시한 표는 원문 내 가공식품만 추출하여 내용을 구성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 아바멕틴 (Abamectin)

허용된 잔류물질 아바멕틴 B1a (Avermectin B1a)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팥(건조)	*0.002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우지	0.1
 소고기	0.005
우유	0.02
차이브(건조)	0.08
	*0.002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0.1
염소지방	0.1
역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염소 간	0.05
염소우유	0.005
염소 고기	0.01
포도주스	0.05
 홉(건조)	0.2
녹두(건조)	*0.002
식용 오렌지유	0.1
후추, 칠리(건조)	0.5
돼지의 신장	0.01
돼지의 간	0.02
돼지고기	0.02
	T*0.01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양고기	0.05
메주콩(건조)	*0.002

Agvet 화학물질명 아세페이트 (Acephate)

허용된 잔류물질 아세페이트 (Acephate) (참고.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는 별도의 MRL이 있음)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콩, 종자(건조)	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2
고기(포유류; 양고기 제외)	0.2
	50
	*0.01

Agvet 화학물질명 아세퀴노실 (Acequinocyl)

아세퀴노실과 그 대사물질인

허용된 잔류물질 2-도데실-3-하이드록시-1,4-나프토퀴논(2-dodecyl-3-hydroxy-1,4-napht

hoquinone)의 합 (아세퀴노실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살구(건조)	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홉(건조)	1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우유	*0.02
건조 복숭아	1

Agvet 화학물질명 아세타미프리드 (Acetamiprid)

허용된 동물 유래 잔류물: 아세타미프리드와 N-데메틸

허용된 잔류물질 아세트아미프리드((E)-N1-[(6-chloro-3-pyridyl)methyl]-N2-cyanoaceta

midine)의 합(아세타미프리드로 나타냄)

UER	+151171 = +1034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두류 [밭콩(건조); 루핀(건조) 제외]	0.1
향신료(건조 후추, 칠리 제외; 향신료, 씨앗 향신료	0.1
포함)	0.1
	2

Agvet 화학물질명 아세토클로르 (Acetochlor)

허용된 잔류물질 염기로 2-에틸-6-메틸아닐린(EMA) 및 2-(1-메틸아닐린(HEMA)으로

가수분해 가능한 화합물의 합 (아세토클로르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메주콩(건조)	1.5

Agvet 화학물질명 아시벤졸라-S-메틸 (Acibenzolar-S-methyl)

아시벤졸라-S-메틸 및 벤조[1,2,3]티아디아졸-7-카르복실산으로

허용된 잔류물질 가수분해된 벤조[1,2,3]티아디아졸-7-카르복실을 함유하는 모든

대사물질 (아시벤졸라-S-메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 아시벤졸라-S-메틸 (Acibenzolar-S-methyl)

아시벤졸라-S-메틸 및 벤조[1,2,3]티아디아졸-7-카르복실산으로

허용된 잔류물질 가수분해된 벤조[1,2,3]티아디아졸-7-카르복실을 함유하는 모든

대사물질 (아시벤졸라-S-메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아클로니펜(Aclonifen) 허용된 잔류물질 아클로니펜(Acloni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가금류 고기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Agvet 화학물질명 아시플루오르펜 (Acifluorfen) 사용 승인된 잔류물질 아시플루오르펜 (Acifluor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아피도피로펜 (Afidopyropen) 식물 유래 물질: 아피도피로펜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아피도피로펜 및

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산(cyclopropanecarboxylic acid)의 카르니틴

접합체(M440I060) (아피도피로펜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1
포유류 지방(유지방 제외)	*0.01
고기(포유류)	*0.1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

아피도피로펜 (Afidopyropen)

식물 유래 물질: 아피도피로펜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아피도피로펜 및

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산(cyclopropanecarboxylic acid)의 카르니틴

접합체(M440I060) (아피도피로펜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오렌지유	0.7
	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1

Aqvet 화학물질명

알벤다졸 (Albendazole)

허용된 잔류물질

알벤다졸, 설폭시화물(sulfoxide), 설폰(sulfone) 및 설폰 아민의 합계

(알벤다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기	*0.1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염소고기	*0.1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3
	0.2

Agvet 화학물질명

알벤다졸 황산화물 (Albendazole sulphoxide)

알벤다졸 (Albendazole) 확인

Agvet 화학물질명

지방족 알코올 에톡실레이트 (Aliphatic alcohol ethoxylates)

허용된 잔류물질

지방족 알코올 에톡실레이트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식용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기	*0.1
<u></u> 우유	1

Agvet 화학물질명

α-사이퍼메트린 (Alpha-cypermethrin)

사이퍼메트린 (Cypermethrin) 확인

Agvet 화학물질명

알트레노제스트 (Altrenogest)

허용된 잔류물질

알트레노제스트 (Altrenogest)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돼지고기	*0.005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005



Agvet 화학물질명 인화알루미늄 (Aluminium phosphide)

포스핀 (Phosphine) 확인

Agvet 화학물질명 아메톡트라딘 (Ametoctradin)

식물 유래 물질: 아메톡트라딘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아메톡트라딘과 6-(7-amino-5-ethyl [1,2,4] triazolo

[1,5-a]pyrimidin-6-yl) hexanoic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20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100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후추, 칠리(건조)	1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아메트린 (Ametryn)허용된 잔류물질아메트린 (Ametry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아미카바존 (Amicarbazone)

아미카바존,

N-(1,1-디메틸에틸)-4,5-디히드로-3-(1-메틸에틸)-5-옥소-1H-1,2,4-트리

허용된 잔류물질 아졸-1-카르복사미드 및

N-(1,1-디메틸에틸)-4,5-디히드로-3-(1-히드록시-1-메틸에틸)-5-옥소-1

H-1,2,4-트리아졸-1-카르복사미드 (아미카바존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7
고기(포유류)	0.01
<u> </u>	*0.01

Agvet 화학물질명 아미노사이클로피라클로르(Aminocyclopyrachlor) 허용된 잔류물질 아미노사이클로피라클로르(Aminocyclopyrachlor)

식품명	Aminocyclopyrachlor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우유	0.02

Agvet 화학물질명 아미노피라리드 (Aminopyralid)

식물 유래 물질: 아미노피라리드와 접합체의 합 (아미노피라리드로

허용된 잔류물질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아미노피라리드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신장 제외)	0.02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아미설브롬 (Amisulbrom)허용된 잔류물질아미설브롬 (Amisulbro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 (건포도류)	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아미트라즈 (Amitraz)

하용된 잔류물질 아미트라즈와 N-(2,4-디메틸페닐)-n'-메틸포름아미딘의 합, (N-(2,4-디메틸페닐)-N'-메틸포름아미딘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천연 면실유	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고기(포유류)	0.1
<u></u>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아미트롤 (Amitrole)허용된 잔류물질아미트롤 (Amitr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홉(건조)	*0.01
고기(포유류)	*0.01
<u></u> 우유	*0.0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 아모시실린 (Amoxycillin)

허용된 잔류물질 아모시실린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 우유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고기(포유류)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양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 암피실린 (Ampicillin)

허용된 잔류물질 암피실린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유	*0.01
말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말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암프로리움 제제 (Amprolium)허용된 잔류물질암프로리움 제제 (Amproliu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4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1
가금류 고기	0.5

Agvet 화학물질명 아프라마이신 (Apramycin) 허용된 잔류물질 아프라마이신 (Apramyc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2
고기(포유류)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1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아술람 (Asulam)허용된 잔류물질아술람 (Asul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0.1
고기(포유류)	*0.1
<u></u>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아트라진 (Atrazine)허용된 잔류물질아트라진 (Atra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T*0.1
루핀 (건조)	*0.02
고기(포유류)	T*0.01
 우유	T*0.01

Agvet 화학물질명 아버멕틴 (Avermectin B1) 아바멕틴(Abamectin) 확인

Agvet 화학물질명 아빌라마이신 (Avilamycin)

허용된 잔류물질 아빌라마이신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돈지/돼지껍데기	0.2
돼지의 신장	0.2
돼지의 간	0.3
돼지고기	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아자메티포스 (Azamethiphos) 허용된 잔류물질 아자메티포스 (Azamethiph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아자페론 (Azaperone)허용된 잔류물질아자페론 (Azaper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2
돼지고기	0.2

Agvet 화학물질명아짐설푸론 (Azimsulfuron)허용된 잔류물질아짐설푸론 (Azimsulf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아짐설푸론 (Azimsulfuron)허용된 잔류물질아짐설푸론 (Azimsulf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아조시스트로빈 (Azoxystrobin) 허용된 잔류물질 아조시스트로빈 (Azoxystrobin)

10 C C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	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3
알류	*0.01
레몬 머틀 잎(건조)	Т3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 우유	0.005
땅콩 기름, 원유	0.1
	3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향신료(건조 후추, 칠리 제외)	*0.1
스위트콘(알맹이)	T0.05

Agvet 화학물질명 바시트라신 (Bacitracin)

허용된 잔류물질 바시트라신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닭의 식용 식용 부속고기(offal)	*0.5
닭지방	*0.5
 닭고기	*0.5
우유	*0.5

Agvet 화학물질명 벤디오캅 (Bendiocarb)

식물 유래 물질: 비결합 벤디오캅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접합 및 비접합 벤디오캅,

2,2-디메틸-1,3-벤조디옥솔-4-올 및 N-하이드록시메틸벤디오카브의

합 (벤디오카브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2
소고기	0.1
- 우유	0.1
가금류 식용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베노밀 (Benomyl)

카벤다짐 (Carbendazim) 확인

Agvet 화학물질명 허용된 잔류물질 벤설퓨론메틸 (Bensulfuron-methyl)

벤설퓨론메틸 (Bensulfuron-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공 쌀겨	*0.05

Agvet 화학물질명

벤타존 (Bentazone)

허용된 잔류물질

벤타존 (Bentaz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두류	0.5
건조 완두콩	0.5
건조 두류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포유류 지방	*0.01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벤조빈디플루피르 (Benzovindiflupyr)

허용된 잔류물질

벤조빈디플루피르 (Benzovindiflupy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in the fat]	*0.01
우유	*0.01
완두콩(건조)	0.2
후추, 칠리(건조)	9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벤질 G 페니실린 (Benzyl G penicillin)

허용된 잔류물질

벤질 G 페니실린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6
고기(포유류)	*0.06
 우유	*0.0015

Agvet 화학물질명

베타싸이플루트린 (Betacyfluthrin)

사이플루트린 (Cyfluthrin) 확인



Agvet 화학물질명 비사이클로피론 (Bicyclopyrone)

비사이클로피론 및 구조적으로 관련된 대사물질은 공통 잔기

허용된 잔류물질 SYN503780 및 CSCD686480으로 결정됨 (비사이클로피론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비페나제이트 (Bifenazate)

비페나제이트와 비페나제이트 디아젠(디아젠카르복실산, 2-(4-

허용된 잔류물질 methoxy-[1,1'-biphenyl-3-yl] 1-methylethyl ester)의 합,

(비페나제이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	T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1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비펜트린 (Bifenthrin)허용된 잔류물질비펜트린 (Bifenthr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05
경협종완두(Field pea)(건조)	T*0.01
홉(건조)	10
루핀 (건조)	T*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2
우유	0.5
후추, 칠리(건조)	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두류(경협종완두, 루핀(건조) 제외)	*0.02
옥수수	0.5

Agvet 화학물질명비터타놀 (Bitertanol)허용된 잔류물질비터타놀 (Bitertano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3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3
- 우유	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빅사펜 (Bixafen)

식물 유래 물질: 빅사펜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빅사펜과 N-(3',4'-dichloro-5-fluorobiphenyl-

 $\hbox{2-yl)-3-(} \hbox{difluoromethyl)-1H-pyrazole-4-carboxamide}$ 

(bixafen-desmethyl)의 합, (빅사펜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천연 면실유	T0.5
알류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7
루핀 (건조)	T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2
유지방	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빅슬로존 (Bixlozone)허용된 잔류물질빅슬로존 (Bixloz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누에콩(건조)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경협종완두(Field pea)(건조)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보스칼리드 (Boscalid)

식물 유래 물질: 보스칼리드

동물 유래 물질: 보스칼리드, 2-chloro-N-(4'-chloro-5-

허용된 잔류물질 hydroxybiphenyl-2-yl) nicotinamide and the glucuronide conjugate

of 2-chloro-N-(4'-chloro-5- hydroxybiphenyl-2-yl) nicotinamide, (보스칼리드 상당량으로 표현되는 니코틴아미드(nicotinam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모든 음식	0.5
병아리콩(건조)	T3
건포도	1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3
	60
렌즈콩(건조)	Т3
루핀 (건조)	T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3
유지방	0.7
 우유	0.1
식용 땅콩 기름	T0.7
 후추, 칠리 (건조)	10
 자두(건조)	5
녹차, 홍차	40

Agvet 화학물질명브로마실 (Bromacil)허용된 잔류물질브로마실 (Bromac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4
고기(포유류)	*0.04
<u></u> 우유	*0.04

Agvet 화학물질명브로목시닐 (Bromoxynil)허용된 잔류물질브로목시닐 (Bromoxyn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Т3
알류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T1
- - 우유	T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뷰프로페진 (Buprofezin) 허용된 자류물질 뷰프로페진 (Buprofezin)

100 0100	11 — — — ( bupi orcz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Agvet 화학물질명뷰프로페진 (Buprofezin)허용된 잔류물질뷰프로페진 (Buprofez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감귤유(식용)	6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우유	*0.01
올리브오일, 원유	T2
버진올리브오일	2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옥수수	T2

Agvet 화학물질명 부타페나실 (Butafenacil) 허용된 잔류물질 부타페나실 (Butafenac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부트록시딤 (Butroxydim)허용된 잔류물질부트록시딤 (Butroxydi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캡탄 (Captan)허용된 잔류물질캡탄 (Capta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병아리콩(건조)	T0.1
건포도	1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캡탄 (Captan)허용된 잔류물질캡탄 (Capta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렌즈콩(건조)	T0.1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카바릴 (Carbaryl)허용된 잔류물질카바릴 (Carbar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카카오빈(건조)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3
고기(포유류)	0.07
- 우유	0.1
후추, 칠리(건조)	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카벤다짐 (Carbendazim)

허용된 잔류물질 카벤다짐과 2-아미노벤즈이미다졸의 합 (카벤다짐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1
고기(포유류)	0.2
우유	*0.1
후추, 칠리(건조)	2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현미	2
향신료(건조 후추, 칠리 제외; 향신료, 씨앗 향신료	+0.1
포함)	*0.1
향신료 (씨앗 향신료 포함)	5

Agvet 화학물질명 카르베타마이드 (Carbetamide) 허용된 잔류물질 카르베타마이드 (Carbetam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Agvet 화학물질명 카르베타마이드 (Carbetamide) 허용된 잔류물질 카르베타마이드 (Carbetam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카보설판 (Carbosulfan)

카보퓨란(Carbofuran) 확인

Agvet 화학물질명카펜트라존-에틸 (Carfentrazone-ethyl)허용된 잔류물질카펜트라존-에틸 (Carfentrazone-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홉(건조)	0.1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2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세프티오퍼 (Ceftiofur)

허용된 잔류물질 데스후로릴세이프티오퍼 (Desfuroylceftiofu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식용 부속고기(offal)	2
우지	0.5
소고기	0.1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 세프록심 (Cefuroxime)

허용된 잔류물질 세프록심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기	*0.1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 세팔로니움 (Cephalonium)

허용된 잔류물질 세팔로니움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기	*0.1
<u></u> 우유	*0.0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qvet 화학물질명 세파피린 (Cephapirin)

세파피린 및 데스아세틸세파피린(des-acetylcephapirin) (세파피린으로 허용된 잔류물질

나타냄)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소고기	*0.02
- 우유	*0.01

클로란트라닐리프롤 (Chlorantraniliprole) Aqvet 화학물질명

식물 및 동물 유래 물질(우유 이외의 물질):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우유: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의 합

화학물질: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브로모-N-[4-chloro-2-(hydroxymethyl)-6-허용된 잔류물질

[(methylamino)carbonyl]phenyl]-1-(3-chloro-2-H-pyrazole-5-carboxamide,

and 3-bromo- 0.1 N-[4-chloro-2-(hydroxymethyl)-6-(3-chloro-2-pyridinyl)-1H-pyrazole-5-carboxamide,

(클로란트라닐리프롤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커피콩	0.4
건조과일류	2
두류(메주콩(건조) 제외)	0.3
건조 두류	0.07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3
홉(건조)	40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유지방	0.1
우유	0.02
녹두(건조)	0.7
천연 팜유	2
후추, 칠리(건조)	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메주콩(건조)	0.07

Agvet 화학물질명 클로페나피르 (Chlorfenapyr)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페나피르 (Chlorfenapy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지방(포유류)	0.6
고기(포유류)	0.6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우유	0.03

Agvet 화학물질명 클로페나피르 (Chlorfenapyr)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페나피르 (Chlorfenapy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후추, 칠리(건조)	3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2
가금류 고기	0.02
가금류 고기 (지방)	*0.01
메주콩(건조)	0.08
천연 대두유	0.4
향신료(건조 후추, 칠리 제외)	0.05
녹차, 홍차	60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르펜빈포스 (Chlorfenvinphos)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르펜빈포스 E와 Z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T*0.1
소고기 (지방 중에)	T0.2
우유 (지방 중에)	T0.2
사슴고기	0.2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T*0.1
염소고기	T0.2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T*0.1
양고기 (지방 중에)	T0.2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유	0.05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5
	*0.5
	*0.5

Agvet 화학물질명클로르메쿼트 (Chlormequat)허용된 잔류물질클로르메쿼트 카티온 (Chlormequat cati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	0.7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1
고기(포유류)	0.2
우유	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로탈로닐 (Chlorothalonil)

식물 유래 물질: 클로로탈로닐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4-하이드록시-2,5,6-트리클로로이소프탈로니트릴

대사물질 (클로로탈로닐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7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2
 우유	0.05
- 후추, 칠리(건조)	7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스위트콘	Т7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카카오빈(건조)	*0.01
커피콩	T0.5
천연 면실유	0.2
건조과일	T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T0.1
알류	T*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T0.5
- 우유	T0.2
후추, 칠리(건조)	2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T0.1
가금류 고기 (지방 중에)	T0.1
향신료(건조 후추, 칠리 제외)	5
스위트콘	T*0.01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르피리포스메틸 (Chlorpyrifos-methyl)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르피리포스메틸 (Chlorpyrifos-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루핀 (건조)	10
고기(포유류) (in rhe fat)	*0.05
우유 (지방 중에)	*0.05
후추, 칠리(건조)	1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지방 중에)	*0.05
 녹차, 홍차	0.1

Agvet 화학물질명클로르설프론 (Chlorsulfuron)허용된 잔류물질클로르설프론 (Chlorsulf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Chlortetracycline)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신장	0.6
소의 간	0.3
소고기	0.1
알류	0.2
돼지의 신장	0.6
돼지의 간	0.3
돼지고기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6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클로르탈-디메틸 (Chlortetracycline)허용된 잔류물질클로르탈-디메틸 (Chlortetracycl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스위트콘	5

Agvet 화학물질명신메틸린 (Cinmethylin)허용된 잔류물질신메틸린 (Cinmethyl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클라블루산 (Clavulanic acid)허용된 잔류물질클라블루산 (Clavulanic ac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소고기	*0.01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디나포프산 (Clodinafop acid)

허용된 잔류물질 (R)-2-[4-(5-chloro-3-fluoro-2- 피리딘옥시) 페녹시] 프로파노산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1
고기(포유류)	*0.1
-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디나포프-프로파질 (Clodinafop-propargyl)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디나포프-프로파질 (Clodinafop-proparg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로타이얼로닌 (Clofentezine)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로타이얼로닌 (Clofente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T*0.05
	7
고기(포유류)	T*0.05
 우유	T*0.05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클로마존 (Clomazone)허용된 잔류물질클로마존 (Clomaz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3
알류	*0.03
고기(포유류)	*0.03
<u></u> 우유	0.03

Agvet 화학물질명클로마존 (Clomazone)허용된 잔류물질클로마존 (Clomaz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3
가금류 고기	0.03

Agvet 화학물질명클로피랄리드 (Clopyralid)허용된 잔류물질클로피랄리드 (Clopyral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신장 제외)	0.5
 홉(건조)	5
소, 염소, 돼지 및 양의 신장	5
고기(포유류)	0.1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클로퀸토셋산 (Cloquintocet acid)

클로퀸토셋멕실(Cloquintocet mexyl) 확인

클로퀸토셋멕실에 대한 MRL에 포함된 클로퀸토셋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물질

Agvet 화학물질명 클로퀸토셋멕실 (Cloquintocet mexyl)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퀸토세트 멕실과 5-클로로-8-퀴놀린옥시아세트산의 합

<sup>르</sup> (클로퀸토셋멕실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1
고기(포유류)	*0.1
-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클로술론 (Clorsulon)허용된 잔류물질클로술론 (Clorsul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기	*0.1
<u></u> 우유	1.5

Agvet 화학물질명클로산텔 (Closantel)허용된 잔류물질클로산텔 (Closante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5
양고기	2

# **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 클로티아닌딘 (Clothianidin)

허용된 잔류물질 클로티아닌딘 (Clothianidin) (티아메톡삼(Thiamethoxam)도 동시에

참조)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강낭콩 (건조, 흰강낭콩 포함)	T0.1
건포도	10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1
 녹두(건조)	T0.1
 팝콘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메주콩(건조)	T0.02
	0.05
녹차, 홍차	T0.7
고기(포유류)	*0.02  *0.01  T0.1  *0.01  *0.02  *0.02  T0.02  0.05

Agvet 화학물질명 사이안트라닐리프롤 (Cyantraniliprole) 허용된 잔류물질 사이안트라닐리프롤 (Cyantranilipr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유지방	0.07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지방 중에)	*0.01
스위트콘	2

Agvet 화학물질명사이아조파미드 (Cyazofamid)허용된 잔류물질사이아조파미드 (Cyazofam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바질(건조)	Т90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10
고기(포유류)	*0.01
<b>우</b> 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클라닐리프롤 (Cyclaniliprole) 허용된 잔류물질 사이클라닐리프롤 (Cyclanilipr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감귤오일	50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1
포유류 지방(유지방 제외)	0.2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25
 우유	*0.01
유지방	0.2
- 후추, 칠리(건조)	1.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스위트콘	0.2
녹차, 홍차	50
토마토(건조)	0.35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클록시딤 (Cycloxydim)

허용된 잔류물질

3-(3- thianyl) glutaric acid S-dioxide and 3-hydroxy-3-(3- thianyl) glutaric acid S-dioxide로 산화될 수 있는 사이클록시딤, 대사물질 및

분해 산물 (사이클록시딤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두류	30
완두콩(건조)	30
후추, 칠리(건조)	90
메주콩(건조)	80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플루페나미드 (Cyflufenamid) 허용된 잔류물질 사이플루페나미드 (Cyflufenam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플루메토펜 (Cyflumetofen)

식물 유래 상품: 사이플루메토펜 (Cyflumetofen)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사이플루메토펜 (Cyflumetofen)과

2-트리플루오로메틸벤조산의 합, (사이플루메토펜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3
고기(포유류)	*0.03
 우유	*0.003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플루트린 (Cyfluthrin)

허용된 잔류물질

사이플루트린 (Cyfluthrin),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20
포유류 지방(유지방 제외)	0.5
고기(포유류)	0.02
우유	0.1
후추, 칠리(건조)	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시할로포프-뷰틸 (Cyhalofop-butyl)

허용된 잔류물질

시할로포프-뷰틸 (Cyhalofop-butyl), 시할로포프 및 대사물질의 합

	1 277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할로트린 (Cyhalothrin)

허용된 잔류물질

사이할로트린 (Cyhalothrin),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커피콩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 홉(건조)	10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5
우유 (지방 중에)	0.5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할로트린 (Cyhalothrin)

허용된 잔류물질 사이할로트린 (Cyhalothrin),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3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메주콩(건조)	*0.02
스위트콘	0.3
녹차, 홍차	1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헥사틴 (Cyhexatin)

아조사이클로틴(azocyclotin) 및 사이헥사틴 (Cyhexatin)의 합,

(사이헥사틴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후추, 칠리(건조)	5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퍼메트린 (Cypermethrin)

허용된 잔류물질 사이퍼메트린 (Cypermethrin), 이성질체의 합

<u> 식품명</u>	최대잔류허용량
 팥(건조)	T0.05
모든 식품	*0.01
잠두콩(건조)	0.05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소고기 (지방 중에)	0.5
병아리콩(건조)	0.2
강낭콩 (건조, 흰강낭콩 포함)	0.05
천연 면실유	*0.02
사슴고기 (지방 중에)	T0.5
알류	0.05
경협종완두(Field pea)(건조)	0.05
인삼(건조)	0.15
인삼 추출물	*0.06
열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염소고기	0.5
말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말고기	*0.05
렌즈콩(건조)	T0.05
식용 리놀라 오일	0.1
루핀 (건조)	*0.01
우유 (지방 중에)	1
식용 머스타드 씨앗 오일	T0.2
후추, 칠리(건조)	10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Agvet 화학물질명사이퍼메트린 (Cypermethrin)허용된 잔류물질사이퍼메트린 (Cypermethrin),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돼지고기 (지방 중에)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지방 중에)	*0.05
식용유채유	*0.2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양고기 (지방 중애)	0.5
메주콩(건조)	0.05
천연 대두유	0.1
천연 해바라기씨유	0.1
 노차 호차	0.5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프로코나졸 (Cyproconazole)

허용된 잔류물질 사이프로코나졸 (Cyproconazole),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3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3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사이프로다이닐 (Cyprodinil) 허용된 잔류물질 사이프로다이닐 (Cyprodin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누에콩(건조)	T0.2
병아리콩(건조)	T0.2
건포도(건포도)	5
건조된 허브	T200
건조된 핵과과일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T*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9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T*0.01
가금류 고기	T*0.01
메주콩(건조)	0.3

Agvet 화학물질명시로마진 (Cyromazine)허용된 잔류물질시로마진 (Cyroma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소고기	0.05
알류	0.2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2
염소고기	0.2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10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돼지고기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05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2
양고기	0.2

Agvet 화학물질명2,4-D허용된 잔류물질2,4-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7
알류	*0.05
홉(건조)	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7
-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2,4-DB허용된 잔류물질2,4-DB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5
고기(포유류)	0.2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데코퀴네이트 (Decoquinate) 허용된 잔류물질 데코퀴네이트 (Decoquin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닭의 신장	0.8
 닭의 간	1
 닭고기	0.5
닭지방/닭껍질	1

Agvet 화학물질명텔타메트린 (Deltamethrin)허용된 잔류물질텔타메트린 (Deltamethr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기 (지방 중에)	0.5
알류	*0.01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염소고기 (지방 중에)	0.2
 우유	0.05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돼지고기 (지방 중에)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1
	0.2
스위트콘(알맹이)	0.1
 녹차, 홍차	5

Agvet 화학물질명더콴텔 (Derquantel)허용된 잔류물질더콴텔 (Derquante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양지방	0.0002
양의 신장	0.0002
양의 간	0.0002
양고기	0.0002

Agvet 화학물질명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및 데사메타손 트리메틸아세테이트

(Dexamethasone trimethylacetate)

허용된 잔류물질 덱사메타손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기	0.1
<u> </u>	*0.05

Agvet 화학물질명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및 데사메타손 트리메틸아세테이트

(Dexamethasone trimethylacetate)

허용된 잔류물질 덱사메타손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말 식용 부속고기(offal)	0.1
 말고기	0.1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1
돼지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다이아펜튜론 (Diafenthiuron)

다이아펜튜론의 합; N-[2,6- bis(1-methylethyl)-

허용된 잔류물질 4-phenoxyphenyl]-N'-(1,1- dimethylethyl)urea; 및

N-[2,6-bis(1-methylethyl)-4- phenoxyphenyl]-

N'-(1,1-dimethylethyl)carbodiimide (다이아펜튜론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메주콩(건조)	T0.3

Agvet 화학물질명다이아지논 (Diazinon)허용된 잔류물질다이아지논 (Diazin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7
알류	*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7
- 우유	0.5
올리브오일, 원유	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천연 식물성유지(올리브오일, 버진올리브오일 제외)	0.1

Agvet 화학물질명다이캄바 (Dicamba)허용된 잔류물질다이캄바 (Dicamba)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우유	0.1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다이캄바 (Dicamba)허용된 잔류물질다이캄바 (Dicamba)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디클로베닐 (Dichlobenil)허용된 잔류물질디클로베닐 (Dichloben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0.01

Agvet 화학물질명 디클로르프로프-P (Dichlorprop-P)

허용된 잔류물질 디클로르프로프산으로 가수분해된 디클로르프로프산, 그 에스테르 및 접합체의 합 (디클로르프로프산으로 나타냄)

	· · · · · · · · · · · · · · · · ·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감귤류 [금귤 제외]	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허용된 잔류물질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커피콩	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디클로포프-메틸 (Diclofop-methyl)허용된 잔류물질디클로포프-메틸 (Diclofop-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루핀(건조)	0.1
고기(포유류)	*0.05

Agvet 화학물질명디클로포프-메틸 (Diclofop-methyl)허용된 잔류물질디클로포프-메틸 (Diclofop-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디코폴(Dicofol)

허용된 잔류물질 디코폴과 2,2,2-트리클로로-1-(4-클로로페닐)-1-(2-클로로페닐)에탄올의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홉(건조)	5
스위트콘	5
 녹차, 홍차	5

Agvet 화학물질명 디시클라닐 (Dicyclanil)

허용된 잔류물질 디시클라닐과 그 트리아미노피리딜 대사물질의 합 (디시클라닐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양지방	0.3
양의 신장	0.3
양의 간	0.3
양고기	0.3

Agvet 화학물질명 디엘드린 (Dieldrin)

알드린(Aldrin) 및 디엘드린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디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허용된 잔류물질 디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아니스 머틀 잎(건조)	T10
커피콩	T*0.01
건포도	6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레몬 머틀 잎(건조)	T10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1
	5
가금류 고기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 다이플루벤주론 (Diflubenzuron) 허용된 잔류물질 다이플루벤주론 (Diflubenz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우유	0.05
	20
양의 신장	0.05
양의 간	0.05
양고기	0.05
	0.05
녹차, 홍차	0.1

Agvet 화학물질명 디플루페니칸 (Diflufenican) 허용된 잔류물질 디플루페니칸 (Diflufenica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 디메테나미드-P (Dimethenamid-P) 허용된 잔류물질 디메테나미드-P와 그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0.05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다이메토에이트 (Dimethoate)

허용된 잔류물질 다이메토에이트와 오메토에이트(omethoate)의 합 (다이메토에이트로 나타냄) (오메토에이트도 참조)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다이메토에이트 (Dimethoate)

허용된 잔류물질

다이메토에이트와 오메토에이트(omethoate)의 합 (다이메토에이트로

나타냄) (오메토에이트도 참조)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u>⊣</u>	의대한 표시 중 8
정제 올리브오일	T0.3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디메토모르프 (Dimethomorph)

허용된 잔류물질

디메토모르프의 E 및 Z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홉(건조)	80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5
향신료(건조 후추, 칠리 제외)	0.05
스위트콘	1.5

Agvet 화학물질명

딤프로피리다즈 (Dimpropyridaz)

식물 유래 물질: Dimpropyridaz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딤프로피리다즈와

1-(3-hydroxy-3-methylbutan-2-yl)-5-methyl-N-(pyridazin-4-yl)-1H-5pyrazol e-4-carboxamide의 합 (밀기울, 가공된 1개의 딤프로피리다즈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 우유	*0.02
가금류 고기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Agvet 화학물질명

디니톨마이드 (Dinitolmide)

허용된 잔류물질

디니톨마이드 및 그 대사체의 합계, 3-amino-5-nitro-o-toluamide,

디니톨마이드 상당량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6
가금류 지방	2
가금류 고기	3

Agvet 화학물질명 디노캡 (Dinocap)

허용된 잔류물질 디노캡 이성질체와 디노캡 페놀(dinocap phenols)의 합 (디노캡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후추, 칠리(건조)	2

Agvet 화학물질명 디노테퓨란 (Dinotefuran)

식물 유래 물질: 디노테퓨란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디노테퓨란과

1-메틸-3-(테트라히드로-3-푸릴메틸)우레아(UF)의 합 (디노테퓨란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녹두(건조)	0.3
후추, 칠리(건조)	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디페닐아민 (Diphenylamine) 허용된 잔류물질 디페닐아민 (Diphenylam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간 제외)	*0.01
	0.05
소, 염소, 돼지 및 양의 간	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다이쿼드 (Diquat)

허용된 잔류물질 다이쿼드 카티온 (Diquat cati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홉(건조)	T0.2
고기(포유류)	*0.05
-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Agvet 화학물질명 다이쿼드 (Diquat)

허용된 잔류물질 다이쿼드 카티온 (Diquat cation)

· · · · · · · · · · · · · · · · ·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고기	*0.05
도정미	1
스위트콘	*0.05
녹차, 홍차	T0.5

Agvet 화학물질명디티아논 (Dithianon)허용된 잔류물질디티아논 (Dithian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홉(건조)	100

Agvet 화학물질명 디치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청용된 잔류물질 총 디치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는 산 소화 중에 방출된 이황화탄소로 측정되며, 식품 1kg당 이황화탄소 밀리그램으로 나타냄

	12 13 12 2 1 2 1 1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2
알류	*0.5
무화과	3
고기(포유류)	*0.5
우유	*0.2
후추, 칠리 (건조)	20
가금류 고기	*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5
 스위트콘	3

Agvet 화학물질명 디우론 (Diuron)

허용된 잔류물질 디우론 (Diuron)과 3,4-디클로로아닐린(3,4-dichloroaniline)의 합 (디우론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천연 면실유	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3
 고기(포유류)	0.1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도라멕틴 (Doramectin)허용된 잔류물질도라멕틴 (Doramect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우지	0.1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도라멕틴 (Doramectin)허용된 잔류물질도라멕틴 (Doramect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고기	0.01
우유	0.05
돼지 신장	0.03
- 돼지 간	0.05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양지방	0.1
양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2,2-DPA

허용된 잔류물질 2,2-디클로로프로피온산 (2,2-dichloropropionic ac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고기(포유류)	0.2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 EDC 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에마멕틴 (Emamectin)

에마멕틴 B1a (Emamectin B1a) 및 에마멕틴 B1b ((Emamectin b1a) ) 및 에마메틴 B1b ((Emamectin b1a) ) 및 에메덴 B1

B1b)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01
유지방	0.01
	0.2
 녹차, 홍차	*0.02

Agvet 화학물질명 엔도설판 (Endosulfan)

허용된 잔류물질 A- 및 B- 엔도설판, 엔도설판황산염(endosulfan sulphate)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카카오빈(건조)	0.2
 녹차, 홍차	10

Agvet 화학물질명엔도탈 (Endothal)허용된 잔류물질엔도탈 (Endotha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Agvet 화학물질명엔도탈 (Endothal)허용된 잔류물질엔도탈 (Endotha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T*0.05
 알류	T*0.05
 홉(건조)	0.1
고기(포유류)	T*0.05
우유	T*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T*0.05
가금류 고기	T*0,05

Agvet 화학물질명 에닐코나졸 (Enilconazole)

이미잘릴(Imazalil) 참조

Agvet 화학물질명에폭시코나졸 (Epoxi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에폭시코나졸 (Epoxiconazole)

10 - 11 - 1 - 1 - 1 - 1 - 1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에프리노멕틴 (Eprinomectin)허용된 잔류물질에프리노멕틴 B1a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2
우지	0.5
소고기	0.1
- 우유	0.03
식용 사슴 부속고기(offal)	2
사슴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EPTC허용된 잔류물질EPTC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4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1
<u></u>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Agvet 화학물질명EPTC허용된 잔류물질EPTC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에리트로마이신 (Erythromycin)

허용된 잔류물질 에리트로마이신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3
고기(포유류)	*0.3
 우유	*0.04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3
가금류 고기	*0.3

Agvet 화학물질명 에스펜발러레이트 (Esfenvalerate)

펜발레레이트(Fenvalerate) 참조

Agvet 화학물질명에테폰 (Ethephon)허용된 잔류물질에테폰 (Etheph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천연 면실유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2
고기(포유류)	0.1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2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에티온 (Ethion)허용된 잔류물질에티온 (Ethi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2.5
소고기	2.5
천연 면실유	0.05
 우유	0.5

에티프롤 (Ethiprole)

식물 유래 물질: 에티프롤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에티프롤과 5-amino-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ethylsulfonylpyrazole-3- carbonitrile

(ethiprole-sulfone)의 합 (기본물질 상당량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커피콩	0.07
볶은 커피콩	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5
포유류 지방	0.15
고기(포유류)	0.15
유지방	0.5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지방	0.05
가금류 고기	0.05
현미	1.5
도정미	0.4

Agvet 화학물질명

에토퓨메세이트 (Ethofumesate)

허용된 잔류물질 에토퓨메세이트 (Ethofumes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5
<u> </u>	0.2

Agvet 화학물질명

에토파베이트 (Ethopabate)

허용된 잔류물질 에토파베이트 (Ethopab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15
가금류 고기	5

Agvet 화학물질명

에토프로포스 (Ethoprophos)

허용된 잔류물질 에토프로포스 (Ethoproph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0.02
 후추, 칠리(건조)	0.2

Agvet 화학물질명

에톡시퀸 (Ethoxyquin)

허용된 잔류물질 에톡시퀸 (Ethoxyquin)

니프런	+ 데지크시아카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Agvet 화학물질명에톡시퀸 (Ethoxyquin)허용된 잔류물질에톡시퀸 (Ethoxyqu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1
 알류	0.1
고기(포유류)	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5

Agvet 화학물질명 에톡시설퓨론 (Ethoxysulfuron)

식물 유래 물질: 에톡시설퓨론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2-아미노-4, 6-디메톡시피리미딘(에톡시설퓨론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포름산에틸 (Ethyl formate)허용된 잔류물질포름산에틸 (Ethyl form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조과일	1

Agvet 화학물질명 에토펜프록스 (Etofenprox) 허용된 잔류물질 에토펜프록스 (Etofenprox)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에톡사졸 (Etoxazole)허용된 잔류물질에톡사졸 (Etox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포도	1.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Agvet 화학물질명에톡사졸 (Etoxazole)허용된 잔류물질에톡사졸 (Etox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홉(건조)	7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우유	*0.01
 팝콘	T*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2
스위트콘(알맹이)	T*0.01
녹차, 홍차	15

Agvet 화학물질명파목사돈 (Famoxadone)허용된 잔류물질파목사돈 (Famoxad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5
홉(건조)	80

Agvet 화학물질명페나미돈 (Fenamidone)허용된 잔류물질페나미돈 (Fenamid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후추, 칠리(건조)	30

Agvet 화학물질명페나자퀸 (Fenazaquin)허용된 잔류물질페나자퀸 (Fenazaqu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0.8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포도 (말린 거 제외)	0.7
홉(건조)	30
고기(포유류)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우유	*0.02
우유 (지방 중에)	*0.02
우유 (지방 중에)	*0.02

Agvet 화학물질명펜벤다졸 (Fenbendazole)허용된 잔류물질펜벤다졸 (Fenbendazole)

최대잔류허용량
*0.1
*0.1
0.5
0.5
0.1

Agvet 화학물질명펜벤다졸 (Fenbendazole)허용된 잔류물질펜벤다졸 (Fenbend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5
양고기	0.5

Agvet 화학물질명펜뷰코나졸 (Fenbu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펜뷰코나졸 (Fenbu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 펜뷰타틴옥사이드 (Fenbutatin oxide) 허용된 잔류물질 Bis[tris(2-methyl-2- phenylpropyl)tin]-ox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	T10
홉(건조)	20

Agvet 화학물질명펜헥사미드 (Fenhexamid)허용된 잔류물질펜헥사미드 (Fenhexam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건포도	20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허용된 잔류물질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카카오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T*0.05
우유 (지방 중에)	T*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Agvet 화학물질명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허용된 잔류물질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고기	*0.05
도정미	0.1
 메주콩(건조)	0.3
녹차, 홍차	0.5

Agvet 화학물질명 페녹사프로프-P-에틸 (Fenoxaprop-ethyl)

페녹사프로프-에틸(모든 이성질체)과 2-(4-(6-chloro-2-

허용된 잔류물질 benzoxazolyloxy)phenoxy)-propanoate 및 6-chloro-

2,3-dihydrobenzoxazol-2-one의 합 (페녹사프로프-에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병아리콩(건조)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2
-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01
라이밀	*0.01

Agvet 화학물질명페녹시카브 (Fenoxycarb)허용된 잔류물질페녹시카브 (Fenoxycarb)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버진올리브오일	7

Agvet 화학물질명 펜프로파트린 (Fenpropathrin) 허용된 잔류물질 펜프로파트린 (Fenpropathrin)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 후추, 칠리(건조)	10
녹차, 홍차	2

Agvet 화학물질명펜피라자민 (Fenpyrazamine)허용된 잔류물질펜피라자민 (Fenpyrazamine)

최대잔류허용량
0.02
10
*0.01
*0.01
*0.01
*0.005
*0.01

Agvet 화학물질명펜피라자민 (Fenpyrazamine)허용된 잔류물질펜피라자민 (Fenpyrazam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펜피록시메이트 (Fenpyroximate)허용된 잔류물질펜피록시메이트 (Fenpyroxim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포유류 지방	0.1
 홉(건조)	10
고기(포유류)	0.1
우유	*0.01
녹차, 홍차	0.1

 Agvet 화학물질명
 펜발레레이트 (Fenvalerate)

 허용된 잔류물질
 펜발레레이트,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포도	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1
 우유	0.2
버진올리브오일	T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5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 피프로닐 (Fipronil)

피프로닐, 설페닐 대사물질

(5-amino-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trifluoromethy

l) sulphenyl]-1H-pyrazole-3-carbonitrile), 설페닐 대사물질

허용된 잔류물질 (5-amino-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trifluoromethyl)

l)sulphonyl]-1H-pyrazole-3-carbonitrile), 및 트리플루오로메틸

대사물질(5-amino-4-trifluoromethyl-1-[2,6-dichloro-4-(trifluoromethyl

)phenyl]-1H-pyrazole-3-carbonitrile)의 합

/1 / 1 /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천연 면실유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1

Agvet 화학물질명 피프로닐 (Fipronil)

피프로닐, 설페닐 대사물질

(5-amino-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trifluoromethy

l) sulphenyl]-1H-pyrazole-3-carbonitrile), 설페닐 대사물질

허용된 잔류물질 (5-amino-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trifluoromethy

l)sulphonyl]-1H-pyrazole-3-carbonitrile), 및 트리플루오로메틸

대사물질(5-amino-4-trifluoromethyl-1-[2,6-dichloro-4-(trifluoromethyl

)phenyl]-1H-pyrazole-3-carbonitrile)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T*0.01
가금류 고기	0.02
 메주콩(건조)	T*0.01

Agvet 화학물질명플람프로프-메틸 (Flamprop-methyl)허용된 잔류물질플람프로프-메틸 (Flamprop-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병아리콩(건조)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플람프로프-M-메틸 (Flamprop-M-methyl)

플람프로프-메틸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플라보포스폴리폴 (Flavophospholipol) 허용된 잔류물질 플라보포스폴리폴 (Flavophospholipo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지	*0.01
소의 신장	*0.01
소의 간	*0.01
소고기	T*0.01
 우유	T*0.01
 알류	*0.02



Agvet 화학물질명 플로니카미드 (Flonicamid)

플로니카미드 [N -(cyanomethyl)-4- (trifluoromethyl)-3

허용된 잔류물질

pyridinecarboxamide] 및 0.02 대사물질 TFNA[4-trifluoromethylnicotinic

acid], TFNA-AM [4-trifluoromethylnicotinamide]

TFNG[N-(4-trifluoromethylnicotinoyl)qlyc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홉(건조)	20
-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스위트콘	T0.5

Agvet 화학물질명플로라술람 (Florasulam)허용된 잔류물질플로라술람 (Florasul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플로르페니콜 및 그 대사물질 플로르페니콜 알코올(florfenicol

alcohol), 플로르페니콜 옥삼산(florfenicol oxamic acid),

허용된 잔류물질 모노클로르플로르페니콜(monochloroflorfenicol) 및 플로르페니콜

아민(florfenicol amine)의 합 (플로르페니콜 아민으로 나타냄)

7 E(110110111001 01111110)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신장	0.5
소의 간	3
소고기	0.3
돈지/돼지껍데기	1
돼지의 신장	1
돼지의 간	3
	0.5

Agvet 화학물질명 플로릴피콕사미드 (Florylpicoxamid)

식물 유래 물질: 플로릴피콕사미드 및 (2S)-1,1-bis(4-fluorophenyl)propan-2-yl

N-{[3-(hydroxy)-4-methoxypyridin-2-yl]carbonyl}-L-alaninate

허용된 잔류물질 (X12485649)의 합 (플로릴피콕사미드로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2S)-1,1-bis(4-fluorophenyl)propan-2-yl N-{[3-(hydroxy)-4-methoxypyridin-2-yl]carbonyl}-L- alaninate (X12485649)

(플로릴피콕사미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20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7
우유	*0.01
가금류 고기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Agvet 화학물질명 플로르피록시펜-벤질 (Florpyrauxifen-benzyl)

플로르피라우시펜-벤질 및 XDE-848 산 대사물질질

허용된 잔류물질 [4-아미노-3-클로로-6-(4-클로로-2-플루오로-3-메톡시페닐)-5-플루오로

피리딘-2-카르복실산]의 합 (플로르피록시펜-벤질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T*0.02
알류	T*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T*0.02
- 우유	T*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T*0.02
가금류 고기	T*0.02

Agvet 화학물질명 플루옥사피프롤린 (Fluoxapiprolin)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옥사피프롤린 (Fluoxapiprol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플루아자인돌리진 (Fluazaindolizine)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아자인돌리진 (Fluazaindoli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스위트콘	0.2

Agvet 화학물질명 플루아지포프-P-뷰틸 (Fluazifop-p-butyl)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아지포프-부틸, 플루아지포프(fluazifop) 및 그 접합체의 합

(플루아지포프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홉(건조)	0.05
루핀(건조	0.05
고기(포유류)	*0.0.5
<u></u>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녹차, 홍차	T50

Agvet 화학물질명플루아지남 (Fluazinam)허용된 잔류물질플루아지남 (Fluazin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Agvet 화학물질명플루아주론 (Fluazuron)허용된 잔류물질플루아주론 (Fluaz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5
소고기	7

Agvet 화학물질명 플루벤다졸 (Flubendazole)

알류 이외의 식품: 플루벤다졸과 2-아미노-1H-벤즈이미다졸-5-일)

허용된 잔류물질 (4-플루오로페닐 메탄온의 합, 플루벤다졸로 나타냄)

알류: 플루벤다졸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닭지방/닭껍질	0.03
닭의 간	0.2
닭의 신장	0.1
- 닭근육	*0.02
알류	0.6
돈지/돼지껍데기	*0.02
돼지의 간	0.4
돼지의 신장	0.3
돼지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플루벤디아미드 (Flubendiamide)

식물 유래 물질: 플루벤디아미드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플루벤디아미드와 및 3-iodo-N-(2-methyl-4-

[1,2,2,2-tetrafluoro-1-(trifluoromethyl)ethyl]phenyl) phthalimide의 합

(플루벤디아미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3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유지방	0.05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7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향신료(건조 후추, 칠리 제외)	0.02
녹차, 홍차	0.02

Agvet 화학물질명 플루디옥소닐 (Fludioxonil)

동물 유래 물질: 플루디옥소닐과 산화성 대사물질의 합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디옥소닐로 나타냄)

식물 유래 물질: 플루디옥소닐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병아리콩(건조)	0.3
건조과일 (건포도)	5
건조 허브	Т70



Agvet 화학물질명 플루디옥소닐 (Fludioxonil)

동물 유래 물질: 플루디옥소닐과 산화성 대사물질의 합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디옥소닐로 나타냄)

식물 유래 물질: 플루디옥소닐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2
포유류 지방	0.02
렌즈콩(건조)	0.3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후추, 칠리(건조)	4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메주콩(건조)	0.2

Agvet 화학물질명 플루엔설폰 (Fluensulfone)

식물 유래 물질: 플루엔설폰 및 3,4,4-trifluorobut-3-ene-1-sulfonic

허용된 잔류물질 acid (M-3627)의 합 (플루엔설폰으로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플루엔설폰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모든 기타 식품	1
감귤유(식용)	1.5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7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쌀 곡류	0.05
스위트콘	1

 Agvet 화학물질명
 플루메트린 (Flumethrin)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메트린,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소고기	0.2
	T*0.005
말 식용 부속고기(offal)	0.1

 Agvet 화학물질명
 플루메트린 (Flumethrin)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메트린,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말고기	0.1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플루멧술람 (Flumetsulam)허용된 잔류물질플루멧술람 (Flumetsul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3
알류	*0.1
고기(포유류)	*0.1
-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플루미클로랙트 펜틸 (Flumiclorac pentyl)허용된 잔류물질플루미클로랙트 펜틸 (Flumiclorac pent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플루미옥사진 (Flumioxazin)허용된 잔류물질플루미옥사진 (Flumioxazin)

, , , , , , , , , , , , , , , , , ,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T*0.05
고기(포유류)	*0.01
-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플루니신 (Flunixin)허용된 잔류물질플루니신 (Flunix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신장	0.02
소의 간	0.02

Agvet 화학물질명플루니신 (Flunixin)허용된 잔류물질플루니신 (Flunix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플루오피콜라이드 (Fluopicolide)허용된 잔류물질플루오피콜라이드 (Fluopicol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모든 기타 식품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1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7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플루오피람 (Fluopyram)

식물 유래 물질: 플루오피람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플루오피람 및 2-(trifluoromethyl)-benzamide의 합

(플루오피람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2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7
알류	*0.02
홉(건조)	100
렌즈콩(건조)	0.4
고기(포유류)	0.1
우유	0.1
버진올리브오일	5
완두콩(건조)	0.7
후추, 칠리(건조)	3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두류(경협종완두, 루핀(건조). 메주콩(건조) 제외)	0.09
현미	1.5
도정미	0.5
메주콩(건조)	0.04

Agvet 화학물질명 플루프로파네이트 (Flupropanate)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프로파네이트 (Flupropan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1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 플루피라디퓨론 (Flupyradifurone)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피라디퓨론 (Flupyradifur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2
카카오빈(건조)	*0.01
커피콩	0.9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01
홉(건조)	10
고기(포유류)	0.1
- 우유	0.07
후추, 칠리(건조)	9
가금류 고기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메주콩(건조)	1.5

Agvet 화학물질명플루퀸코나졸 (Fluquin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플루퀸코나졸 (Fluquin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5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플루랄라너 (Fluralaner)허용된 잔류물질플루랄라너 (Fluralane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지	T0.7
소의 신장	T0.25
소의 간	T0.6
 소고기	T0.07
달걀	1.3

Agvet 화학물질명플루랄라너 (Fluralaner)허용된 잔류물질플루랄라너 (Fluralane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닭지방/닭껍질	0.6
닭의 신장	0.4
닭의 간	0.6
- 닭근육	0.06
양고기	T*0.005
양의 간	T*0.05
양의 신장	T*0025
양지방	T*0.06

Agvet 화학물질명 플루옥시피르 (Fluroxypyr)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옥시피르 (Fluroxypy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신장 제외)	0.1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1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플루톨라닐 (Flutolanil)

식물 유래 물질: 플루톨라닐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플루톨라닐 및 2-트리플루오로메틸벤조산(2-

trifluoromethyl-benzoic acid)으로 가수분해된 대사물질

(플루톨라닐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플루트리아폴 (Flutriafol)허용된 잔류물질플루트리아폴 (Flutriafo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05

Agvet 화학물질명플루트리아폴 (Flutriafol)허용된 잔류물질플루트리아폴 (Flutriafo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20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 후추, 칠리(건조)	1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플루발린에이트 (Fluvalinate)허용된 잔류물질플루발린에이트 (Fluvalin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Agvet 화학물질명플룩사피록사드 (Fluxapyroxad)허용된 잔류물질플룩사피록사드 (Fluxapyroxa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모든 기타 식품	0.1
감귤유(식용)	90
커피콩	0.2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5.7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3
알류	0.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유지방	0.1
우유	0.005
	6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쌀(비가공 쌀겨, 쌀껍질 제외)	5
메주콩(건조)	0.3

Agvet 화학물질명폴펫 (Folpet)허용된 잔류물질폴펫 (Folpet)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홉(건조)	120

Agvet 화학물질명포메사펜 (Fomesafen)허용된 잔류물질포메사펜 (Fomesa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Agvet 화학물질명포메사펜 (Fomesafen)허용된 잔류물질포메사펜 (Fomesa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포세틸 (Fosetyl)허용된 잔류물질포세틸 (Foset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스위트콘	T0.02

Agvet 화학물질명포세틸알루미늄 (Fosetyl-aluminium)허용된 잔류물질포세틸알루미늄 (Fosetyl-aluminiu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커피콩	30
알류	*0.05
 홉(건조)	45
포유류 지방	0.3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지방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퓨라티오카브 (Furathiocarb)

카보퓨란(Carbofuran) 참조

퓨라티오카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물질은 카보퓨란에 대한 MRL를 따름

글루포시네이트 (Glufosinate) 및 Agvet 화학물질명

글루포시네이트 알루미늄 (Glufosinate-ammonium)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N-아세틸 글루포시네이트 및

허용된 잔류물질 3-[hydroxy(methyl)- phosphinoyl] propionic acid의 합

(글루포시네이트(유리산)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커피콩	T*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5
알류	*0.05
홉(건조)	T1
고기(포유류)	0.1
-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Agvet 화학물질명

글루포시네이트 (Glufosinate) 및

글루포시네이트 알루미늄 (Glufosinate-ammonium)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N-아세틸 글루포시네이트 및

허용된 잔류물질

3-[hydroxy(methyl)- phosphinoyl] propionic acid의 합

(글루포시네이트(유리산)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고기	*0.05
 메주콩(건조)	2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허용된 잔류물질

글리포세이트, N-아세틸글리포세이트 및 아미노메틸포스폰산(AMPA)

대사물질의 합 (글리포세이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2
커피콩	T0.2
천연 면실유	*0.1
건두류(대두류(건조) 제외)	15
건조 완두콩	10
건조 두류	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2
알류	*0.05
홉(건조)	7
고기(포유류)	*0.1
우유	*0.1
팝콘	T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1
가금류 고기	*0.1
메주콩(건조)	20
스위트콘	*0.1
녹차, 홍차	T20

Agvet 화학물질명 할락시펜메틸 (Halauxifen-methyl)

식물 유래 물질: 할락시펜메틸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4- Amino-3-chloro-6-(4-chloro-2-fluoro-3-

hydroxyphenyl)-pyridine-2-carboxylic acid (할락시펜메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 할락시펜메틸 (Halauxifen-methyl)

식물 유래 물질: 할락시펜메틸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4- Amino-3-chloro-6-(4-chloro-2-fluoro-3-

hydroxyphenyl)-pyridine-2-carboxylic acid (할락시펜메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할로푸지논 (Halofuginone)허용된 잔류물질할로푸지논 (Halofugin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지방	0.025
소의 신장	0.03
소의 간	0.03
 소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할로설퓨론메틸 (Halosulfuron-methyl)허용된 잔류물질할로설퓨론메틸 (Halosulfuron-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메주콩(건조)	T*0.01

Agvet 화학물질명 할록시포프 (Haloxyfop)

하용된 잔류물질 할록시포프 (Haloxyfop), 그 에스테르 및 접합체의 합 (할록시포프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천연 면실유	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헥사지논 (Hexazinone)허용된 잔류물질헥사지논 (Hexazin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Agvet 화학물질명헥사지논 (Hexazinone)허용된 잔류물질헥사지논 (Hexazin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0.05
고기(포유류)	*0.1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헥시티아족스 (Hexythiazox) 허용된 잔류물질 헥시티아족스 (Hexythiazox)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홉(건조)	20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녹차, 홍차	4

Agvet 화학물질명 인화수소 (Hydrogen phosphide) 포스핀(Phosphine) 참조

Agvet 화학물질명이미잘릴 (Imazalil)허용된 잔류물질이미잘릴 (Imazal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닭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닭고기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3
	*0.01
포유류 지방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지방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이마자목스 (Imazamox)허용된 잔류물질이마자목스 (Imazamox)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두류(대두류(건조) 제외)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Agvet 화학물질명이마자목스 (Imazamox)허용된 잔류물질이마자목스 (Imazamox)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0.01
렌즈콩(건조)	0.2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녹두(건조)	T*0.05
완두콩(건조)	0.05
가금류 고기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메주콩(건조)	0.3

Agvet 화학물질명 이마

이마자픽 (Imazapic)

허용된 잔류물질

이마자픽 및 그 하이드록시메틸 유도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메주콩(건조)	0.5

Agvet 화학물질명이마자피르 (Imazapyr)허용된 잔류물질이마자피르 (Imazapy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누에콩(건조)	0.07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렌즈콩(건조)	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메주콩(건조)	5

Agvet 화학물질명 이마제타피르 (Imazethapyr) 허용된 잔류물질 이마제타피르 (Imazethapy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1

Agvet 화학물질명 이마제타피르 (Imazethapyr) 허용된 잔류물질 이마제타피르 (Imazethapy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고기(포유류)	*0.1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이미다클로프리드 (Imidacloprid)

이미다클로프리드 및

허용된 잔류물질 6-클로로피리디닐메틸렌(chloropyridinylmethylene) 부분을 함유한

대사물질의 합 (이미다클로프리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누에콩(건조)	*0.05
강낭콩 (건조, 흰강낭콩 포함)	T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2
경협종완두(Field pea)(건조)	*0.05
홉(건조)	T10
렌즈콩(건조)	0.2
루핀 (건조)	0.2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5
후추, 칠리 (건조)	10
 팝콘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향신료(양강근(galangal), 진저루트(ginger root), 건조 후추, 칠리 제외)	0.05
녹차, 홍차	50

Agvet 화학물질명 이미도캅 (Imidocarb) (dipropionate 소금)

허용된 잔류물질 이미도캅 (Imidocarb)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5
소고기	1
 우유	0.2

Agvet 화학물질명 인독사카브 (Indoxacarb)

허용된 잔류물질 인독사카브 및 그 R-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 인독사카브 (Indoxacarb)

허용된 잔류물질 인독사카브 및 그 R-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신장 제외)	0.02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3
유지방	2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녹차, 홍차	5

Agvet 화학물질명 무기 브롬화물 (Inorganic bromide)

허용된 잔류물질 브롬화 이온 (Bromide i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15
대추(건조)	100
건조과일 (해당 화학물질에 별도로 최대허용량이	20
설정된 것 제외	30
건포도	100
건조 허브	400
건조 복숭아	50
건조 무화과	250
향신료	400
스위트콘	20

Agvet 화학물질명 아이오도설퓨론메틸 (lodosulfuron methyl) 허용된 잔류물질 아이오도설퓨론메틸 (lodosulfuron 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이프코나졸 (Ip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이프코나졸 (Ip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이프코나졸 (Ip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이프코나졸 (Ip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이프로다이온 (Iprodione)허용된 잔류물질이프로다이온 (Iprodi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루핀 (건조)	*0.1
고기(포유류)	*0.1
- 우유	*0.1
 땅콩 기름, 원유	0.05
 메주콩(건조)	0.05

Agvet 화학물질명 아이소사이클로세람 (Isocycloseram) 허용된 잔류물질 아이소사이클로세람 (Isocycloser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가금류 고기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Agvet 화학물질명 아이소페타미드 (Isofetamid)

식물 유래 상품: 아이소페타미드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아이소페타미드 및 2-[3-methyl-4-[2-methyl-2-(3-

methylthiophene-2- carboxamido) propanoyl] phenoxy]propanoic acid (PPA)의 합 (아이소페타미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건두류(대두류(건조) 제외)	0.09
건조 완두콩	0.09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우유	*0.02
유지방	*0.02
가금류 알류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 아이소페타미드 (Isofetamid)

식물 유래 상품: 아이소페타미드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아이소페타미드 및 2-[3-methyl-4-[2-methyl-2-(3-

methylthiophene-2- carboxamido) propanoyl] phenoxy]propanoic

acid (PPA)의 합 (아이소페타미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자두(건조)	3

Agvet 화학물질명이소피라잠 (Isopyrazam)허용된 잔류물질이소피라잠 (Isopyraz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05
 알류	*0.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05
- 우유	*0.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05
가금류 고기	*0.005

Agvet 화학물질명 아이소티아닐 (Isotianil)

식물 유래 상품: 아이소티아닐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상품: 아이소티아닐 및 3,4-dichloroisothiazole-5-

carboxylic acid의 합 (아이소티아닐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이속사벤 (Isoxaben)허용된 잔류물질이속사벤 (Isoxab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아이속사플루톨 (Isoxaflutole)허용된 잔류물질아이속사플루톨 (Isoxaflut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병아리콩(건조)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메주콩(건조)	0.05

Agvet 화학물질명

이버멕틴 (Ivermectin)

허용된 잔류물질

 $H_2B_{1a}$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신장	0.06
소의 간	0.5
소고기	0.2
우유	0.05
사슴의 간	*0.01
사슴의 간	*0.01
사슴고기	*0.01
말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말고기	*0.01
돼지의 신장	*0.01
돼지의 간	*0.01
돼지고기	0.02
양의 신장	*0.10
양의 간	0.015
	0.02

Agvet 화학물질명

케토프로펜 (Ketoprofen)

허용된 잔류물질

케토프로펜 (Ketopro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소고기	*0.05
<u></u>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키타사마이신 (Kitasamycin)

허용된 잔류물질 키타사마이신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02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2
돼지고기	*0.2

Agvet 화학물질명 크레속심-메틸 (Kresoxim-methyl)

식물 유래 물질: 크레속심-메틸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a-(p-hydroxy-o-tolyloxy)-o-tolyl (메톡시이미노)

아세트산과 (E)-메톡시이미노[a-(o-tolyloxy)-o-tolyl]아세트산의 합

(크레속심-메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커피콩	0.05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2
인삼(건조)	1
포유류 지방 (유지방 제외)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올리브 오일, 버진	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지방	*0.02
가금류 고기	0.05
메주콩(건조)	0.05
녹차, 홍차	15

Agvet 화학물질명 람다 사이할로트린 (Lamda Cyhalothrin)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참조

Agvet 화학물질명라잘로시드 (Lasalocid)허용된 잔류물질라잘로시드 (Lasaloc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유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7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가금류 지방/껍질	0.6
가금류 신장	0.7
가금류 간	1.2
가금류 고기	0.4

Agvet 화학물질명레바미솔 (Levamisole)허용된 잔류물질레바미솔 (Levamis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1
알류	1
고기(포유류)	0.1
우유 (염소우유 제외)	0.3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린코마이신 (Lincomycin)

허용된 잔류물질 린코마이신으로 확인되는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유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양 식용부속고기 제외)	0.2
알류	0.2
염소 우유	*0.1
고기(포유류; 양고기 제외)	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리누론 (Linuron)

허용된 잔류물질 리누론과 3,4-디클로로아닐린의 합 (리누론으로 표시)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1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루페뉴론 (Lufenuron)허용된 잔류물질루페뉴론 (Lufen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커피콩	0.07
천연 면실유	T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5
알류	T0.05
포유류 지방	2
고기(포유류)	2

Agvet 화학물질명루페뉴론 (Lufenuron)허용된 잔류물질루페뉴론 (Lufen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T1
 우유	T0.2
유지방	5
식용 오렌지 기름	8
가금류 식용 식용 부속고기(offal)	T*0.01
가금류 고기	T1

Agvet 화학물질명마두라마이신 (Maduramicin)허용된 잔류물질마두라마이신 (Maduramic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제인삼마그네슘 (Magnesium phosphide) 포스핀(Phosphine)참조

Agvet 화학물질명 말라티온 (Malathion) 매디슨 (Maldison) 참조

Agvet 화학물질명매디슨 (Maldison)허용된 잔류물질매디슨 (Maldis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조과일	8
건두류	8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1
알류	1
홉(건조)	1
렌즈콩(건조)	8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1
- 우유	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1
가금류 고기	1
스위트콘	3

Agvet 화학물질명 만코제브 (Mancozeb)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참조 Agvet 화학물질명만데스트로빈 (Mandestrobin)허용된 잔류물질만데스트로빈 (Mandestrob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10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1
포유류 지방(유지방 제외)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만디프로파미드 (Mandipropamid) 허용된 잔류물질 만디프로파미드 (Mandipropam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5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50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1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MCPA허용된 잔류물질MCPA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경협종완두(Field pea)(건조)	*0.05
홉(건조)	*0.1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MCPB허용된 잔류물질MCPB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메벤다졸 (Mebendazole)허용된 잔류물질메벤다졸 (Mebend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Agvet 화학물질명 메펜피르 (Mefenpyr-diethyl)

식물 유래 물질: 메펜피르-디에틸(mefenpyr-diethyl)과 가수분해된

대사물질과

1-(2,4-디클로로페닐)-5-메틸-2-피라졸린-3,5-디카르복실산(1-(2,4-dichlorop

henyl)-5-methyl-2-pyrazoline-3,5- dicarboxylic acid) 및

1-(2,4-디클로로페닐)-5-메틸-피라졸-3-디카르복실산(1-(2,4-dichlorophenyl) 허용된 잔류물질

-5- methyl-pyrazole-3-carboxylic acid)의 합 (메펜피르-디에틸로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메펜피르-디에틸(mefenpyr-diethyl)과

1-(2,4-디클로로페닐)-5-에톡시카르보닐-5-메틸-2-피라졸린-3-카르복실 산(1-(2,4-dichlorophenyl)-5-ethoxycarbonyl-5-methyl-2-pyrazoline-3-c

arboxylic acid)의 한 (메펜피르-디에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메펜트리플루코나졸 (Mefentrifluconazole) 허용된 잔류물질 메펜트리플루코나졸 (Mefentriflu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감귤유	15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3

Agvet 화학물질명 메펜트리플루코나졸 (Mefentrifluconazole) 허용된 잔류물질 메펜트리플루코나졸 (Mefentriflu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	4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T0.3
알류	*0.01
렌즈콩(건조 포함)	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T0.2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1
말린 프룬	4
메주콩(건조)	0.4

Agvet 화학물질명멜록시캄 (Meloxicam)허용된 잔류물질멜록시캄 (Meloxic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신장	0.2
소의 간	0.1
소고기	*0.01
우유	0.005
돈지/돼지껍데기	0.1
돼지의 신장	*0.01
돼지의 간	*0.01
돼지고기	0.02
양지방	0.01
양의 신장	0.01
양의 간	0.01
양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메피쾃클로라이드 (Mepiquat) 허용된 잔류물질 메피쾃클로라이드 (Mepiquat)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면실유, 원유	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5
고기(포유류)	0.1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메소설퓨론메틸 (Mesosulfuron-methyl)허용된 잔류물질메소설퓨론메틸 (Mesosulfuron-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메소트리온 (Mesotrione)허용된 잔류물질메소트리온 (Mesotri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메주콩(건조)	0.03

Agvet 화학물질명 메타플루미존 (Metaflumizone)

메타플루미존 E와 메타플루미존 Z 이성질체 및 그 대사물질인

허용된 잔류물질 4-{2-oxo-2-[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에틸}-벤조니트릴(metabolite

4-{2-oxo-2-[3- (trifluoromethyl) phenyl]ethyl}-benzonitrile)의 합

(메타플루미존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커피콩	0.15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1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포유류 지방	0.6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유지방	0.7
 우유	0.02
식용 오렌지유	100
	6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지방	0.08
가금류 고기	*0.02
 메주콩(건조 메주콩 포함	0.2

메타브로뮤론 (Metobromuron)

식물 유래 물질 : 메토브로무론과

4-브로모페닐우레아(4-bromophenylurea (CGA18237))의 (CGA18237)

(메토브로무론으로 나타냄)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4-브로모-2-하이드록시페닐우레아(CGA 72905)(4-bromo-2-hydroxyphenylurea (CGA 72905)) 및

4-브로모페닐우레아(CGA 18237)(4-bromophenyl urea (CGA18237))의

합 (메토브로무론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식용 가금류	*0.02
가금류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메탈락실 (Metalaxyl)

허용된 잔류물질 메탈락실 (Metalax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바질(건조)	T30
카카오빈(건조)	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홉(건조)	20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1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향신료(후추, 칠리, 건조 제외; 향신료, seed 포함)	*0.1
스위트콘	T0.1

Agvet 화학물질명

메탈락실-엠 (Metalaxyl-M)

메탈락실 ((Metalaxyl)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메타알데히드 (Metaldehyde)

허용된 잔류물질

메타알데히드 (Metaldehy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향신료	1
 차(차 및 허브차)	1



Agvet 화학물질명메타미트론 (Metamitron)허용된 잔류물질메타미트론 (Metamit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u></u>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메타자클로르 (Metazachlor)

식물 유래 물질 :

N-(2,6-dimethyl phenyl)-N-(1H-pyrazol-1-ylmethyl) oxalamide),

N-(2,6-dimethylphenyl)-N-(1H-pyrazol-1-ylmethyl)aminocarbonylmethyls

ulfonic acid) 및

허용된 잔류물질

 $3\hbox{-}[N\hbox{-}(2,6\hbox{-}dimethylphenyl)\hbox{-}N\hbox{-}(1H\hbox{-}pyrazol\hbox{-}1\hbox{-}ylmethyl)aminocarbonylmeth}\\$ 

ylsulfinyl]-2-hydroxypropanoic acid)의 합 (메타졸로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2,6-디메틸아닐린(2,6-dimethylaniline moiety) 부분을 포함하는 메타자클로르 및 그 대사물의 합 (메타자클로르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모든 기타 식품	1
알류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메카미펜 (Metcamifen)

식물 유래 물질 : 메카미펜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 메카미펜과 4-(3-메틸-우레이도)-

벤젠술폰아미드(4-(3-methyl-ureido)- benzensulfonamide)의 합

(메카미펜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3
알류	*0.03
고기(포유류)	*0.03
 우유	*0.03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3
가금류 고기	*0.03

Agvet 화학물질명메트코나졸 (Met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메트코나졸 (Met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두류 [메주콩(건조) 제외]	*0.04

Agvet 화학물질명메트코나졸 (Met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메트코나졸 (Met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조 완두콩	0.1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4
알류	*0.04
고기(포유류)	*0.04
- 우유	*0.04
식용가능한 땅콩 기름	0.06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4
가금류 지방	*0.04
가금류 고기	*0.04
프룬 (건조)	0.5
식용유채유	0.5
메주콩(건조)	0.04

Agvet 화학물질명 메탐 (Metham) 디치오카바메이트계(Dithiocarbamates)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메탐소듐(Metham-sodium)

메탐(Metham)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메타미도포스 (Methamidophos)

허용된 잔류물질 메타미도포스 (Methamidophos) (아세페테이트(Acephate) 참조)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오팔(포유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0.1

Agvet 화학물질명메티다티온 (Methidathion)허용된 잔류물질메티다티온 (Methidathi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Agvet 화학물질명 메티오캅 (methiocarb)

허용된 잔류물질 메티오캅과 술폰의 합인 황산화물 (메티오캅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스위트콘	0.1

Agvet 화학물질명메토밀 (Methomyl)허용된 잔류물질메토밀 (Methom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포도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2
	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후추, 칠리(건조)	1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메토프렌 (Methoprene)

허용된 잔류물질

메토프렌, 시스 및 트랜스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우유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3

Agvet 화학물질명 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 허용된 잔류물질 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3
커피콩	0.2
건포도	6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20

Agvet 화학물질명 메틸벤조쿠에이트 (Methyl benzoquate) 허용된 잔류물질 메틸벤조쿠에이트 (Methyl benzoqu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브로민화메틸 (Methyl bromide)허용된 잔류물질브로민화메틸 (Methyl brom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조과일	*0.05

Agvet 화학물질명브로민화메틸 (Methyl bromide)허용된 잔류물질브로민화메틸 (Methyl brom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향신료	*0.05
스위트콘	T*0.05

Agvet 화학물질명 메티람 (Metiram)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참조

Agvet 화학물질명메톨라클로르 (Metolachlor)허용된 잔류물질메톨라클로르 (Metolachlo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 팥(건조)	T*0.05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녹두(건조)	T*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두류(메주콩(건조), 팥(건조) 제외)	*0.01
메주콩(건조)	*0.05
스위트콘(알맹이)	0.1

Agvet 화학물질명메토술람 (Metosulam)허용된 잔류물질메토술람 (Metosul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0.01
루핀 (건조)	*0.02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메트라페논 (Metrafenone)허용된 잔류물질메트라페논 (Metrafen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17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홉(건조)	70



Agvet 화학물질명메트라페논 (Metrafenone)허용된 잔류물질메트라페논 (Metrafen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우유	*0.01
	2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메트라이부진 (Metribuzin)허용된 잔류물질메트라이부진 (Metribuz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두류(메주콩(건조 포함) 제외)	*0.01
메주콩(건조)	*0.05

Agvet 화학물질명메트술푸론 메틸 (Metsulfuron-methyl0허용된 잔류물질메트술푸론 메틸 (Metsulfuron-methyl0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병아리콩(건조)	T*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고기(포유류)	*0.1
- 우유	*0.1
녹두(건조)	0.2

Agvet 화학물질명메빈포스 (Mevinphos)허용된 잔류물질메빈포스 (Mevinph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밀베멕틴 (Milbemectin)

밀베마이신 MA3(milbemycin MA3) 및 밀베마이신 MA4(milbemycin

허용된 잔류물질 MA4) 및 이들의 광이성질체, 밀베마이신 (Z) 8,9-MA3 및 (Z)

8,9Z-MA4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02
홉(건조)	*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02
유지방	*0.0005
<u></u> 우유	*0.0005
스위트콘	0.02

Agvet 화학물질명모넨신 (Monensin)허용된 잔류물질모넨신 (Monens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소고기	*0.05
우유	*0.01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염소고기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5
가금류 고기	*0.5
양지방	0.07
양의 신장	0.0.15
양의 간	0.2
양고기	0.005

Agvet 화학물질명모네판텔 (Monepantel)허용된 잔류물질모네판텔 (Monepante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지	7
소의 신장	1
소의 간	2
소고기	0.3
우유	*0.05
양지방	7
양의 신장	2
양고기	0.7
	5

Agvet 화학물질명모란텔 (Morantel)허용된 잔류물질모란텔 (Morante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2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2
고기(포유류)	0.3
- 우유	*0.1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5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2

Agvet 화학물질명목시덱틴 (Moxidectin)허용된 잔류물질목시덱틴 (Moxidect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5
소고기	1
 우유	2
사슴고기	1
식용사슴 부속고기(offal)	0.2
염소고기	T0.5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T0.05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0.5

Agvet 화학물질명마이클로뷰타닐 (Myclobutanil)허용된 잔류물질마이클로뷰타닐 (Myclobutan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홉(건조)	10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후추, 칠리 (건조)	20

Agvet 화학물질명 날레드 (Naled)

허용된 잔류물질 날레드와 디클로르보스(dichlorvos)의 합 (날레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홉(건조)	0.5

Agvet 화학물질명 나프탈로포스 (Naphthalophos) 허용된 잔류물질 나프탈로포스 (Naphthaloph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Agvet 화학물질명 나프로파미드 (Napropamide) 허용된 잔류물질 나프로파미드 (Napropam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8
 알류	*0.08
고기(포유류)	*0.08
 우유	*0.08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8
가금류 고기	*0.08

Agvet 화학물질명나라신 (Narasin)허용된 잔류물질나라신 (Naras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소고기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네오마이신 (Neomycin) 허용된 잔류물질 네오마이신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T0.5
포유류 지방 (유지방 제외)	T0.5
소, 염소, 돼지 및 양의 신장	T10
소, 염소, 돼지 및 양의 간	T0.5
고기(포유류)	T0.5
우유	T1.5
가금류의 신장	T10
가금류의 간	T0.5
가금류 고기	T0.5

Agvet 화학물질명 네토비민 (Netobimin) 알벤다졸(Albendazole)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니키바진 (Nicarbazin)

허용된 잔류물질 4,4'-디니트로카르바닐리드 (DNC)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닭지방/껍질	10
닭의 신장	20
닭의 간	35
닭근육	5
알류	0.3

Agvet 화학물질명 니클로사미드 (Niclosamide) 허용된 잔류물질 니클로사미드 (Niclosam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T*0.01
 알류	T*0.01
고기(포유류)	T*0.01
 우유	T*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T*0.01
가금류 고기	T*0.01

Agvet 화학물질명 니트록시닐 (Nitroxynil) 허용된 잔류물질 니트록시닐 (Nitroxyn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1
소고기	1
 우유	T0.5
역소 식용 부속고기(offal)	1
 염소고기	1
	1
	1

Agvet 화학물질명노르플루라존 (Norflurazon)허용된 잔류물질노르플루라존 (Norfluraz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3
알류	*0.02
포유류 지방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홉(건조)	3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지방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노르제스토메트 (Norgestomet)허용된 잔류물질노르제스토메트 (Norgestomet)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001
고기(포유류)	*0.0001

Agvet 화학물질명노발루론 (Novaluron)허용된 잔류물질노발루론 (Noval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1
유지방	0.2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스위트콘	0.2

Agvet 화학물질명노보바이오신 (Novobiocin)허용된 잔류물질노보바이오신 (Novobioc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기	*0.1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 ODB

허용된 잔류물질 디클로로벤젠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0.01

Agvet 화학물질명 올라퀸독스 (Olaquindox)

2-(N-2-하이드록시에틸카르바모일)-3-메틸 퀴녹살린(2-(N-2-

허용된 잔류물질 hydroxyethylcarbamoyl)-3-methyl quinoxaline)으로 환원되는

올라킨독스 및 모든 대사 물질의 합 (올라퀸독스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3
돼지고기	0.3

Agvet 화학물질명 올레안도마이신 (Oleandomycin) 허용된 잔류물질 올레안도마이신 (Oleandomyc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고기(포유류)	*0.1

Agvet 화학물질명 오메토에이트 (Omethoate)

허용된 잔류물질 오메토에이트 (디메토에이트 참조)

식품명 회대잔류허용량

Agvet 화학물질명 오메토에이트 (Omethoate)

허용된 잔류물질 오메토에이트 (디메토에이트 참조)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5
정제 올리브오일	T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OPP

2-페닐페놀(2-phenylphenol) 참조

Agvet 화학물질명오라이잘린 (Oryzalin)허용된 잔류물질오라이잘린 (Oryzal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커피공	T0.1

Agvet 화학물질명 옥사베트리닐 (Oxabetrinil) 허용된 잔류물질 옥사베트리닐 (Oxabetrin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1
고기(포유류)	*0.1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옥사딕실 (Oxadixyl)허용된 잔류물질옥사딕실 (Oxadix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Agvet 화학물질명 옥사밀 (Oxamyl)

옥사밀과

2-하이드록시이미노-N,N-디메틸-2-(메틸티오)-아세트아미드(2-허용된 잔류물질

hydroxyimino-N,N-dimethyl-2-(methylthio)- acetamide)의 합

(옥사밀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Agvet 화학물질명 옥사밀 (Oxamyl)

옥사밀과

허용된 잔류물질

2-하이드록시이미노-N,N-디메틸-2-(메틸티오)-아세트아미드(2-hydroxyimino-N,N-dimethyl-2-(methylthio)- acetamide)의 합

(옥사밀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지방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옥사티아피프롤린 (Oxathiapiprolin) 허용된 잔류물질 옥사티아피프롤린 (Oxathiapiprol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말린 바질	Т90
감귤유(식용)	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2
홉(건조)	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가금류 고기 (지방)	*0.01
후추, 칠리(건조)	4
스위트콘	0.5

Agvet 화학물질명옥스펜다졸 (Oxfendazole)허용된 잔류물질옥스펜다졸 (Oxfend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3
고기(포유류)	*0.1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 옥시클로자나이드 (Oxyclozanide) 허용된 잔류물질 옥시클로자나이드 (Oxyclozan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2
소고기	0.5

Agvet 화학물질명옥시클로자나이드 (Oxyclozanide)허용된 잔류물질옥시클로자나이드 (Oxyclozan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2
염소고기	0.5
 우유	0.05
	2
	0.5

Agvet 화학물질명 옥시플루오르펜 (Oxyfluorfen) 허용된 잔류물질 옥시플루오르펜 (Oxyfluor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커피콩	T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2

Agvet 화학물질명 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허용된 잔류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으로 확인되는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0.3
 소, 염소, 돼지 및 양의 신장	0.6
 소, 염소, 돼지 및 양의 간	0.3
 고기(포유류)	0.1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6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파크로부트라졸 (Paclobutrazol)허용된 잔류물질파크로부트라졸 (Paclobutrazo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Agvet 화학물질명파라세타몰 (Paracetamol)허용된 잔류물질파라세타몰 (Paracetamol)

최대잔류허용량
*0.1
*0.1
*0.1

Agvet 화학물질명파라세타몰 (Paracetamol)허용된 잔류물질파라세타몰 (Paracetamo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돼지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파라콰트 (Paraquat)

허용된 잔류물질 파라쿼트 카티온 (Paraquat cati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면실유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01
 홉(건조)	0.5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식용 고기	*0.05
도정미	0.5

Agvet 화학물질명펜코나졸 (Pen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펜코나졸 (Pen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향신료	0.1
녹차, 홍차	0.1

Agvet 화학물질명펜다이메탈린 (Pendimethalin)허용된 잔류물질펜다이메탈린 (Pendimethal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커피콩	T*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식용 페퍼민트오일	6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펜플루페 (Penflufen)허용된 잔류물질펜플루페 (Penflu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병아리콩	T*0.01

Agvet 화학물질명펜플루페 (Penflufen)허용된 잔류물질펜플루페 (Penflu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렌즈콩(건조)	T*0.01
루핀 (건조)	T*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유지방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메주콩	T*0.01

Agvet 화학물질명 펜티오피라드 (Penthiopyrad)

식물 유래 물질: 펜티오라드

동물 유래 물질: 펜티오피라드와

허용된 잔류물질 1-메틸-3-(트리플루오로메틸)-1H-피라졸-4-일카르복사미드(d

1-methyl-3-(trifluoromethyl)-1H-pyrazol-4-ylcarboxamide)의 합

(펜티오피라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후추, 칠리(건조)	14
스위트콘	5

 Agvet 화학물질명
 페르메트린 (Permethrin)

 허용된 잔류물질
 퍼르메트린,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강낭콩 (건조, 흰강낭콩 포함)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1
우유	0.05
후추, 칠리(건조)	10
가금류 고기	0.1
녹차, 홍차	0.1

Agvet 화학물질명 펜메디팜 (Phenmedipham)

식물 유래 물질: 펜메디팜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3-메틸-N-(3-하이드록시페닐)카바메이트(3-

methyl-N-(3-hydroxyphenyl)carbam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고기(포유류)	*0.1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 2-페닐페놀 (2-Phenylphenol)

허용된 잔류물질 2-페닐페놀과 2-페닐페네이트의 합 (2-페닐페놀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Agvet 화학물질명 포레이트 (Phorate)

허용된 잔류물질 포레이트, 산소 유사체, 설폭사이드 및 설폰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포스메트 (Phosmet)

허용된 잔류물질 포스메트와 산소 유사체(oxygen analogue)의 합 (포스메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1
소고기	1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염소고기	*0.05
우유	0.2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1
돼지고기	0.1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양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인산염 (Phosphine)

허용된 잔류물질 모든 인산염 (인산수소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조 식품 (해당 화학물질에 별도로 최대허용량이 설정된 것 제외)	*0.01
건조과일	*0.01
건조채소	*0.01
향신료	*0.01

Agvet 화학물질명아인산 (Phosphorous acid)허용된 잔류물질아인산 (Phosphorous ac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5
고기(포유류)	1
스위트콘	T100

Agvet 화학물질명피클로람 (Picloram)허용된 잔류물질피클로람 (Piclor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5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피콜리나펜 (Picolinafen)

허용된 잔류물질 식물 유래 물질: 피콜리나펜

동물 유래 물질: 피콜리나펜과

6-[3-트리플루오로메틸페녹시]-2-피리딘 카르복실산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경협종완두(Field pea)(건조)	*0.02
루핀 (건조)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피폭시트로빈 (Picoxystrobin)허용된 잔류물질피폭시트로빈 (Picoxystrob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커피콩	0.04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포유류 지방 (유지방 제외)	0.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우유	*0.01
메주콩(건조)	0.06
녹차, 홍차	15

Agvet 화학물질명 피녹사덴 (Pinoxaden)

유리 및 접합 M4 대사물질과

8-(2,6-디에틸-4-히드록시메틸페닐)-테트라히드로-피라졸로[1,2-d][1,4,5

허용된 잔류물질 ]옥사디아제핀-7,9-디온(8-(2,6-diethyl-4-hydroxymethylphenyl)-

tetrahydro-pyrazolo [1,2-d][1,4,5] oxadiazepine-7,9- dione)의 합

(피녹사덴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피페로닐부톡사이드 (Piperonyl butoxide) 허용된 잔류물질 피페로닐부톡사이드 (Piperonyl butox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5
우유	0.05
건조과일	8
건조채소	8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1
고기(포유류)	0.1
후추, 칠리(건조)	2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5
가금류 고기	*0.5
스위트콘	8

Agvet 화학물질명 프리미캅 (Pirimicarb)

히용된 잔류물질 피리미카브, 데메틸피리미카브 및 N-포르밀-(메틸아미노)

유사체(데메틸포름아미도-피리미카브)의 합 (피리미카브로 나타냄)

	, .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면실유, 원유	T0.1
- 후추, 칠리(건조)	20
향신료	*0004

Agvet 화학물질명 피리미포스-메틸 (Pirimiphos-methyl) 허용된 잔류물질 피리미포스-메틸 (Pirimiphos-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 우유	*0.05
식용가능한 땅콩 기름	1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현미	2
도정미	1
 라이밀	10

Agvet 화학물질명프라지콴텔 (Praziquantel)허용된 잔류물질프라지콴텔 (Praziquante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0.05

Agvet 화학물질명 프로카인페니실린 (Procaine penicillin) 허용된 잔류물질 프로카인 페니실린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고기(포유류)	*0.1
- 우유	*0.0025

Agvet 화학물질명프로사이미돈 (Procymidone)허용된 잔류물질프로사이미돈 (Procymid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병아리콩(건조)	T0.5
강낭콩 (건조, 흰강낭콩 포함)	T10

Agvet 화학물질명프로사이미돈 (Procymidone)허용된 잔류물질프로사이미돈 (Procymid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T0.05
알류	T*0.01
렌즈콩(건조)	0.5
루핀 (건조)	T*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T0.2
우유	T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T*0.01
가금류 고기	T0.1
식용유채유	T2

Agvet 화학물질명프로페노포스 (Profenofos)허용된 잔류물질프로페노포스 (Profenof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후추, 칠리(건조)	0.02
우유	*0.01
커피콩	0.04
식용 면실유	0.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5
후추, 칠리(건조)	2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폭시딤 (Profoxydim)

프로폭시딤으로 표시되는 산화 및 산성 메탄올 처리 후

허용된 잔류물질 디메틸-3-(3-티아닐)글루타레이트-S-이산화물로 전환된 프로폭시딤과

모든 대사물질의 합

_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헥사디움칼슘 (Prohexadione-calcium) 허용된 잔류물질 프로헥사디온의 자유 형태와 결합 형태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프로메트린 (Prometryn)허용된 잔류물질프로메트린 (Prometry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팥(건조)	T*0.1
 우유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파클로르 (Propachlor)

프로파클로르와 N-이소프로필아닐린으로 가수분해 가능한 허용된 잔류물질

1<del>8선 전규율을</del> 대사물질의 합 (프로파클로르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파모카브 (Propamocarb)

허용된 잔류물질 프로파모카브 (Propamocarb) (bas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1.5
알류	*0.01
포유류 지방	0.03
고기(포유류)	0.03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1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스위트콘	T0.3

Agvet 화학물질명프로파닐 (Propanil)허용된 잔류물질프로파닐 (Propan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시	*0.1
 알류	*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3
가금류 고기	*0.1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양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파퀴자포프 (Propaquizafop)

프로파퀴자포프와 및 옥소페녹시

허용된 잔류물질 대사물질(6-클로로-2-메톡시퀴녹살린(6-chloro-2-

methoxyquinoxaline)으로 측정)의 합 (프로파퀴자포프로 나타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고기(포유류)	*0.02
<u> </u>	*0.01

Agvet 화학물질명프로파자이트 (Propargite)허용된 잔류물질프로파자이트 (Propargi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1
홉(건조)	3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1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스위트콘	3

Agvet 화학물질명프로파진 (Propazine)허용된 잔류물질프로파진 (Propa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스위트콘	*0.1



Agvet 화학물질명프로페탐포스 (Propetamphos)허용된 잔류물질프로페탐포스 (Propetamph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양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프로피코나졸 (Propi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프로피코나졸 (Propi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1
알류	*0.05
고기(포유류)	0.1
 우유	*0.01
민트 오일	*0.02
오렌지 오일, 식용	185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향신료	*0.1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피네브 (Propineb) 디치오카바메이트계(Dithiocarbamates)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피자마이드 (Propyzamide) 허용된 잔류물질 프로피자마이드 (Propyzam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퀴나지드 (Proquinazid)

식물 유래 물질: 프로퀴나지드

동물 유래 물질: 프로퀴나지드와

허용된 잔류물질 3-(6-요오도-4-옥소-3-프로필-3H-퀴나졸린-2-일옥시)프로피온산(

3-(6-iodo-4-oxo-3-propylt=3H-quinazolin-2-yloxy)propionic acid)의 합

(프로퀴나지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퀴나지드 (Proquinazid)

식물 유래 물질: 프로퀴나지드

동물 유래 물질: 프로퀴나지드와

허용된 잔류물질 3-(6-요오도-4-옥소-3-프로필-3H-퀴나졸린-2-일옥시)프로피온산(

3-(6-iodo-4-oxo-3-propylt3H-quinazolin-2-yloxy)propionic acid)의 합

(프로퀴나지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프로설포카브 (Prosulfocarb)허용된 잔류물질프로설포카브 (Prosulfocarb)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티오코나졸 (Prothioconazole)

식물 유래 물질 : 프로티오코나졸 및 Prothioconazole desthio

허용된 잔류물질 (2-(1-chlorocyclopropyl)-1-(2-chlorophenyl)-3-(1H-1,2,4-triazol-1-yl)-p

ropan-2-ol))의 합 (프로티오코나졸로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프로티오코나졸, prothioconazole desthio (2-(1-chlorocyclopropyl)-1-(2-chlorophenyl)-3-(1H-1,2,4-triazol-1-yl)-pro

pan-2-ol), prothioconazole-3- hydroxy-desthio

(2-(1-chlorocyclopropyl)-1-(2-chloro-3-hydroxyphenyl)-3-(1H-1,2,4-tri

azol-1-yl)-propan-2- ol) 및 prothioconazole-4-hydroxy-desthio

(2-(1-chlorocyclopropyl)-1-(2-chloro-4-hydroxyphenyl)-3-(1H-1,2,4-tri

azol-1-yl)-propan-2-ol)의 합 (프로티오코나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u></u> 우유	*0.004

Agvet 화학물질명 프로티오코나졸 (Prothioconazole)

식물 유래 물질 : 프로티오코나졸 및 Prothioconazole desthio

허용된 잔류물질 (2-(1-chlorocyclopropyl)-1-(2-chlorophenyl)-3-(1H-1,2,4-triazol-1-yl)-p

ropan-2-ol))의 합 (프로티오코나졸로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프로티오코나졸, prothioconazole desthio (2-

(1-chlorocyclopropyl)-1-(2-chlorophenyl)-3-(1H-1,2,4-triazol-1-yl)-pro

pan-2-ol), prothioconazole-3- hydroxy-desthio

(2-(1-chlorocyclopropyl)-1-(2-chloro-3-hydroxyphenyl)-3-(1H-1,2,4-tri

azol-1-yl)-propan-2- ol) 및 prothioconazole-4-hydroxy-desthio

(2-(1-chlorocyclopropyl)-1-(2-chloro-4-hydroxyphenyl)-3-(1H-1,2,4-tri

azol-1-yl)-propan-2-ol)의 합 (프로티오코나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메주콩(건조)	0.2

Agvet 화학물질명 피디플루메토펜 (Pydiflumetofen) 허용된 잔류물질 피디플루메토펜 (Pydiflumeto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1
알류	0.02
식용 옥수수기름	0.08
포유류 지방 (유지방 제외)	0.1
- 우유	*0.01
식용가능한 땅콩 기름	0.15
후추, 칠리(건조)	5
 팝콘	T0.02
건조 감자	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토마토(건조)	7

Agvet 화학물질명피메트로진 (Pymetrozine)허용된 잔류물질피메트로진 (Pymetro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누에콩(건조 포함)	T0.02
식용 면실유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루핀 (건조)	T0.02

Agvet 화학물질명피메트로진 (Pymetrozine)허용된 잔류물질피메트로진 (Pymetro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피라클로포스 (Pyraclofos) 허용된 잔류물질 피라클로포스 (Pyraclof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양지방	0.5
양의 신장	*0.01
	*0.01
	*0.01

Agvet 화학물질명 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식물 유래 물질 : 피라클로스트로빈

동물 유래 물질 :

허용된 잔류물질

1-(4-클로로-페닐)-1H-피라졸-3-올(1-(4-chloro-phenyl)-1H-pyrazol-3-o

l)로 가수분해된 피라클로로빈 및 대사물질의 합

(피라클로로스트로빈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병아리콩(건조)	T0.5
커피콩	0.3
 건포도	5
 건두류	0.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5
 포유류 지방	0.5
 홉(건조)	23
 렌즈콩(건조)	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5
 우유	0.03
녹두(건조)	T0.2
 천연올리브오일	T1
버진올리브오일	0.07
완두콩(건조)	0.3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현미	0.09
 도정미	0.03

Agvet 화학물질명 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식물 유래 물질 : 피라클로스트로빈

동물 유래 물질:

허용된 잔류물질

1-(4-클로로-페닐)-1H-피라졸-3-올(1-(4-chloro-phenyl)-1H-pyrazol-3-o

1)로 가수분해된 피라클로로빈 및 대사물질의 합

(피라클로로스트로빈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향신료	0.1
스위트콘	0.3
녹차, 홍차	6
라이밀	0.2

Agvet 화학물질명 피라플루펜-에틸 (Pyraflufen-ethyl)

이용된 잔류물질 피라플루펜-에틸과 그 산 대사물질의 합 (2-chloro-5-(4-chloro-5-

difluoromethoxy-1-methylpyrazol-3-yl)-4- fluorophenoxyacetic ac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홉(건조)	*0.1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피라술포톨 (Pyrasulfotole)

피라술포톨과 메탄올((5-

허용된 잔류물질 hydroxy-3-methyl-1H-pyrazol-4-yl)[2-mesyl-4-

(trifluoromethyl)phenyl])의 합 (피라술포톨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피레스린 (Pyrethrins)

제충국 표준에 따라 보정한 후 결정됨)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2
 건조과일	1

Agvet 화학물질명

피레스린 (Pyrethrins)

허용된 잔류물질

피레스린 i 및 ii, 시네린시 i 및 ii, 자스몰린 i 및 ii의 합계(국제

제충국 표준에 따라 보정한 후 결정됨)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건조채소	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5
우유	*0.05
버진올리브오일	T3
	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피리다벤 (Pyridaben)

허용된 잔류물질

피리다벤 (Pyridab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10

Agvet 화학물질명

피리데이트 (Pyridate)

6 클로로-4-하이드록실-3-페닐 피리다진(6

허용된 잔류물질

chloro-4-hydroxyl-3-phenyl pyridazine)을 함유한 피리데이트와

대사물질의 합 (피리데이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병아리콩(건조)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2
고기(포유류)	*0.2
우유	*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2
가금류 고기	*0.2

Agvet 화학물질명

피리메탄일 (Pyrimethanil)

허용된 잔류물질

피리메탄일 (Pyrimethan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u></u> 우유	*0.01
 향신료	0.1

Agvet 화학물질명피리오페논 (Pyriofenone)허용된 잔류물질피리오페논 (Pyriofen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모든 기타 식품	0.05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2.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포유류 지방 (유지방 제외)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피리프록시펜 (Pyriproxyfen) 허용된 잔류물질 피리프록시펜 (Pyriproxy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2
우유	*0.02
버진올리브오일	3
후추, 칠리(건조)	6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스위트콘	1

Agvet 화학물질명 피리티박나트륨 (Pyrithiobac sodium) 허용된 잔류물질 피리티박나트륨 (Pyrithiobac sodiu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면실유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Agvet 화학물질명 피록사술폰 (Pyroxasulfone)

식물 유래 물질: 파이록사술폰과 5-difluoromethoxy-1-

허용된 잔류물질 methyl-3-trifluoromethyl-1H-pyrazol-4- yl)methanesulfonic acid)의

합 (피록사술폰으로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5- Difluoromethoxy-1-methyl-3-trifluoromethyl-1H-

pyrazole-4-carboxylic acid) (피록사술폰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02
팝콘	0.01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메주콩(건조)	0.06
대두유	0.06
해바라기씨유	0.3

Agvet 화학물질명피록술람 (Pyroxsulam)허용된 잔류물질피록술람 (Pyroxsula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라이밀	*0.01

Agvet 화학물질명퀸클로락 (Quinclorac)허용된 잔류물질퀸클로락 (Quinclorac)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현미	10
도정미	8

Agvet 화학물질명퀴녹시펜 (Quinoxyfen)허용된 잔류물질퀴녹시펜 (Quinoxy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건포도	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홉(건조)	3
	<u> </u>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gvet 화학물질명퀴녹시펜 (Quinoxyfen)허용된 잔류물질퀴녹시펜 (Quinoxyfe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1
유지방	0.2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0
가금류 고기	*0.10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 퀸토젠 (Quintozene)

퀸토젠과 펜타클로로아닐린(pentachloroaniline) 및 메틸

허용된 잔류물질 펜타클로로페닐 설파이드(methyl pentacholorophenyl sulfide)의 합

(퀸토젠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강낭콩 (건조, 흰강낭콩 포함)	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3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2
- 우유	*0.02
후추, 칠리(건조)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퀴잘로포프에틸 (Quizalofop-ethyl) 허용된 잔류물질 퀴잘로포프에틸 (Quizalofop-ethyl)

최대잔류허용량
0.01
0.2
*0.02
*0.02
0.1
*0.05
*0.05

Agvet 화학물질명 퀴잘로팝-p-테푸릴 (Quizalofop-p-tefuryl)

최대잔류허용량 퀴잘로팝-p-테푸릴과 퀴잘로팝-p-테푸릴로 표현되는 퀴잘로팝산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u></u>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 퀴잘로팝-p-테푸릴 (Quizalofop-p-tefuryl)

최대잔류허용량 퀴잘로팝-p-테푸릴과 퀴잘로팝-p-테푸릴로 표현되는 퀴잘로팝산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락토파민 (Ractopamine)허용된 잔류물질락토파민 (Ractopam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지	0.01
소의 신장	0.09
소의 간	0.04
소고기	0.01
돈지	0.05
돼지의 신장	0.2
돼지의 간	0.2
돼지고기	0.05
칠면조의 신장	0.3
칠면조의 간	0.3
실면조 고기	0.02
칠면조 껍데기	0.05

Agvet 화학물질명로베니딘 (Robenidine)허용된 잔류물질로베니딘 (Robenid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사플루페나실 (Saflufenacil)

식물 유래 물질 : 사플루페나실과

N'-{2-클로로-4-플루오로-5-[1,2,3,6-테트라하이드로-2,6-디옥소-4-(트리

플루오로메틸)피리미딘-1-일1벤조일-N-이소프로필술파미드 및

허용된 잔류물질 지점 클리크 2 프로O크 5 ((이스프로필울파미드 및

N-[4-클로로-2-플루오로-5-(((이소프로필아미노)술포닐)카보닐)페닐]우

레아의 합 (사플루페나실 상당량으로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 사플루페나실

32 11 11 22 12 11 11 12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7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Agvet 화학물질명 사플루페나실 (Saflufenacil)

식물 유래 물질 : 사플루페나실과

N'-{2-클로로-4-플루오로-5-[1,2,3,6-테트라하이드로-2,6-디옥소-4-(트리

플루오로메틸)피리미딘-1-일]벤조일-N-이소프로필술파미드 및

허용된 잔류물질

N-[4-클로로-2-플루오로-5-({(이소프로필아미노)술포닐}카보닐)페닐]우

레아의 합 (사플루페나실 상당량으로 나타냄)

동물 유래 물질 : 사플루페나실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살리노마이신 (Salinomycin) 허용된 잔류물질 살리노마이신 (Salinomyc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5
소고기	*0.05
알류	*0.02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1
돼지고기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5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세닥산 (Sedaxane)

허용된 잔류물질 세닥산 (Sedaxane),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셈두라마이신 (Semduramicin) 허용된 잔류물질 셈두라마이신 (Semduramic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닭지방/껍질	0.5
닭의 신장	0.2
닭의 간	0.5
닭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세톡시딤 (Sethoxydim)

5-(2-에틸티오프로필)사이클로헥센-3-1(5-(2-

ethylthiopropyl)cyclohexene-3-one)과

허용된 잔류물질

5-(2-에틸티오프로필)-5-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센-3-1 모이어티(5-(2 ethylthiopropyl)-5-hydroxycyclohexene-3-one moieties), 이들의 술폭사이드 및 술폰을 포함하는 세톡시딤 및 대사물의 합

(세톡시딤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바질(건조)	T5
건두류	2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홉(건조)	0.5
루핀 (건조)	0.2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시마진 (Simazine)허용된 잔류물질시마진 (Sima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바질, 건조	T5
누에콩(건조 포함)	*0.01
병아리콩(건조)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루핀 (건조)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스펙티노마이신 (Spectinomycin) 허용된 잔류물질 스펙티노마이신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양고기 제외]	*1
알류	2
고기(포유류; 양고기 제외)	*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1
가금류 고기	*1

Agvet 화학물질명 스피네토람 (Spinetoram)

허용된 잔류물질 에틸-스피노신-J(Ethyl-spinosyn-J)와 에틸-스피노신-L(Ethyl-spinosyn-L)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카카오빈(건조)	*0.01
커피콩	*0.01
건포도(건포도)	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알류	*0.01
 홉(건조)	22
레몬 버베나 잎(건조)	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2
유지방	0.2
-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4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스피노새드 (Spinosad)

허용된 잔류물질 스피노신 A(Spinosyn-A)와 스피노신-D(Spinosyn-D)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커피콩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05
홉(건조)	2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2
유지방	0.7
우유	0.1
후추, 칠리(건조)	3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5

Agvet 화학물질명 스피로디클로펜 (Spirodiclofen) 허용된 잔류물질 스피로디클로펜 (Spirodiclofen)

10		. –	- '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				30

Agvet 화학물질명

스피로메시펜 (Spiromesifen)

허용된 잔류물질

스피로메시펜과 2,4,6-trimethylphenyl)-1-oxaspiro[4.4]non-3-en-2-one

의 합, 스피로메시펜으로 표시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후추, 칠리(건조)	5
녹차, 홍차	50

Agvet 화학물질명 스피로테트라맷 (Spirotetramat)

스피로테트라맷과

허용된 잔류물질

4-하이드록시-3-(2,4,6-트리메틸페닐)-1-옥사스피로[4.4]논-3-엔-2-온(ci

s-3- (2,5-dimethylphenyl)-4-hydroxy-8-methoxy-1-

azaspiro[4.5]dec-3-en-2-one)의 합 (스피로메시펜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건포도	4
알류	*0.02
무화과	T1
홉(건조)	10
고기(포유류)	0.02
- 우유	*0.005
후추, 칠리(건조)	1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메주콩(건조)	T5

Agvet 화학물질명

스피록사민 (Spiroxamine)

허용된 잔류물질

식물 유래 물질: 스피록사민(Spiroxamine)

동물 유래 물질: 스피록사민 카르복실산 (스피록사민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포도	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02
홉(건조)	50
포유류 지방 (유지방 제외)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스트렙토마이신 및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 and

Dihydrostreptomycin)

허용된 잔류물질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으로 확인되는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3
고기(포유류)	*0.3
 우유	*0.2

Agvet 화학물질명 설포설푸론 (Sulfosulfuron)

2-(에틸설포닐)이미다조[1,2-a]피리딘(2-

허용된 잔류물질 (ethylsulfonyl)imidazo[1,2-a]pyridine)으로 가수분해되는 설포설푸론과

그 대사물의 합 (설포설푸론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05
알류	*0.005
고기(포유류)	*0.005
- 우유	*0.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05
가금류 고기	*0.005

Agvet 화학물질명설폭사플로르 (Sulfoxaflor)허용된 잔류물질설폭사플로르 (Sulfoxaflor)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건두류	0.7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1
 알류	*0.01
포유류 지방	0.2
고기(포유류)	0.4
- 우유	0.3
	1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7
 현미	1.5
 도정미	1
 메주콩(건조)	0.3

Agvet 화학물질명 플루오르화설퍼릴 (Sulfuryl fluoride) 허용된 잔류물질 플루오르화설퍼릴 (Sulfuryl fluor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건조과일	0.07

Agvet 화학물질명 설파다이아진 (Sulphadiazine) 허용된 잔류물질 설파다이아진 (Sulphadia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 우유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T*0.02
고기(포유류)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 설파디미딘 (Sulphadimidine) 허용된 잔류물질 설파디미딘 (Sulphadimidine)

	#1=U=U=U=U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고기(포유류)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알류	*0.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칠면조 제외]	0.1
가금류 고기	0.1
칠면조의 식용 식용 부속고기(offal)	0.2

Agvet 화학물질명설파독신 (Sulphadoxine)허용된 잔류물질설파독신 (Sulphadox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유	*0.1
고기(포유류)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Agvet 화학물질명 설파퀴녹살린 (Sulfaquinoxaline) 허용된 잔류물질 설파퀴녹살린 (Sulfaquinoxal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T*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설파트록소졸 (Sulphatroxozole)허용된 잔류물질설파트록소졸 (Sulphatroxo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유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1
고기(포유류)	0.1

Agvet 화학물질명테부코나졸 (Tebu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테부코나졸 (Tebu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커피콩	T0.1
건포도류 (currants, raisins, sultanas와 같은)	7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5
알류	0.1
홉(건조)	40
레몬 머틀 잎(건조)	T5
고기(포유류)	0.1
우유	0.05
올리브오일, 원유	5
식용 오렌지유	10
후추, 칠리(건조)	10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5
가금류 고기	0.1
메주콩(건조)	0.1
향신료(건조 후추, 칠리 제외)	1
해바라기씨유	0.2

Agvet 화학물질명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 허용된 잔류물질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건포도	4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고기(포유류)	*0.02
-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10

Agvet 화학물질명테브펜피라드 (Tebufenpyrad)허용된 잔류물질테브펜피라드 (Tebufenpyra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녹차, 홍차	0.1

Agvet 화학물질명테플루벤주론 (Teflubenzuron)허용된 잔류물질테플루벤주론 (Teflubenz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커피콩	0.3
 메주콩(건조)	0.05

Agvet 화학물질명

테부티우론 (Tebuthiuron)

허용된 잔류물질

테부티우론과 히드록시디메틸에틸, N-디메틸 및 히드록시메틸아민

대사물질의 합 (테부티우론으로 나타냄)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2
고기(포유류)	0.5
 우유	0.2

Agvet 화학물질명

테메포스 (Temephos)

허용된 잔류물질

테메포스와 테메포스 설폭사이드(temephos sulfoxide)의 합

(테메포스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T2
소고기	T5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5
	3

Agvet 화학물질명

테르바실 (Terbacil)

최대잔류허용량

테르바실 (Terbaci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페퍼민트오일	*0.1

Agvet 화학물질명

터부포스 (Terbufos)

허용된 잔류물질

터부포스 (Terbufos)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소고기	*0.05
- 우유	*0.01
알류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해바라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테르부틸라진 (Terbuthylazine)

허용된 잔류물질

테르부틸라진 (Terbuthylazi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테르부트린 (Terbutryn)허용된 잔류물질테르부트린 (Terbutry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3
 알류	*0.05
고기(포유류)	0.1
-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테트라코나졸 (Tetra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테트라코나졸 (Tetra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0.01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허용된 잔류물질 테트라사이클린으로 확인되는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유	*0.1

Agvet 화학물질명 테트랄닐리프롤 (Tetraniliprole) 허용된 잔류물질 테트랄닐리프롤 (Tetranilipr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살구(건조)	3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7
알류	*0.01
고기(포유류) (in the fat)	0.1
우유	0.1
유지방	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티아벤다졸 (Thiabendazole)

식물 유래 물질: 티아벤다졸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티아벤다졸과 5-hydroxylthiabendazole의 합

(티아벤다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3

Agvet 화학물질명 티아벤다졸 (Thiabendazole)

식물 유래 물질: 티아벤다졸

허용된 잔류물질

동물 유래 물질: 티아벤다졸과 5-hydroxylthiabendazole의 합

(티아벤다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2
고기(포유류)	0.2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티아클로프리드 (Thiacloprid) 허용된 잔류물질 티아클로프리드 (Thiaclopr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향신료	0.1
녹차, 홍차	10

Agvet 화학물질명 티아메톡삼 (Thiamethoxam)

식물 유래 물질 : 티아메톡삼

허용된 잔류물질 ㅎ둘 ㅠ

동물 유래 물질 : 티아메톡삼 및

N-(2-chloro-thiazol-5-ylmethyl)-N'-methyl-N'-nitro-guanidine의 합

(티아메톡삼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T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홉(건조)	0.1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05
후추, 칠리(건조)	7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고기	*0.02
 녹차, 홍차	20

Agvet 화학물질명 티다이아주론 (Thidiazuron) 허용된 잔류물질 티다이아주론 (Thidiaz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 티오디카브 (Thiodicarb)

허용된 잔류물질 티오디카브와 메토밀(methomy)의 합 (티오디카브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티오파네이트 (Thiophanate)

카벤다짐(Carbendazim)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티오파네이트 메틸 (Thiophanate-methyl)

허용된 잔류물질 티오파네이트-메틸과 2-아미노벤즈이미다졸의 합,

(티오파네이트메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1

Agvet 화학물질명 티람 (Thiram)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테아페나실 (Tiafenacil)

식물 유래 물질 : 티아페나실 및

3-(2-클로로-4-플루오로-5-(3-메틸-2,6-디옥소-4-(트리플루오로메틸)-2,

어용된 잔류물질 3-디히드로피리미딘-1(6H)-일)프로파나미도)프로판산(M-01)(3-(2-(2-

chloro-4-fluoro-5-(3-methyl-2,6-dioxo-4-(trifluoromethyl)-2,3-dihydro

pyrimidin-1(6H)-yl) phenylthio)propanamido)propanoic acid

(M-01))의 합 (티아페나실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2
알류	*0.02
고기(포유류)	*0.02
· 우유	*0.02
가금류 고기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Agvet 화학물질명티아물린 (Tiamulin)허용된 잔류물질티아물린 (Tiamul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1
돼지고기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1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틸미코신 (Tilmicosin)허용된 잔류물질틸미코신 (Tilmicos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1
	*0.05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1
돼지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티옥사자펜 (Tioxazafen)

허용된 잔류물질 티옥사자펜과 벤자미딘(벤젠카르복스이미드아미드)의 합,

(티옥사자펜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3
알류	*0.02
포유류 지방	0.03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가금류 지방	*0.02
가금류 고기	*0.02
메주콩(건조)	0.04

Agvet 화학물질명톨글로포스메틸 (Tolclofos-methyl)허용된 잔류물질톨글로포스메틸 (Tolclofos-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지방 제외)	*0.01
-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톨페나믹 애시드 (Tolfenamic acid) 허용된 잔류물질 톨페나믹 애시드 (Tolfenamic aci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의 신장	*0.01
소의 간	*0.01
소고기	0.05
 우유	0.05
돼지의 신장	*0.01
돼지의 간	0.1
돼지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톨펜피라드 (Tolfenpyrad)

식물 유래 물질 : 톨펜피라드

동물 유래 물질 : 톨펜피라드와 유리 및 공액

허용된 잔류물질

(PT-CA(4-[4-[(4-chloro-3-ethyl-1-methylpyrazol-5-yl)carbonylaminomethyl] phenoxy] benzoic acid) 및 OH-PT-CA(4-[4-[[4-chloro-3(1-hydroxyethyl)-1-methylpyrazol-5-yl] carbonylaminomethyl] phenoxy] benzoic acid) (알칼리가수분해와 함께 방출))의 합 (톨펜피라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 감귤유, 식용	80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4
알류	*0.01
포유류 지방 (유지방 제외)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후추, 칠리(건조)	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Aqvet 화학물질명

톨트라주릴로 (Toltrazuril)

허용된 잔류물질

톨트라주릴과 술폭시드 및 술폰의 합 (톨트라주릴로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지	1
소의 신장	1
소의 간	2
소고기	0.25
닭의 식용 식용 부속고기(offal)	5
알류	*0.03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2
돼지고기	1

Agvet 화학물질명토프라메존 (Topramezone)허용된 잔류물질토프라메존 (Topramezo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 우유	*0.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트렌볼론 아세테이트 (Trenbolone acetate)

허용된 잔류물질 트렌볼론 아세테이트와 17 알파- 및 17 베타-트렌볼론(17 Alpha- and 17 Beta-trenbolone)(유리 및 결합 모두)의 합 (트렌볼론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소고기	0.002

Agvet 화학물질명 트리아디메폰 (Triadimefon)

허용된 잔류물질 트리아디메폰과 트리아디메놀의 합 (트리아디메폰으로 나타냄)

기장은 근표할 된 (트리아디메놀트렌볼론 참조)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1
경협종완두(Field pea)(건조)	0.1
포유류 지방	*0.2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1
후추, 칠리(건조)	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스위트콘	0.2
녹차, 홍차	0.2

Agvet 화학물질명 트리아메디놀 (Triadimenol)

트리아디메폰 (Triadimefon) 참조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아니스 머틀 잎(건조)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레몬 머틀 잎(건조)	0.05
고기(포유류)	*0.01



Agvet 화학물질명 트리아메디놀 (Triadimenol)

트리아디메폰 (Triadimefon) 참조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 우유	*0.01
	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스위트콘	1
녹차, 홍차	0.2

Agvet 화학물질명 트라이알레이트 (Triallate)

허용된 잔류물질 2,3,3-trichloroprop-2-ene sulfonic acid (TCPSA)의 합 (트라이알레이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신장 제외)	*0.1
알류	*0.01
포유류 지방	0.2
소, 염소, 돼지 및 양의 신장	0.2
고기(포유류)	*0.1
우유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2
가금류 지방	0.2
가금류 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트리아설푸론 (Triasulfuron)허용된 잔류물질트리아설푸론 (Triasulf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트리베누론-메틸 (Tribenuron-methyl)허용된 잔류물질트리베누론-메틸 (Tribenuron-m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병아리콩(건조)	*0.01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1
 녹두(건조)	*0.01
메주콩(건조)	*0.01

Agvet 화학물질명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허용된 잔류물질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우지	0.1
소고기	0.1
건조과일	2
으류 알류	*0.05
역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염소고기	0.1
우유	*0.05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1
돈지	0.1
돼지고기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두류(메주콩(건조 포함) 제외)	0.2
메주콩	0.1
스위트콘(corn-on-the-cob)	0.2

Agvet 화학물질명 트리클라벤다졸 (Triclabendazole)

허용된 잔류물질 트리클라벤다졸과 케토-트리클라벤다졸로 산화 가능한 대사물질의 합 (케톤-디메틸라벤다졸 상당량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포유류 지방	1
 신장(포유류)	1
 간(포유류)	2
고기(포유류)	0.5
 우유	0.01

Agvet 화학물질명 트라이클로피르 (Triclopyr) 허용된 잔류물질 트라이클로피르 (Triclopyr)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5
소고기	0.2
감귤류 과일 [금귤 제외]	0.2
염소 식용 부속고기(offal)	5
염소고기	0.2
 우유	0.1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5
양고기	0.2



Agvet 화학물질명 트라이데모르프 (Tridemorph) 허용된 잔류물질 트라이데모르프 (Tridemorph)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 트리플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

트리플로옥시스트로빈과 그 산 대사물질인

허용된 잔류물질 (E,E)-methoxyimino-[2-[1-(3-trifluoromethylphenyl)-ethylideneaminoo

xymethyl] phenyl] acetic acid)의 합 (트리플로옥시스트로빈

상당량으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5
병아리콩(건조)	T*0.02
건조 포도	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홉(건조)	11
렌즈콩(건조 포함)	T*0.02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2
땅콩 오일, 원유	0.05

Agvet 화학물질명 트리플록시설푸론나트륨 (Trifloxysulfuron sodium) 허용된 잔류물질 트리플록시설푸론나트륨 (Trifloxysulfuron sodium)

최대잔류허용량
*0.01
*0.01
*0.01
*0.01
*0.01
*0.01
*0.01

Agvet 화학물질명 트리플루디목사진 (Trifludimoxazin) 허용된 잔류물질 트리플루디목사진 (Trifludimoxazin)

- 12   1   1   2 ( · · · · · · · · · · · · · · · ·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1
 우유	*0.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스위트콘(corn-on-the-cob)	*0.01

Agvet 화학물질명

트리플루미졸 (Triflumizole)

허용된 잔류물질

트리플루미졸과 (E)-4- chloro-a,a,a-trifluoro- N-(1-amino-2-propoxyethylidene)-o-toluidine)의 합 (트리플루미졸로 나타냄)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홉(건조)	50

Agvet 화학물질명

트리플르누론 (Triflumuron)

허용된 잔류물질

트리플르누론 (Triflumuro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양 식용부속고기 제외)	*0.05
알류	0.01
홉(건조)	50
고기(포유류) [양고기(지방 중에) 제외]	*0.05
우유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1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양고기	2

Agvet 화학물질명

트리플루란린 (Trifluralin)

허용된 잔류물질

트리플루란린 (Triflural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품	0.01
팥(건조)	*0.05
병아리콩(건조)	*0.05
동부콩(건조)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편두(건조)	*0.05
루핀 (건조)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5
녹두(건조)	*0.05
가금류의 고기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스위트콘	0.05
녹차, 홍차	*0.05

Agvet 화학물질명

트리메소프림 (Trimethoprim)

허용된 잔류물질

트리메소프림 (Trimethopri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유	0.05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Agvet 화학물질명트리메소프림 (Trimethoprim)허용된 잔류물질트리메소프림 (Trimethoprim)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트리넥사팍에틸 (Trinexapac-ethyl) 허용된 잔류물질 트리넥사팍에틸 (Trinexapac-ethy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1
고기(포유류)	*0.02
우유	*0.0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트리티코나졸 (Triticonazole)허용된 잔류물질트리티코나졸 (Triticonazol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5
알류	*0.05
 고기(포유류)	*0.05
 우유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5
가금류 고기	*0.05

Agvet 화학물질명 툴라스로마이신 (Tulathromycin)

산 가수분해에 의해

(2R,3S,4R,5R,8R,10R,11R,12S,13S,14R)-2-에틸(2R,3S,4R,5R,8R,10R,11R,1

2S,13S,14R)-2-ethyl)로 전환되는 툴라트로마이신 및 그 대사물

허용된 잔류물질

3,4,10,13-tetrahydroxy-3,5,8,10,12,14-hexamethyl-11-[[3,4,6-trideoxy-3

-(dimethylamino)-ß-D- xylohexopyranosyl]oxy]-1-oxa-6-

azacyclopentadecan-15-one)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지	0.1
소의 신장	1
소의 간	3
소고기	0.1
돈지/돼지껍데기	0.3
돼지의 신장	3
돼지의 간	2

툴라스로마이신 (Tulathromycin)

산 가수분해에 의해

(2R,3S,4R,5R,8R,10R,11R,12S,13S,14R)-2-에틸(2R,3S,4R,5R,8R,10R,11R,1

2S,13S,14R)-2-ethyl)로 전환되는 툴라트로마이신 및 그 대사물

허용된 잔류물질

3,4,10,13-tetrahydroxy-3,5,8,10,12,14-hexamethyl-11-[[3,4,6-trideoxy-3

-(dimethylamino)-ß-D- xylohexopyranosyl]oxy]-1-oxa-6-

azacyclopentadecan-15-one)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돼지고기	0.5
양지방	*0.05
양의 신장	0.3
양의 간	1
	0.15

Agvet 화학물질명

틸로신 (Tylosin)

허용된 잔류물질

틸로신 A (Tylosin A)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1
소고기	*0.1
알류	*0.2
우유	*0.05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	*0.2
돈지	*0.1
돼지고기	*0.2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2
가금류 지방	*0.1
가금류 고기	*0.2

Agvet 화학물질명

발리페날레이트 (Valifenalate)

허용된 잔류물질

발리페날레이트 (Valifenalat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0.01
알류	*0.01
포유류 지방 (유지방 제외)	*0.01
고기(포유류)	*0.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01
가금류 지방	*0.01
가금류 고기	*0.01

Agvet 화학물질명

버지니아마이신 (Virginiamycin)

허용된 잔류물질

버지니아마이신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2

Agvet 화학물질명 버지니아마이신 (Virginiamycin) 허용된 잔류물질 버지니아마이신으로 확인된 억제물질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우지	0.2
우유	0.1
소고기	*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0.2
가금류 지방	0.2
가금류 고기	0.1
양 식용 부속고기(offal)	0.2
양고기	0.1

Agvet 화학물질명와파린 (Warfarin)허용된 잔류물질와파린 (Warfarin)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돼지 식용 부속고기(offal)(간 제외	T0.007
돈지	T0.007
돼지의 간	T0.04
돼지고기	T0.007

Agvet 화학물질명제라놀 (Zeranol)허용된 잔류물질제라놀 (Zeranol)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소 식용 부속고기(offal)	0.02
소고기	0.005

Agvet 화학물질명 제타-사이퍼메트린 (Zeta-cypermethrin) 사이퍼메트린 (Cypermethrin)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제타 사이퍼메트린 (Zetacypermethrin)

사이퍼메트린 (Cypermethrin)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인화아연 (Zinc phosphide)

포스핀 (Phosphine)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지네브 (Zineb) 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참조

Agvet 화학물질명 지람 (Ziram) 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참조

# 부칙 21 외부 유래 물질의 잔류기준

-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 외부 잔류물질 한도는 1.1.1-10(6)조와 기준 1.4.2로 규제된다. 본 기준은 1.4.2-5절의 목적에 따라, Agvet) 화학물질의 \*활성성분과 허용잔류물질을 설명하고 있다.
-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21-1 명칭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규정 부칙 21. 외부 유래 물질의 잔류기준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21-2 해석

### 본 부칙에서

- (a) 별표(\*)는 \*ERL이 측정 한도에서 설정되었음을 나타낸다.
- (b) 기호 'T'는 ERL이 잠정적인 ERL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c) 기호 'E'는 ERL을 나타낸다.

### 21-3 외부 잔류물질 한도

1.4.2-5에 따라 \*Agvet 화학물질 허용된 잔류물질과 그 양은 다음과 같고, kg당 mg로 나타낸다. 아래 표는 원문 내 가공식품만 추출하여 내용을 구성함

### 외부 유래 물질의 잔류 기준

Agvet 화학물질명	앨드린과 디엘드린 (Aldrin and Dieldrin)
허용된 잔류물질	HHDN과 HEOD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E0.2
알류	E0.1

Agvet 화학물질명앨드린과 디엘드린 (Aldrin and Dieldrin)허용된 잔류물질HHDN과 HEOD의 합

식품명최대잔류허용량고기(포유류)(지방 중에)E0.2우유E0.15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E0.2가금류 고기E0.2

Agvet 화학물질명

BHC(감마 이성질체 Lindane 제외) (BHC (other than the gamma

isomer, Lindane))

허용된 잔류물질

린단을 제외한 1,2,3,4,5,6-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이성질체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E0.3
알류	E0.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E0.3
 우유	E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E0.3
가금류 고기	E0.3

Agvet 화학물질명 클로르데인 (Chlordane)

허용된 잔류물질

시스 및 트랜스 클로르데인의 합계이며 동물 유래 물질의 경우

'옥시클로르데인'도 포함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면실유	E0.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E0.02
알류	E0.02
천연 아마인유	E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E0.2
우유	E0.05
메주콩기름	E0.05
정제된 메주콩기름	E0.02
스위트콘	E0.02

Agvet 화학물질명 DDT

허용된 잔류물질 p,p'-DDT의 합; o,p'-DDT; p,p '-DDE 및 p,p '-TDE(DD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E5
알류	E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E5
우유	E1.2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E5
가금류 고기	E5

Agvet 화학물질명

DDT

허용된 잔류물질

p,p'-DDT의 합; o,p'-DDT; p,p '-DDE 및 p,p '-TDE(DDD)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스위트콘	E1
 채소 기름, 식용	E1

Agvet 화학물질명

HCB

허용된 잔류물질

헥사클로로벤젠 (Hexachlorobenzene)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E2
우유	E0.2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E1
알류	E1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E1
 우유	E0.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E1
가금류 고기	E1

Agvet 화학물질명

헵타클로르 (Heptachlor)

허용된 잔류물질

헵타클로르와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의 합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E0.2
알류	E0.05
고기(포유류)(지방 중에)	E0.2
우유	E0.15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E0.2
가금류 고기	E0.2
메주콩기름	E0.5
정제된 메주콩기름	E0.02
스위트콘	E0.05

Agvet 화학물질명

린덴 (Lindane)

허용된 잔류물질

린덴 (Lindane)

, , , , , , , , , , , , , , , , ,	
식품명	최대잔류허용량
식용 부속고기(offal)(포유류)	E2
알류	E0.1
가금류 식용 부속고기(offal)	E0.7
가금류 고기	E0.7
 스위트콘	E2

**CHAPTER** 

03

# 사용금지 식물과 진균류

# 1.4.4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식물과 진균류

-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참고 3. 1.1.1-10(5)(a)와 (6)(e)항은 본 규정집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판매용 식품은 제한된 식물 또는 균류, 또는 코카 관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되어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4.4-1 명칭

본 규정은 호주 뉴질랜드식품기준법 - 1.4.4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식물과 진균류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1.4.4-2 정의

- 참고 1. 본 규정집에서 (1.1.2-2절과 1.1.2-3절 참조):
  - **강조표시(claim)**는 본 규정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의 특성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 표현, 디자인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 코카 관목(coca bush)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Eurythroxylum coca (코카 관목) 또는
    - (b) 코카 관목에서 추출한 물질
  -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는 식품이나 식품의 특성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 건강 효과(health effect)는 아래의 효과 중 1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체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 (a) 생화학적 과정이나 결과
    - (b) 생리적 과정이나 결과
    - (c) 기능적 과정이나 결과
    - (d) 성장 및 발달

# **경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e) 신체적 효능
- (f) 정신적 효능
- (q) 질병, 질환 또는 상태
- **라벨(label)**은 판매용 식품과 관련하여 서면 형식의 꼬리표, 브랜드, 상표, 문구 또는 그것을 설명하는 표시나 디자인, 또는 설명의 형태로서,
  - (a) 해당 식품 또는 식품 포장에 부착되거나
  - (b) 식품과 함께 구매자에게 제공되거나
  - (c) 식품 판매 시, 식품과 연계되어 진열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사용이 금지된 식물(prohibited plant) 또는 진균(fungus):

- (a) 부칙 23에 열거되어 있는 식물 또는 진균 또는
- (b) 그런 식물 또는 진균의 일부 또는 파생물 또는
- (c) (a)항 또는 (b)항에 언급한 식물, 진균, 그 일부 또는 파생물에서 얻은 물질
- 식품의 특성(property of food)이란 식품의 성분, 재료, 요소 또는 또 다른 특징을 의미한다.
- 사용이 제한된 식물(restricted plant) 또는 균류(fungus):
  - (a) 부칙 24에 열거되어 있는 식물 또는 진균 또는
  - (b) 그런 식물 또는 진균의 일부 또는 파생물 또는
  - (c) (a)항 또는 (b)항에 언급한 식물, 진균 그 일부 또는 파생물에서 얻은 물질
- 참고 2. 1.1.2-9(영양 함량 강조표시의 정의)는 다음을 따른다:
  - (1) 본 규정에서는

### 영양 성분 강조 표현은

- (a) 다음을 의미한다.
  - (i) 다음 항목의 존재 혹은 결핍
    - (A) 생물학적 활성 물질
    - (B) 식이섬유
    - (C) 에너지
    - (D) 미네랄
    - (E) 칼륨
    - (F) 단백질
    - (G) 탄수화물

- (H) 지방
- (I) 단백질, 탄수화물 또는 지방의 구성 요소
- (J) 소금
- (K) 나트륨
- (L) 비타민, 또는
- (ii) 혈당 지수 또는 혈당 부하
- (b) 알코올의 존재 또는 결핍을 의미하지 않는다.
- (c) 건강 강조표시와는 다른 것이다.

참고. 1.1.2-9(2)부터 (4)까지, 2.6.2-5(4) 및 2.10.2-8(3) 참조

참고 3. 1.2.7은 건강 및 영양 함량 강조 표시를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1.4.4-3 사용이 제한된 식물과 균류 관련 예외 규정

사용이 제한된 식물 또는 균류는 1.4.1-3절과 부칙 19-6(1)의 천연 독성물질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식품 내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 1.4.4-4 코카 관목 관련 예외 규정

코카 관목은 코카인이 제거된 경우에 식품 내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 1.4.4-5 생 살구 알맹이(raw apricot kernels) 관련 예외 규정

생 살구 알맹이(raw apricot kernels)는 가공되었거나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처리한 경우 판매용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4.4-6 대마(Cannabis sativa) 종자(씨앗) 및 종자제품 관련 예외 규정

- (1) 대마 종자를 판매용 식품이나 판매용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종자(씨앗)
    - (i) 대마의 THC 성분이 적은 것; 그리고
    - (ii) 총 THC 성분이 5mg/kg 이하로 함유한 것; 그리고
    - (iii) 소매 판매용 식품일 경우, 생존할 수 없고 껍질이 벗겨진 것, 그리고
  - (b) 종자(씨앗) 내부 또는 겉면에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경우
- (2) (3)조에 따라, 다음의 종자 제품 전체 또는 일부는 판매용 식품이나 판매용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 기름이 총 THC 성분을 10mg/kg 이하로 포함하는 경우 대마의 THC 성분이 낮은 씨앗에 서 추출한 기름;
- (b) 음료가 총 THC 성분을 0.2mg/kg 이하인 음료 경우 대마의 THC 성분이 낮은 종자에서 유래된 음료;
- (c) THC 성분이 낮은 대마 종자에서 추출된 제품으로 총 THC가 5mg/kg 이하인 기타 모든 제품;
- (3) 단, 제품에 함유된 카나비로이드는 제품이 추출되거나 추출된 종자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 (4) (2)조에서:

대마의 THC 성분이 낮은 종자(seeds of low THC *Cannabis sativa*)는 살아있고 껍질을 벗기 지 않은 씨앗을 포함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껍질이 벗겨진 씨앗(hulled seeds)은 외피 또는 껍질이 제거된 씨앗을 의미한다.

낮은 대마의 THC 성분(low THC Cannabis sativa)은 (6)조에 설명되어 있다.

생존할 수 없는 종자(non-viable seeds)는 발아할 수 없는 씨앗을 의미한다.

종자(seeds)는 종자의 일부를 포함한다.

- 총 THC(total THC)는 델타 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와 9-테트라하이 드로카나비놀릭(tetrahydrocannabinolic)의 총량을 의미한다.
- (6) 낮은 THC 대마는 잎과 꽃봉오리가 델타 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을 1% 이하로 함유한 대마이다.

### 1.4.4-7 헴프(마, 대마, hemp) 식품이거나 이를 포함한 식품에 대한 표시 및 제한

- (1) 본 절은 대마(大麻) 제품이거나 대마 제품을 성분으로 하는 판매용 식품에 적용된다.
- (2) 판매용 식품에는 제품이 정신 자극 효과를 갖고 있다고 라벨을 부착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제품이 판매용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 (3) 판매용 식품의 라벨에는 다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a) 칸나비디올(cannabidiol)에 대한 영양 강조 표시;
  - (b) 칸나비올에 대한 건강 강조 표시;
  - (c) 종자를 제외한 대마초 식물(식물의 잎 포함)의 일부에 대한 이미지 또는 표현;
  - (d) 대마초(cannabis) 또는 마리화나(marijuana)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

- (4) 판매용 식품의 라벨에는 '헴프(hemp)'라는 단어가 포함될 수 있다.
- (5) 본 절에서는
  - 헴프 식품(Hemp food product)는 대마 종자 및/또는 1.4.4-6 절에서 판매용 식품으로 허가되거나 판매용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종자 제품을 의미한다.

정신 자극 효과(Psychoactive effect)는

- (a) 운동 기능, 사고, 행동, 지각, 인식 또는 분위기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변화를 초래하는 사람의 중추신경 자극 또는 우울증; 또는
- (b)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중독을 포함하거나 의존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1.4.4-8 판매용 식품에 함유된 카나비딜(cannabidiol) 수준

카나비딜은 판매용 식품에 75mg/kg보다 높은 수준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 부칙 23 사용금지 식물 및 균류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사용이 금지된 식물 및 진균류는 1.1.1—10(5)(a)항과 (6)(e)항, 기준 1.4.4에 의해 규제받는다. 본 기준은 1.1.2-3절의 사용이 금지된 식물 또는 진균의 정의에 따른 식물 또는 진균류를 열거하고 있다.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부칙 23-1 명칭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 부칙 23. 사용이 금지된 식물과 진균류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부칙 23-2 사용이 금지된 식물과 진균류

1.1.2-3절의 사용이 금지된 식물 또는 진균의 정의 (a)항에 따른 해당 식물과 진균류는 다음과 같다.

# 금지된 식물과 균류

5 ALE	향명				
종 이름	한글명	영문명			
Abrus cantoniensis					
Abrus precatorius	홍두열매씨	Jequirity seeds			
Acokanthera schimperi	독 화살 나무	Arrow poison tree			
Aconitum spp.	투구꽃	Aconite			
Acorus calamus	창포유	Calamus oil			
Adonis vernalis	헬레보어, 봄 복수초	False hellebore, Spring adonis			
Aesculus hippocastanum	마로니에, 칠엽수류	Horse chestnut, Buckeye			
44	야생토란, 코끼리귀, 카페,	Cunjevoi, Elephant ear, Kape,			
Alocasia macrorrhiza	아페, 타무	'Ape, Ta'amu			
Alstonia constricta	알스토니아	Alstonia			
Amanita muscaria	아가리쿠스버섯, 광대버섯	Agaricus, Fly agaric			
Amanita spp.	광대버섯	Amanita Mushroom			
Ammi visnaga	비스나가, 켈라	Bisnaga, Khella			
Anadenanthera peregrina	코호바 요페, 니오포	. Cohoba yope, Niopo			



종 이름	향명					
등 이름	한글명	영문명				
Papaver somniferum (종자류 외에)	양귀비 Opium poppy					
Pausinystalia yohimbe (Coryanthe yohimbe 참고)						
Peganum harmala	와일드 루	Wild rue				
Petasites spp.	머위	Butterbur				
Peumus boldus	볼도 Boldo					
Phoradendron flavascens (Viscum flavesc	rens 참고)					
Phoradendron serotinum (Viscum flavesc	rens 참고)					
Phoradendron tomentosum ( Viscum flav	vescens 참고)					
Physostigma venenosum	칼라바르콩, 칼라바르콩	Calabar bean, Ordeal bean				
Phytolacca decandra	레드 포크위드, 포크 루트	Red pokeweed, Poke root				
Phytolacca americana (Phytolacca decand	dra 참고)					
Phytolacca octandra	잉크위드, 레드잉크플랜트, 다이버리	Inkweed, Red ink plant, Dyeberry				
Pilocarpus spp.						
Piptadenia macrocarpa	세빌 콜로라도, 쿠라 페그	Cebil colorado, Cura pag				
Piptadenia peregrina	코호바, 코토바, 요크	Cohoba, Coxoba, Yoke				
Pithomyces chartarum	버섯, 균류	Fungus				
Pluteus spp.	균	Fungi				
Podophyllum peltatum	아메리칸 만드레이크, 메이에플, 포도필린	American mandrake, Mayapp Podophyllum				
Prestonia amazonica (Haemodictyon ama	· · · · · · · · · · · · · · · · · · ·	1 7				
Prunus laurocerasus	체리 월계수	Cherry laurel				
Psoralea corylifolia	말레이 티	Malay tea				
Psylocybe spp.	균	Fungi				
Pteridium aquilinum	고사리	Bracken Fern				
Pulmonaria spp.		Lungwort				
Punica granatum stem and root bark	석류	Pomegranate				
Rauwolfia spp.	데빌 페퍼, 인도사목	Devil pepper, Rauwolfia				
Ricinus communis	피마자, 아주까리	Castor bean, Castor oil plar				
incinas communis	아카시아나무, 펄스	custor beari, custor on plan				
Robinia pseudoacacia	아카시아	Black locust, False acacia				
Sanguinaria canadensis	 블러드루트, 블러드워트	Bloodroot, Bloodwort				
Sarothamnus scoparius	ᆯᄓᆖᅲᆖ,ᆯᄓᆖᆏᆖ 콤몸부룸	Common broom				
Scopolia carniolica	 스코폴리아	Scopolia				
Senecio spp.	 레그워트	Ragwort				
Seriecio spp.	네그저드 포로포로, 푸포로, 코호호,					
Solanum aviculare		Poroporo, Pooporo, Kohoho Bullibulli False Jerusalem che				
	불리불리					
Solanum diflorum	옥창앵두	False Jerusalem cherry				
	피터스윗 트윙스, 블루	Bittersweet twigs, Blue				
Solanum dulcamara	덩굴식물, 배풍등,	bindweed, Woody nightshad				
	나이트쉐이드	Nightshade				

X 012	향명				
종 이름	한글명	영문명			
Solanum nigrum	블랙 나이트쉐이드	Black nightshade			
Solanum pseudocapsicum	옥산호	Jerusalem cherries			
Solanum sodomeum	소돔의 사과	Apple of Sodom			
Sophora microphylla	코와이	Kowhai			
Sophora secundiflora	메스컬 빈	Mescal bean			
Spartium junceum	스페인 공작화	Spanish broom			
Spigela marilandica	핑크루트, 웜 그라스	Pinkroot, Worm grass			
Strophanthus gratus	스트로판투스	Strophanthus			
Strophanthus kombe	스트로판투스	Strophanthus			
Stropharia cubensis	버섯, 균류	Fungus			
Strychnos gautheriana	호앙난	Hoang nan			
Strychnos ignatii	잉나티우스 빈	Ignatious bean			
Strychnos malaccensis (Strychnos gauth	eriana 참고)				
Strychnos nux-vomica	포션넛츠, 마전자	Poison nut, Nux vomica			
Symphytum asperum	가시가 많은 캄프리	Prickly comfrey			
Symphytum officinale	보통 캄프리	Common comfrey			
Symphytum x uplandicum	러시안 캄프리	Russian comfrey			
	블랙아이루트, 블랙	51 1 1 1			
Tamus communis	브라이오니	Blackeye root, Black bryony			
Taxus baccata	유, 유러피안 유, 공통의 유	Yew, European yew, Common yew			
Thevetia neriifolia (Thevetia peruviana a	· 참고)				
Thevetia peruviana	스네이크 넛츠	Snake nut			
Trichodesma africana					
Tricholoma muscarium	버섯, 균류	Fungus			
Tussilago farfara	머위	Coltsfoot			
Veratrum spp.	크리스마스로즈	Hellebore			
Vinca spp.	페리윙클	Periwinkle			
Virola sebifera	쿠아조 니그로, 카메티카로	Cuajo negro, Camaticaro			
Viscum album	유럽의 겨우살이 열매 European mistletoe be				
Viscum flavescens	미국의 겨우살이	American mistletoe			
Xysmalobium undulatum	우자라, 가시덤불	Uzara, Thornbush			
Zamia intermifelia	플로리다 자미아, 플로리다	Counties Floride surrous !			
Zamia integrifolia	어로우루트	Coonties, Florida arrowroot			



# 부칙 24 사용 제한 식물 및 진균류

-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 사용이 제한된 식물 및 진균류는 1.1.1—10(5)(a)항과 (6)(e)항, 기준 1.4.4에 의해 규제받는다. 본 기준은 1.1.2-3의 사용이 제한된 식물 또는 진균의 정의에 따른 식물 또는 진균류를 열거하고 있다.
-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부칙 24-1 명칭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 부칙 24. 사용이 제한된 식물과 진균류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부칙 24-2 사용이 제한된 식물과 진균류

1.1.2-3절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식물 또는 진균의 정의 (a)항에 따른 해당식물과 균류는 다음과 같다.

제한된 식물 또는 진균류

조 이르	공통	이름	천연 독성물질		
종 이름	한글명	영문명	한글명	영문명	
Artemisia	약쑥	Common	투우존,	Thujone,	
<u>absinthium</u>	7 7	wormwood	산토닌	santonin	
Artamicia cina Para	111 177	1	투우존,	Thujone,	
Artemisia cina Berg	시나꽃	Levant wormseed	산토닌	santonin	
Artemisia maritima	시나꽃	Levant wormseed	투우존,	Thujone,	
Arternisia mantima			산토닌	santonin	
Amtomologico vyvlovania	쑥	Mugwort	투우존,	Thujone,	
Artemisia vulgaris			산토닌	santonin	
Chrysanthemum balsamita	코스트마리	Costmary	투우존	Thujone,	
피버퓨(Chrysanthemum parthenium) (Tanacetum parthenium 참고)					
Cinchona spp.	키나	Cinchona	퀴닌	Quinine	
Cinnamomum	캄포르 나무 오일	Compulsor tree -:1	사프 <u>롤</u> ,	Safrole,	
camphora	The state of the complete of t	Camphor tree oil	쿠머린	coumarin	

종 이름	공통	이름	천연 독성물질		
중 이름	한글명	영문명	한글명	영문명	
Cinnamomum	마이크란툼 오일	Micranthum oil	사프롤,	Safrole,	
micranthum	미이그런품 포크 	Wilcrafftffufff Off	쿠머린	coumarin	
Hedeoma	아메리칸 페니	American	풀레곤	Pulegone	
<i>pulegioides</i> oil	로얄	pennyroyal	卢네근		
	화이트	White snakeroot			
	스네이크루트 오일	oil			
Hypericum perforatum	고추나무	St John's wort	하이퍼리신	Hypericine	
Mentha pulegium	유러피안 페니로얄	European	풀레곤	Pulegone	
oil	오일	pennyroyal oil	풀네는		
Sassafras albidum	아메리칸	American sassafras	사프롤	Safrole	
Sassairas aiviuuiti	사사프라스 오일	oil	시드글	Sairoie	
사사프러스속(Sassafras officinale) (Sassafras albidum 참고)					
코스트마리( <i>Tanacetum balsamita</i> ) ( <i>Chrysanthemum balsamita</i> 참고)					
Tanacetum	피버퓨	Feverfew	산토닌	Santonin	
parthenium	<u> </u>	reveriew	· 건포건	Santonin	
Tanacetum vulgare	탄지유	Tansy oil	투우존	Thujone	
Thuja occidentalis	뚜쟈, 멀구슬나무	Thuja, White cedar	투우존	Thujone	

**CHAPTER** 

04

# 식품 내 미생물 기준

# 1.6.1 식품 내 미생물 기준

-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참고 3. 1.1.1-11절은 본 규정에 따라 식품에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미생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식품에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미생물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 1.6.1-1 명칭

본 규정은 호주 뉴질랜드식품기준법 - 1.6.1 식품의 미생물 기준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1.6.1-2 허용 한계 미생물 기준

\*로트가 다음에 해당하면 식품이 허용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미생물을 가진 것으로 본다.

- (a) 해당 식품이 부칙 27-4의 표에 열거되어 있고,
- (b) 해당 로트에 대해 1.6.1-3에 따라 검사가 행해졌으며,
- (c)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 (i) 표 4열(m)에 명시된 미생물 수준보다 더 높은 미생물 수준을 함유한 시료 단위의 수가 3열(c)에 명시된 수보다 크거나,
  - (ii) 시료 단위 중 미생물 수준이 5열(M)의 해당 열에 명시된 수(만약 있다면)보다 큰 것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참고. 로트의 의미는 1.1.2-2절 참조

### 1.6.1-3 미생물 허용 기준의 평가(Assessment of microbiological levels)

- (1) 식품 내 미생물 한계 기준은 본 절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2) 부칙 27-4의 표 1열에 명시된 "식품의 특정 \*로트에 있어서 시료 단위의 수"는 2열(n)의 해당 열에 명시된 시료 단위의 수가 되어야 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 (2)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 제기가 있거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책임자는 동 조에 언급된 수보다 적은 수의 시료를 채취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 (4) 미생물 분석 결과 제출을 목적으로 식품의 시료를 채취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경우 \*책임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 시료를 분리하지 않을 것과
  - (b) 시료가 하나 이상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밀봉포장된 경우 포장된 시료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분석에 사용해야 한다.
- (5) 아래의 방법들은 어떤 식품이 그 식품과 관련하여 부칙에 명시된 미생물의 최대허용량을 초과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 (a) 생수(水), 포장얼음 또는 광천수를 제외한 식품
    - (i) 호주 기준 AS5013에서 규정한 적절한 방법; 또는
    - (ii) 호주 기준 AS5013에서 인용하고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규정한 방법; 또는
    - (iii) 다음에 의해 정해진 방법과 동일한 방법
      - (A) 호주·뉴질랜드기준\*AS/NZS 4659 또는
      - (B) ISO 16140.2:2016
  - (b) 생수(水), 포장 얼음과 광천수의 경우 호주·뉴질랜드기준 AS/NZS 4276에서 규정한 방법
- (6) (5)조의 기준에 대한 언급은 본 규정의 발효일 시점에서 시행 중인 기준에 대한 것이다.

# 1.6.1-4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의 증식 가능성이 없는 식품

- (1) 부칙 27-4의 취지상 다음의 경우 \*즉석섭취식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 (a) 식품의 pH가 수분 활성도와 관계없이 4.4 미만인 경우;
  - (b) 또는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pH와 관계없이 0.92 미만인 경우;
  - (c) 또는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0.94 미만, pH가 5.0미만인 경우;
  - (d) 또는 식품의 냉장 보관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 (e) 또는 식품을 냉동한 경우(냉동으로 섭취되는 식품과 섭취 직전에 해동해서 섭취하는 식품 포함);
  - (f) 또는 리스테리아균이 식품의 보관 기간 동안에 0.5 log cfu/g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고 확인된 경우

- (2) 부칙 27-4의 취지상, 제조 과정 중에 \*리스테리아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은 \*즉석 섭취 식품의 경우 예상 보관 기간 내에 리스테리아균의 수치가 100 cfu/g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리스테리아균이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2)조에서 제조 과정 중에 \*리스테리아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은 \*즉석섭취식품이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즉석섭취 가공 생선;
  - (b)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 세절 또는 포장한 농산물



# 부칙 27 식품 내 미생물 기준

참고 1.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을 따르며, 동시에 호주·뉴질랜드기준규정집을 구성한다. (1.1.1-3절 참조)

식품 중 미생물 기준은 1.1.1—11절과 규정 1.6.1에 의해 규제된다. 본 규정은 1.6.1-2절, 1.6.1-4조, 부칙 1.6.1-3(2)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본 규정집의 조항은 식품기준법 2014(NZ)에 포함되거나 또는 채택되었다. (1.1.1-3절 참조)

### 부칙 27-1 명칭

본 규정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 부칙 27. 식품 내 미생물 기준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법 1991(Cth) 92에 따라 호주연방관보와 뉴질랜드관보에 명시한 시행일과 같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기준법 1991의 93 참조)

### 부칙 27-2 정의

참고. 본 규정집에서 (1.1.2-2절 참조):

SPC는 72시간의 인큐베이션 시간을 거친 30°C에서의 기준 플레이트 계수를 의미한다.

본 부칙에서,

가공(processed)이란 알제품과 관련하여 저온살균되거나 이에 준하는 처리를 한 것을 의미한다.

# 부칙 27-4 식품 중 미생물 기준

1.6.1-2절에 따른 표는 다음과 같다:

### 식품 중 미생물 기준

1열	2열(n)	3열(c)	4열(m)	5열(M)	
모든 치즈					
대장균	5	1	10/g	10²/g	
생우유 치즈					
살모넬라	5	0	25g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장독소	5	0	25g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1열	2열(n)	3열(c)	4열(m)	5열(M)	
살모넬라	5	0	25g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	건조 탈피	코코넛		
살모넬라	10	0	25g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코코아	가루		
살모넬라	5	0	25g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 ·	배양 씨 및	곡물류(	룡나물, 알파파 등)		
 살모넬라	5	0	25g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가공 일	제품		
살모넬라	5	0	25g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광천수					
 대장균	5	0	100ml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생수					
대장균	5	0	100ml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포장된 얼음					
대장균	5	0	100ml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 주요 수출대상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번역본

호주 편

2024년 01월 인쇄 2024년 01월 발행

편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TEL: (061)931-0871 FAX: (061)804-4538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를 통해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역본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책의 내용이나 각종 자료를 복제 및 전제하거나 웹상에 수집 및 게시하는 행위, 판매 등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